

KiRi Weekly 포커스 모음집 2015

1 거시금융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임준환 이해은	3
금리인하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황인창	9
그림자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 현황	김혜란 이해은	1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동향과 시사점	이소양	23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배경과 시사점	임준환 이해은	29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 이해은	33
국내 구조화채권시장 현황 및 시사점	황인창 최창희	37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전망	전용식 김혜란	41
그리스 사태의 현황과 향후 전개과정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46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평가	전용식 이해은	51
신흥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	임준환 이해은	56
중국정부, 해외 첫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의미와 시사점	황인창 김혜란	62
위안화 SDR 편입의 의미와 시사점	임준환 황인창	68

2 보험제도 및 정책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의 시사점	최창희 김혜란	77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정원석 강성호	82
국내 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황인창	85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최창희	90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박선영	96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최창희	101
자동차보험의 시장기능 활성화: 유럽의 사례	전용식 정승연	105
국제기구 보험자분규제 통합논의와 시사점	이승준	109
비급여 의료비 심사 논란과 진료비확인제도 개선안 모색	이태열 정성희	113

포커스 _Contents

3

고령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논의 및 검토 방향	정원석 오병국	121
저금리 기조가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류건식 김동겸	12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사 협력방안 검토	정성희	130
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 협력 필요	오승연 김동겸	133
Cash Balance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전성주 이상우	137

4

보험경영

2014년 보험산업 회고(I): 수입·원수보험료	김진익 최 원	143
2014년 보험산업 회고(II): 제도 변화	변혜원	147
2014년 보험산업 회고(III): 수익성	조영현	152
2014년 보험산업 회고(IV): 상품	김세중	159
2014년 보험산업 회고(V): 재무건전성	김해식	163
빅데이터와 가격차별: 보험산업에 주는 함의	임 준 정원석	165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채널 활용 방안	최창희	172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이소양	177
보험이해력 제고 사례 검토: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변혜원 이혜랑	182
행동경제학 개념의 보험 적용 사례와 활용 방안	오승연	186
세계 보험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이소양	190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세중	196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 추이	조영현	201
사이버보험 동향 및 사이버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변혜원	204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김세중	209
중국 재보험시장 발전 현황과 전망	이소양	213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정성희 이정택	218

1. 거시금융

- | | |
|------------------------------------|-------------|
| 1.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 임준환 이해은 |
| 2. 금리인하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황인창 |
| 3. 그림자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 현황 | 김혜란 이해은 |
| 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동향과 시사점 | 이소양 |
| 5.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배경과 시사점 | 임준환 이해은 |
| 6.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이해은 |
| 7. 국내 구조화채권시장 현황 및 시사점 | 황인창 최창희 |
| 8.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전망 | 전용식 김혜란 |
| 9. 그리스 사태의 현황과 향후 전개과정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
| 10.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평가 | 전용식 이해은 |
| 11. 신흥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 | 임준환 이해은 |
| 12. 중국정부, 해외 첫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김혜란 |
| 13. 위안화 SDR 편입의 의미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달러화표시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신흥국들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달러가치 상승으로 외채 및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신흥국들의 외화차입이 차입 주체와 차입방식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위기 발생 과정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즉, 주된 차입 주체가 건전성 규제대상인 은행보다는 일반기업이고 외화차입 방식도 은행보다 정보에 보다 민감한 채권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에 위기를 감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기가 과거보다 더 빠르게 금융시장에 확산될 수 있음. 한편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으로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나 신흥국 불안에 따른 전염(Spill-over)효과에 유의해야 함.

■ 최근 BIS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2015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 달러화표시 부채가 많은 신흥국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함.

■ 특히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러시아·베네수엘라·멕시코 등 일부 산유국의 위기감이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됨.

●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12월 16일 현재 서방 제재 및 유가 하락과 더불어 달러화 금리 인상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외화 부채가 많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국채금리가 지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가능성¹⁾이 있음.

1) 데이터 전문 분석기관 CMA.

■ 과거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1980년대와 1990년대 두 차례 상승 기조를 보였을 때마다 신흥국들은 외채위기에 직면한 바 있었음(그림 1) 참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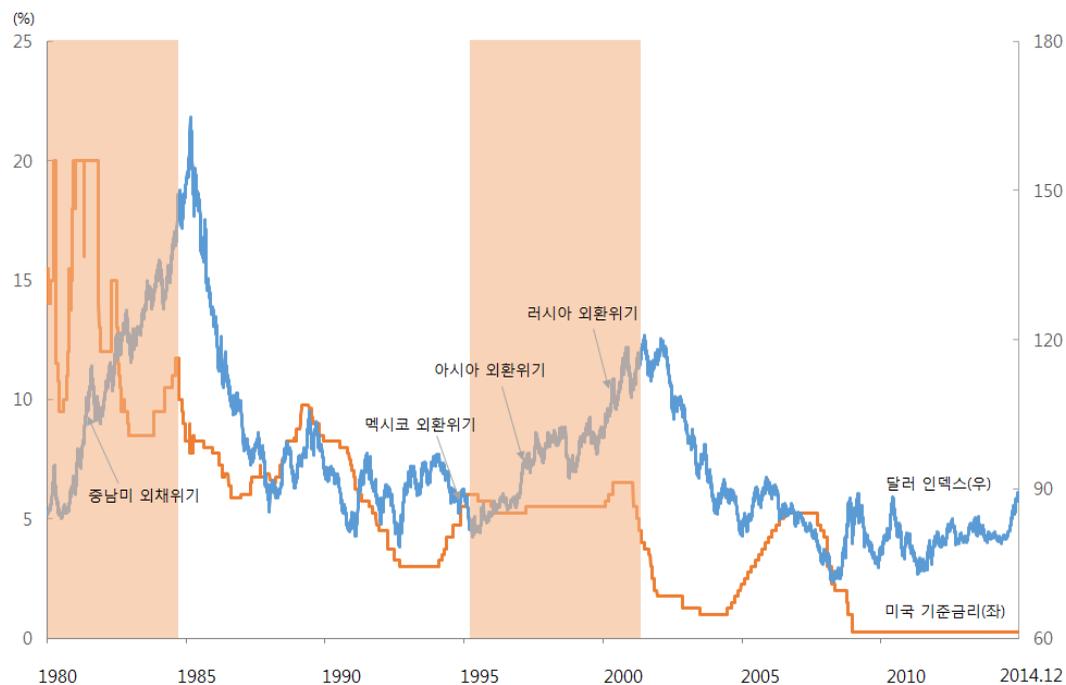
● 미 연준이 1980~81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11%에서 20%까지 인상하는 고강도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위기를 겪은 바 있었음.

– 미국 경제는 석유팽동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실시

● 1990년대 중반에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³⁾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함.

– 달러 약세와 저금리를 기반으로 단기 해외차입에 의존하였던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은 달러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1997년에 금융 및 외환위기에 직면함.

〈그림 1〉 달러 강세 시기와 신흥국 외환위기 발생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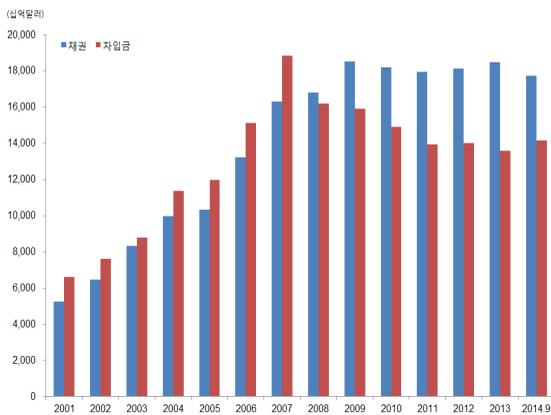
2)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Fragile 5의 외환위기 가능성”(KIRI Weekly, 2014. 2. 17)에서는 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거시경제 펀더멘털 요인을 강조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외채위기 가능성을 진단하는 주요 요인으로 신흥국 민간기업의 해외차입-해외채권과 국제차입금-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3) 1994년 Fed는 장기간 유지했던 연 3%대 기준금리를 1년 만에 6%로 인상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의 해외채권과 국제차입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그림 2〉와 〈그림 3〉 참조).

- 2014년 3/4분기 현재 신흥국 발행 해외채권 규모는 총 2.6조 달러이며, 2014년 2/4분기 신흥국 국제차입금도 3.8조 달러에 이룸.
- * BIS 및 IMF 정의의 따르면 해외채권(International debt securities)은 거주자가 해외금융시장에서 국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대부분 미 달러화 표시 채권이고 그 외 유로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으로 발행됨. 이처럼 해외채권은 발행 및 상장 소재지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단순히 외국통화 표시 채권을 지칭하는 외화채권(Foreign currency denominated debt securities)과는 구별됨.⁴⁾
- ** 국제차입금(International claims)이란 특정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해외 글로벌 은행과의 거래 혹은 해외 채권발행을 통해 경제주체가 직접 조달하는 금액(Cross-border claims)과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을 통해 조달하는 해외통화표시금액(Local claims of foreign affiliates in foreign currency)의 합을 의미함.⁵⁾
- 중국의 국제차입금은 6월 말 현재 1조 1,000억 달러로 1년 반 만에 두 배로 증가했으며, 브라질은 2,360억 달러, 인도는 2,140억 달러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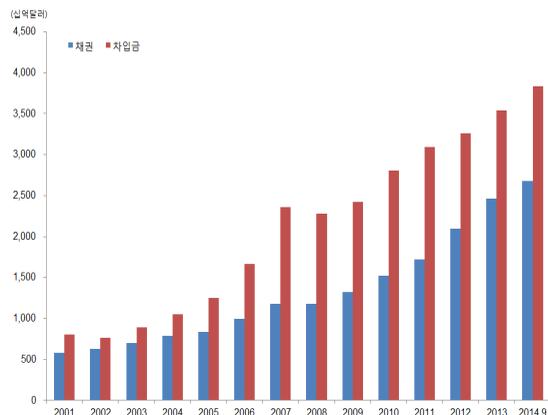
〈그림 2〉 선진국의 해외채권, 국제차입금¹⁾ 추이



주: 1) 해외채권은 2014년 9월 말 기준, 해외차입금은 2014년 6월 말 기준.

자료: BIS.

〈그림 3〉 신흥국의 해외채권, 국제차입금¹⁾ 추이



주: 1) 해외채권은 2014년 9월 말 기준, 해외차입금은 2014년 6월 말 기준.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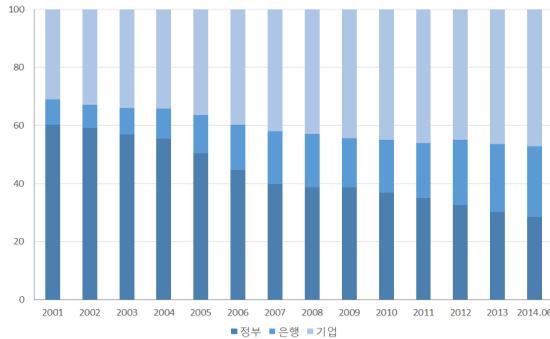
4) 한국은행(2014. 10), 『금융안정보고서』.

5) KDB대우증권(2014. 12. 26), 「주요 신흥국의 국제차입금 구성비 변화와 통화절차가 주는 시사점」.

■ 최근 신흥국들의 외화차입은 차입주체와 차입방식 측면에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 과거와 다른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그림 4)와 (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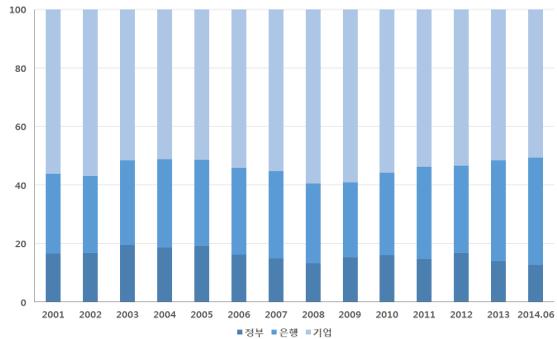
- 첫째, 주된 차입주체가 건전성 규제대상인 은행보다는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감독하기 어려움.
 - 2010년 이후 정부차입 비중이 하락하는 대신 일반기업 등 민간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둘째, 외화차입방식이 정보에 보다 민감한 채권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신흥국 일반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해외에서 직접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4〉 신흥국 부문별 해외채권 비중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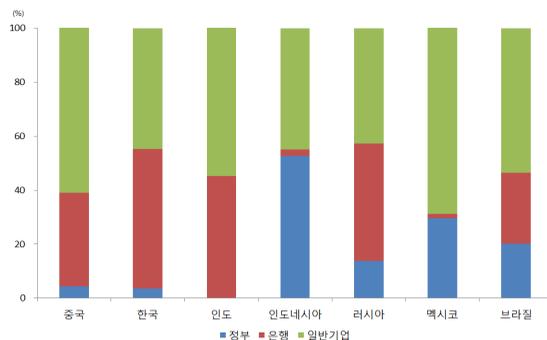
〈그림 5〉 신흥국 부문별 국제차입금 비중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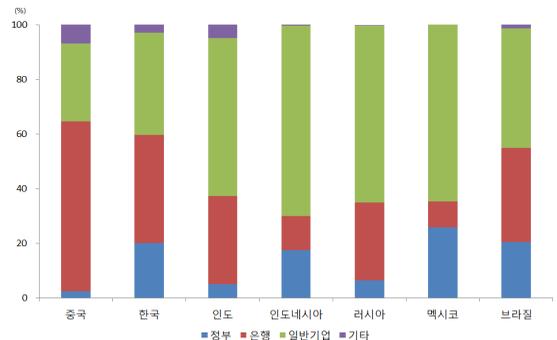
-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멕시코의 경우 일반기업이 전체 해외채권, 국제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임(〈그림 6〉과 〈그림 7〉 참조).

〈그림 6〉 주요 신흥국 해외채권 비중



자료: BIS.

〈그림 7〉 주요 신흥국 국제차입금 비중



자료: BIS.

■ 신홍국의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은행권에서 개별 기업체로 이전됨에 따라 신홍국의 국가 디폴트 가능성은 낮은 반면, 민간 기업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직접 금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민간 기업의 디폴트는 보다 빠르게 금융시장에 확산될 수 있음.

- 은행의 채무불이행은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직접적으로 국가 디폴트로 이어지나 일반기업의 채무불이행은 간접적으로 국가 디폴트를 유발함.
 - 과다 외채로 인한 민간 기업의 부도는 자국 거래은행의 신용악화로 연결되고 정부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 채권시장은 간접금융시장에 비해 정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충격에 따른 위기가 훨씬 빨리 전파되는 경향이 있음.
 - 예컨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대외충격에 채권발행, 외화차입이 많은 신홍국들은 은행 차입보다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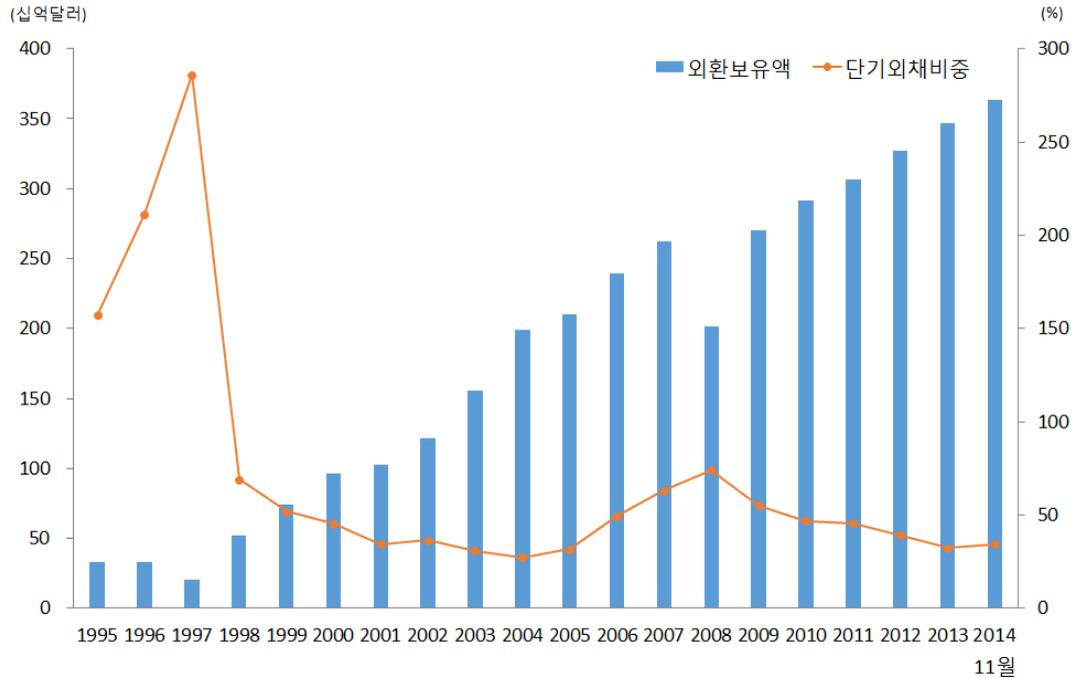
■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5년 이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신홍국 경제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자금상환 미스매치-기간별, 통화별 불일치-위험이 확대되어 신홍국의 부채 상환부담이 가중됨.
- 특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급등가능성)도 있음.

■ 한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양호한 기초경제여건으로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나 신홍국 불안에 따른 전염(spill-over)효과에 유의해야 함.

- 우리나라는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외채구조 등 거시경제기초 여건이 양호하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 외환보유액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약 16배 증가하여 2014년 11월 말 현재 3,631억 달러이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4.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도 낮은 편으로 양호한 대외지급능력을 갖추고 있음(〈그림 8〉 참조).

〈그림 8〉 국내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비중 추이



주: 단기외채 비중은 외환보유액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 그러나 신흥국 불안이 무역경로 및 자본유출 등의 채널을 통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함.
 - 최근 금융위기는 과거와 달리 금융자본의 글로벌화 심화에 따라 평상시에 상호연계성이 낮았던 채널도 위기 시에 연계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충격이 예상보다 빠르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음.
 - 따라서 정책당국자는 이러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널별 잠재적 시스템 위험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kiri](#)



금리인하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 2015년 3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0.25%p 낮추기로 결정함. 기준금리 인하 당일 단기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중장기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지만, 연초 대비 만기와 상관없이 국채 금리가 약 20~30bp 하락한 상태임. 보험회사에 있어 금리 하락은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줄어들고,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짐. 하지만 현행 RBC 제도 하에서 금리 하락 시, 채권평가이익으로 인한 자산 증가는 즉각 반영되고, 보험부채 증가 및 운용자산이익률 감소는 점진적으로 반영되어, 단기적으로 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준 금리 인하는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하게 하여 보험 상품 구매 선호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향후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와 자본 확충 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한 상품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2015년 3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0.25%p 낮추기로 결정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¹⁾이 되는 정책금리임.
- 수출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함에 따라 성장률이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보임(〈표 1〉 참조).
- 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0.8%에서 0.5%로 낮아졌는데,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짐(〈표 2〉 참조).

1)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함. 또한,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에서 각각 -100bp 및 +100bp 가감하여 운용함.

- 세계 각국들이 양적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여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 절하함에 따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되어 국내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됨.

〈표 1〉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14.1/4	2/4	3/4	4/4	14.11월	12월	15. 1월	2월
GDP 성장률	3.0	3.3	3.9	3.5	3.2	2.7	-	-	-	-
GDP 민간소비	2.0	1.7	2.5	1.5	1.5	1.4	-	-	-	-
GDP 설비투자	-1.5	5.9	7.3	7.7	4.3	4.2	-	-	-	-
GDP 건설투자	6.7	1.1	4.3	0.2	2.6	-1.8	-	-	-	-
수출(통관)	2.1	2.3	1.6	3.2	3.6	0.9	-2.7	3.1	-0.7	-3.4
(일평균, 억달러)	(20.5)	(21.1)	(20.7)	(21.9)	(20.7)	(21.3)	(20.7)	(20.6)	(19.2)	(21.8)
제조업 생산	0.7	0.1	0.7	0.4	1.2	-1.9	-3.5	1.0	1.7	-
서비스업 생산	1.5	2.2	2.0	1.5	2.6	2.6	2.2	3.2	2.4	-
취업자수 증감*	385.7	533.0	729.4	463.7	516.5	421.9	438.3	421.6	347.2	-
(공공부문** 제외)	(371.4)	(541.2)	(703.5)	(461.8)	(527.3)	(471.6)	(481.3)	(476.3)	(398.1)	-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자료: 한국은행.

〈표 2〉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14. 10월	11월	12월	15.1월	2월
소비자물가	1.2	1.0	0.8	0.8	0.5
(전월비)	(-0.3)	(-0.2)	(0.0)	(0.5)	(0.0)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1.8	1.6	1.6	2.4	2.3

자료: 한국은행.

■ 기준금리 인하 당일 단기 국채 시장은 금리가 하락하고, 중장기 국채 시장은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지만, 연초 대비 만기와 상관없이 금리가 약 20~30bp 하락한 상태임.

- 기준금리의 변화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국채시장 금리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며 오전에는 큰 폭으로 내려갔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반납하여 중장기 금리는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함.

- 이는 연초대비 중장기 금리 하락이 단기 금리 하락보다 커 미국 중장기 금리와의 격차가 20bp까지 줄어든 와중에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3〉 채권 금리(2015년 3월 12일 기준)

(단위: %)

종류명	잔존기간	금리					
		당일		전일대비	연초대비	연중최고	연중최저
		11시30분	15시30분				
국고채권(1년)	10월 ~ 1년	1,821	1,836	-0.039	-0,238	2,074	1,836
국고채권(3년)	2년6월 ~ 3년	1,857	1,896	-0.011	-0,239	2,135	1,896
국고채권(5년)	4년6월 ~ 5년	1,967	2,021	0,012	-0,301	2,322	2,005
국고채권(10년)	9년6월~10년	2,279	2,347	0,031	-0,313	2,66	2,211
국고채권(20년)	18년 ~ 20년	2,480	2,538	0,028	-0,315	2,853	2,384
국고채권(30년)	28년~30년	2,570	2,623	0,024	-0,323	2,946	2,48
CD(91일)	91일	1,94	1,91	-0,19	-0,22	2,13	1,91

자료: 금융투자협회.

■ 보험회사에 있어 금리 하락은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줄어들고,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짐.

- 국내 보험회사들의 부채 평균 만기는 자산 평균만기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하락 시 순자산가치가 하락함.
- 국내 보험회사들은 주로 채권을 이용하여 자산운용을 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은 미래운용자산이익률 감소로 이어짐.
- 확정형 고금리 보험계약 비율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적립이율이 손해보험회사보다 높기 때문에 미래운용자산이익률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됨(〈표 4, 5〉 참조).

〈표 4〉 보험료적립금 규모 및 평균이율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13. 6월			'14. 6월		
	적립금액	비중	평균이율	적립금액	비중	평균이율
생보사	388.0	100	5.4	424.6	100	5.1
확정형 (고금리*)	184.3 (138.7)	47.5 (35.7)	6.5 (7.2)	192.8 (140.6**)	45.4 (33.1)	6.5 (7.2)
연동형	203.7	52.5	4.3	231.8	54.6	4.0
손보사	93.8	100	4.3	111.8	100	4.0
확정형 (고금리*)	9.3 (4.5)	9.9 (4.8)	5.8 (7.1)	9.3 (4.1)	8.3 (3.6)	5.7 (7.0)
연동형	84.5	90.1	4.1	102.5	91.7	3.8
전체	481.8	-	5.2	536.4	-	4.9

주: * 5.0% 이상 고금리 확정형.

** 생보사 고금리 확정형 140.6조 원 중 99.9조 원(71.1%)을 대형사가 보유.

자료: 금융감독원.

〈표 5〉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과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 차이

(단위: %, %p)

구분	'13. 6월					'14. 6월				
	자산이익률		평균 이율(c)	금리갭		자산이익률		평균 이율(f)	금리갭	
	운용(a)	수정(b)		a-c	b-c	운용(d)	수정(e)		d-f	e-f
합계	4.7	5.5	5.2	-0.5	0.3	4.5	5.2	4.9	-0.4	0.3
생보사	4.8	5.5	5.4	-0.6	0.1	4.6	5.3	5.1	-0.5	0.2
손보사	4.3	5.4	4.3	0.0	1.1	4.0	4.9	4.0	0.0	0.9

주: * 수정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평잔)/보험료적립금(평잔)×운용자산이익률

자료: 금융감독원.

■ 하지만 현행 RBC 제도 하에서 금리 하락 시, 채권평가이익으로 인한 자산 증가는 즉각 반영되고, 보험 부채 증가 및 운용자산이익률 감소는 점진적으로 반영되어, 단기적으로 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금리 하락으로 인한 자산평가이익과 책임준비금전입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므로 전체적으로 가용자본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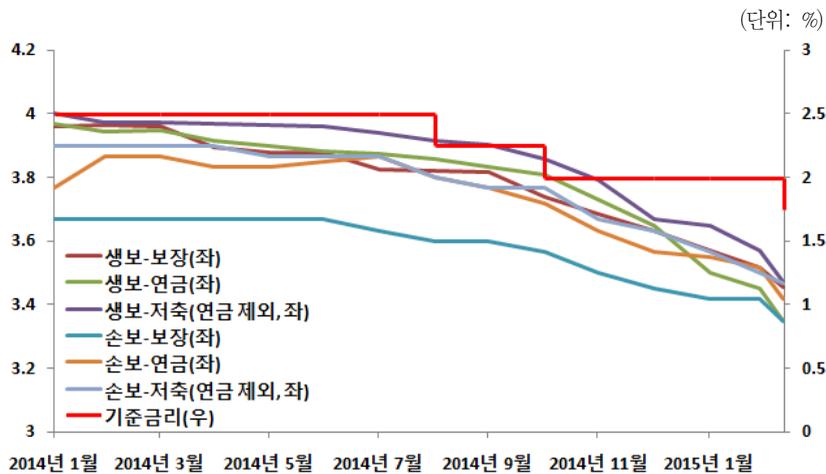
● 다른 한편 금리 하락은 금리위험액²⁾ 증가로 인해 요구자본이 장기적으로 증가하지만, 단기적으로

- 보험부채 관련 위험액 증가는 느리게 반영되는 반면 자산 관련 민감액 증가는 즉각적으로 반영됨.
- 따라서 현행 RBC 제도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본 증가폭이 훨씬 커 단기적으로 RBC 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은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준 금리 인하는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하게 하여 보험 상품 구매 선호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금리 인하로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이 하락해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금리역마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를 확대해 왔는데,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고객의 환급금이 줄어들게 되어 상품매력도는 낮아짐 (<그림 1> 참조).

<그림 1> 기준금리인하에 따른 공시이율 하락



주: 생명보험 상위 3개사, 손해보험 상위 3개사 평균 공시이율.
 자료: 한국은행; 각사 홈페이지.

2) 금리위험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text{금리위험액} = \max[\text{만기불일치위험액}, \text{최저금리위험액}] + \text{금리역마진위험액}$$

$$\text{만기불일치위험액} = |\text{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 \text{보험부채 금리민감액}| \times \text{금리변동계수}$$

$$\text{최저금리위험액} = \text{보험부채 익스포져} \times \text{최저금리위험액 위험계수}$$

$$\text{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 \sum_{\text{금리부자산}} (\text{금리부자산 익스포져} \times \text{금리민감도})$$

$$\text{보험부채 금리민감액} = \sum_{\text{보험부채}} (\text{보험부채 익스포져} \times \text{금리민감도})$$

$$\text{금리역마진위험액} = \text{Max}\{\text{보험료적립금} \times \text{적립이율} - \text{운용자산} \times \text{시장금리}\} \times 50\%, 0$$

$$\text{시장금리} = \text{직전 1년간 국고채(5년) 월말 평균금리} + \max\{\text{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산업위험스프레드}, \text{회사위험스프레드}\}$$

■ 향후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와 자본 확충 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한 상품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2018년 IFRS 4 Phase II가 도입이 되면, 현행 RBC 제도와는 달리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로 인한 순자산가치가 즉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리리스크 관리와 자본 확충 노력을 통한 선제적인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함.

● 또한, 보험회사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투자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상품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kiri**



그림자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 현황

김혜란 연구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2013년 말 전 세계 그림자금융 시장 규모는 75조 2,346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2007년 61조 5,410억 달러에 비해 약 13조 6,936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이중 미국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약 3조 달러로 2007년에 비해 10배 정도 성장하였음. 그림자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이 된 바 있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가 2014년 9월 말 현재 1,762조 2,76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0조 원(9.5%) 이상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 추정치(1,500조 원)를 초과하였음. 국내 그림자금융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림자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나 투자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을 수행하기도 함. 그러나 그림자금융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감독당국은 국제적 논의 및 국내 그림자금융 특징을 고려하여 그림자금융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최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그림자금융 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저금리 장기화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그림자금융 규모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
- 국제통화기금(IMF)도 MMF와 헤지펀드 등 그림자금융으로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며 이런 자금은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사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함.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 재닛 옐렌은 2014년 7월 연설에서 과거 미 금융시장에 대해 지나친 레버리지와 불안정한 단기자금에 대한 의존, 부실한 대출 등이 금융 안정성을 떨어뜨렸으며, 이 모든 불안정성이 불투명한 경로로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고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을 경고함.

■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같은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보호도 원활하게 받을 수 없어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 및 금융상품을 총칭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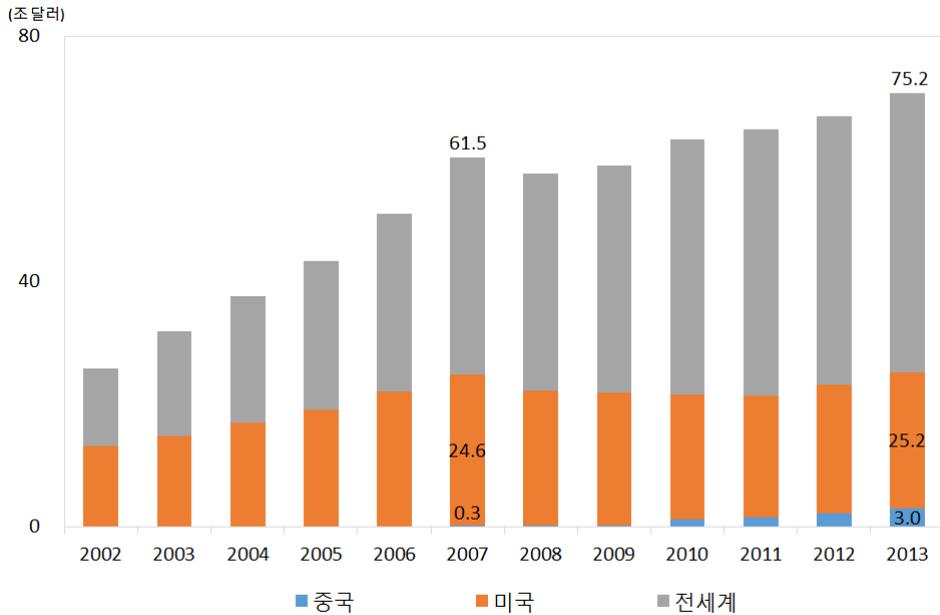
- FSB는 그림자금융을 활용 목적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음.²⁾
- 광의 개념은 은행시스템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제공하는 기관 및 상품으로 정의함.
- 협의로는 비은행 신용중개시스템 중에서 만기 및 유동성 변환, 신용리스크의 불완전한 이전, 레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규제차익을 추구하는 부문으로 정의함.

■ 2014년 11월 FSB³⁾에 의하면 2013년 말 전 세계 그림자금융 시장 규모⁴⁾는 75조 2,346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2007년 61조 5,410억 달러에 비해 13조 6,936억 달러 증가한 수치임.

- 미국 그림자금융 시장 규모는 2013년 말 전년 대비 2조 달러 증가한 25조 2,028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24조 9,452억 달러를 초과한 수치임.
 - 미국이 전 세계 그림자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61.5%에서 2011년까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과 2013년은 소폭 상승하여 2013년 말 약 33.5%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FSB에서 추정된 2013년 말 그림자금융 규모는 약 3조 달러로 2007년에 비해 10배 정도 성장하였으며, 2009년 이후 지방정부 재원 확보의 주된 수단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중국사회과학원은 2조 3,826억 달러에서 3조 3,496억 달러(14.6~20.5조 위안(2013. 9월)), UBS는 4조 9,573억 달러에서 6조 6,098억 달러(30.0~40.0조 위안(2014. 1월))로 각각 추정함.

1) 이범호 외 1인(2012),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BOK 경제리뷰, 한국은행.
2) 광의 및 협의의 그림자금융 부문의 분류는 이범호 외 1인(2012),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의 p.3을 참조하길 바람.
3) FSB에서 그림자금융 규모를 추정된 나라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총 20개국과 유럽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4) 광의의 개념으로 전체 금융기관 중 중앙은행, 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금, 그리고 공적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금융중개기관(Other Financial Intermediaries(OFI))로 MMF, 금융회사, 구조화된 투자금융(Structured Finance Vehicles), 헤지펀드, 기타 투자 펀드, 브로커와 딜러, 부동산투자신탁, 신탁회사와 기타로 구성됨.

〈그림 1〉 전 세계 및 미국과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



자료: FSB(2014),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 2014".

■ 그림자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원인이 된 바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FSB의 권고안⁵⁾은 그림자금융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된 은행부문과의 높은 상호연계성, 위기시 대규모 자금인출 사태 야기, 레버리지를 통한 경기순응성 증폭, 상대적으로 긴 중개과정을 통한 대리인 문제 발생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감독규제 방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5) 2013년 9월 5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8차 G20 정상회의에서 그림자금융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표 1〉 FSB의 그림자금융 관련 정책 권고안

분야	주요 내용
1. 은행과 그림자금융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모든 활동을 감독 대상인 연결기준으로 포함 - 그림자금융에 대한 은행 익스포저 규모와 특성 제한 - 은행의 그림자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 기반 자본 규제 : 펀드투자, 단기유동성 지원에 대해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 - 평판 리스크 관리 및 그림자금융 암묵적 지원 규제
2. MMF 펀드런에 대비한 국간 공동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유사 집합투자기구 모니터링 및 규제 - MMF 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적용, 투자자산 가치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외부기관 점검 - 대규모 환매에 대비해 은행(자본/유동성/건전성 강화)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수단(유동성 자산 보유 비율 강화) 마련 등 - 고정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변동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으로 전환
3. 자산유동화 관련 유인체계의 평가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보유(Risk Retention) 의무에 대한 요소 규정화 - 투자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보고양식 표준화 - 유동화 상품에 대한 건전성 규제 마련
4. 증권대차 및 RP에 관한 경기순응성 리스크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순응성 완화를 위한 최저 규제할인율, 증거금 제도 도입 - 증권 재담보 관련 규제 검토 - 증권대차 관련 현금담보의 재투자시 최소 투자 기준 마련
5. 기타 그림자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 금융회사의 그림자금융 활동을 5개 경제적 기능¹⁾ 기준으로 분류하고 관련 잠재 리스크 파악 및 적용 가능 정책수단 개발 - 각 국가 감독기관 간 그림자금융 관련 정보 공유

주: 1) ① 환매에 취약한 고객 자산운용, ② 단기자금조달을 통한 신용공여, ③ 단기자금 또는 담보부로 조달한 고객자산을 토대로 한 시장활동 중개, ④ 신용창조 촉진, ⑤ 유동화 또는 자금조달 기능 수행
 자료: 한국은행(2013), 『글로벌 Shadow Banking 현황과 규제 논의』.

- 또한 FSB는 환매시장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의 단기대출에 대하여 최소담보비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함.⁶⁾
 - 만기 1~5년짜리 회사채의 채무상각비율⁷⁾을 1%에서 1.5%로 올리고, 주식담보비율도 4%에서 6%⁸⁾로 상향함.
 - 우선 민간 채권과 주식을 담보로 한 은행과 비은행 간의 단기적 환매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비은행간 거래 또는 국채에는 적용되지 않음.

6) FT(2014, 10, 14), "Terms laid down for taming shadow bank risk".

7) Repo거래기간 동안의 매매채권의 가격변동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할인율로서 매수자의 입장에서 매도자에게 요구하는 비율을 말하며, 개시증거금의 역할을 함. 액면가 100달러짜리 채권을 맡기면 종전에는 99달러를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8.5달러만 대출할 수 있음.

8) 100달러를 빌릴 때 104달러짜리 주식을 담보물로 제공했으나, 이제는 106달러짜리가 필요함.

■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 제정을 통해 은행의 겸업을 제한하는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및 정리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비은행 금융회사와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림자금융 관련 리스크 통제에 나서고 있음.
- 그림자금융의 재정적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미 연준은 2014년 9월 금융안정위원회(FSC·Financial Stability Committee)를 신설함.
- 최근 미 연준은 금융취약성 평가에 대한 감독 강화, 다른 국내기관이나 해외기관과의 정보공유에 나서겠다고 밝힘.
- 또한 자산거품 형성시 은행의 자기자본요건 및 회사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본요구수준을 강화하고 증권금융거래를 적극 규제할 것임.

■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그림자금융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간 대출도 규제하고 나섰다.

- 중국 금융당국은 그림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여 2009년 말부터 은행대출에 기반한 WMPs 발행 물량을 제한하여 왔으며,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WMP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WMPs(Wealth Management Products)는 중국어로는 ‘리차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재테크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중국 금융시장에서 상업은행, 신탁회사 및 증권사 등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과 판매를 하고 있음.⁹⁾
 - 특히 은행대출에 기반한 WMPs는 은행이 자신의 대출 채권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신탁회사는 이를 포장하여 신탁계획을 수립한 다음, 은행은 신탁계획에 의거한 WMPs를 발행해서 모집된 자금을 다시 신탁계획에 투자하는 중국 그림자금융의 전형적인 모델임.
- 2014년 5월에는 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을 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간 상호 대출 규제를 실시함.
 -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복잡한 상호 대출을 거쳐 지방정부·부동산 개발업체·생산과잉 대기업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큰 대출을 위험성이 작은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로 위장하려는 관행을 억제하려는 의도임.
 - 인민은행에 따르면 2009년 말 6조 2천 억 위안이었던 은행간 자금시장 규모는 2013년 말 현재 21조 5천 억 위안으로 약 3.5배 급증하였음.

9) 국제무역연구원(2014), 「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고찰」, BRICs INSIDE 2014. 3월호.

〈표 2〉 중국 정부의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 조치

발표기관	일시	내용
은행 감독위원회	2013년 3월	- 위험자산(비표준화 자산: 신탁/위탁 대출, 지방정부 SOC, 부동산)이 WMPs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제한(발표전 36.6%에서 6월에는 31%까지 축소)하고, 은행의 총자산의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7월	- 은행들이 CBRC 전산시스템에 WMPs를 등록하도록 권고
	10월	- 자산관리 시범프로그램(AMP)를 도입하여 금융기관들이 WMPs 대신 AMP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 - AMP 이용 시 압목적 보증은 없고 순자산가치(NAV)를 통해 평가
	11월	- 은행간 거래 및 증가속도 제한(은행간 자산을 예금의 50% 내로 억제) - 복잡한 은행간 거래 제한(2개 이상 은행을 이용한 신탁수익권 규제) - 은행간 거래 관련 회계 재정비 - 거래상대방 분산(1개 회사에 대한 익스포저가 기본자본(Tier1)의 50% 상회 불가)
국무원	12월	- 그림자금융의 범위 설정 - 은행(은감회), 보험(보감회), 증권(증감회), 온라인 금융사(인민은행) 등의 감독기관이 상이하므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조체제 강화 - 현재 발표된 규제의 개선(신탁상품 등록 시스템 도입 등) -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
인민은행 및 금융관련 감독기관	2014년 5월	- 시중은행이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조달하는 대출 규모 전체 부채의 1/3 미만으로 제한 - 은행이 다른 은행에 제공하는 대출 규모 기본자본(Tier1)의 50% 상회 불가

자료: 국제무역연구원(2014), 「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고찰」, BRICs INSIDE 2014, 3월호, 인용 및 수정.

■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계속 성장하고는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강화 등으로 2014년 하반기 들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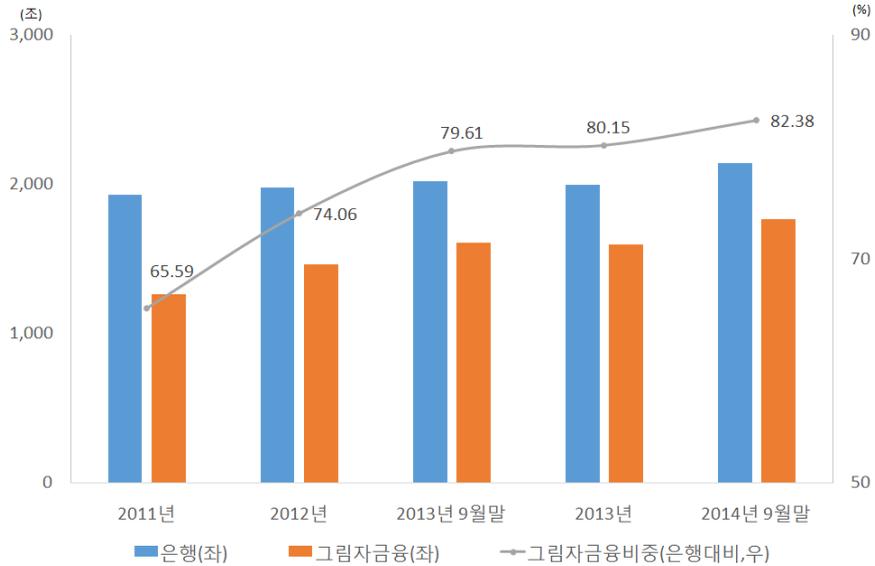
- 2014년 11월 말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는 21조 8,7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하였지만, 2012년(33.1%), 2013년(35.5%)에 비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한편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광의의 개념¹⁰⁾)는 2014년 9월 말 현재 1,762조 2,76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0조 원 이상(9.5%)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추정치(1,500조 원)를 초과하였음.

- 은행 조달자금 대비 그림자금융 비율은 2013년 9월 말 79.61%에서 2014년 9월 말 82.38%로 약 2.77% 상승하였음.

10) 〈표 1〉 자금순환표상 광의의 그림자금융 포괄범위(기관기준)를 참조.

〈그림 2〉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잔액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표 3〉 자금순환표상 광의의 그림자금융 포괄범위(기관기준)

자금순환표상 금융부문		〈광의의 그림자금융 기관〉	
중앙은행			
예금 취급 기관	은행	MMF 분리	집합투자기구(MMF제외)
	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신탁계정(은행·증권·보험)
	지주회사		MMF
	신탁계정(은행·증권·보험)		증권기관
	종금회사, 자산운용회사(투자신탁)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 및 연금			
기타 금융 중개 기관	뮤추얼펀드	대부사업자	자산유동화전문회사(주택금융 공사의 유동화 신탁계정 포함)
	증권기관(증권회사, 증권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회사 등)		
	기타중개회사(자산유동화전문 회사, 대부사업자 등)		
	공적금융기관(공적자금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등)		
금융보조기관(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신용보증기관 등)		기타기관(지주회사 및 금융보 조기관)	

자료: 이범호 외 1인(2012),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BOK 경제리뷰, 한국은행.

■ 국내 그림자금융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림자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나 투자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을 수행하기도 함.

- MMF의 경우 만기구조 및 유동성과 관련한 자산운용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Repo(환매 조건부 채권매매)의 담보재사용도 이루어지지 않음.
 - 2013년 11월부터 MMF에 포함되는 자산의 신용등급을 '최상위등급'과 '최상위 등급의 바로 아래등급'까지로 한정하는 등 안전자산 편입 비중을 높이고, 잔존 만기 1영업일 이내 자산을 10%, 만기 7영업일 이내 자산을 30%씩 채우도록 유동성을 규제함.
- 그림자금융 중 MMF는 위험대비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성과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낮아져 투자자 편익이 증대되고, PEF·부동산신탁회사 등 대체투자기구가 은행시스템을 대신하여 모험자본¹¹⁾을 공급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¹²⁾

■ 그러나 그림자금융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감독당국은 국제적 논의 및 국내 그림자금융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림자금융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기관이 위험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는 등 그림자금융 성장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관이 많고 거래방식도 복잡해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큼.
 - 미국에서 안전자산으로 인기가 높았던 MMF가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인출사태를 맞으며 위기를 심화시킨 바 있음.
- 금융당국은 그림자금융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인 논의 및 국내 그림자금융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국내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림자금융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위기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그림자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들이 해당상품 거래에 수반되는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역할, 책임, 관행 및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kiri](#)

11) 모험자본이란 위험을 많이 부담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평균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필요로 하는 자금의 중요한 원천을 말함(매일경제용어사전).

12) 이효섭(2015), 「한국 그림자금융의 위험 진단 및 발전 방안」, 자본시장 Weekly 2015-10호, 자본시장연구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동향과 시사점

이소양 연구원

요약

- 최근 중국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사실상 AIIB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인 것으로 분석됨. 미국은 동맹국의 AIIB 참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한국과 영국 등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향후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제금융체제 다원화,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강화,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 등이 예상됨.

■ 최근 중국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인프라 투자 자금 수요가 약 8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됨.
- 그러나 기존의 국제금융기구인 ADB와 세계은행(WB, World Bank)은 총 자본금이 약 3,830억 달러에 불과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중국은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IIB 설립을 공식 제안하였고 2014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20개 아시아 국가들과 AIIB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양해각서에 서명한 아시아 국가는 중국 외에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 있음.
 - 2015년 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요르단 등이 AIIB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AIIB의 창립회원국은 21개에서 26개로 증가함.
 - 중국은 500억 달러를 초기 자본금으로 출자하지만 향후 각국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1,000억

달러로 늘려 2015년 말까지 AIIB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중국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AIIB가 빈곤 퇴치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자금을 제공하는 ADB, WB와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강조하며 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표 1〉 IMF, WB, ADB, AIIB 비교

구분	IMF	WB	ADB	AIIB
주도국	미국	미국	일본, 미국	중국
본부	미국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예정)
설립시기(년)	1945	1944	1966	2015 말(예정)
자본금(억 달러)	8,370	2,230	1,650	1,000 ¹⁾
회원국 수(개)	188	188	67	52 ²⁾
설립 목적	세계 금융안정성 촉진	세계경제 부흥과 개발 촉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주요국 지분현황(%)	미국(17.69), 일본(6.56), 독일(6.12), 프랑스(4.51), 영국(4.51) 등	미국(15.85), 일본(6.84), 중국(4.42), 독일(4.00), 영국(3.75) 등	일본(15.67), 미국(15.56), 유럽연합(14.43), 중국(6.47), 인도(6.36) 등	미정 ³⁾

주: 1) AIIB 자본금은 중국이 500억 달러를 출자하고, 나머지 500억 달러는 여타 참가국들이 출자하기로 되어 있음.

2) AIIB 회원국 수는 창립회원국 참여 신청 마감기한인 2015년 3월 31일까지 집계된 개수임.

3) AIIB 주요국 지분현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GDP 등 경제력에 비례하되, 아시아 역내 국가가 75%, 역외 국가가 25%의 지분을 갖는 방안을 감안할 때 중국은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 최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사실상 AIIB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인 것으로 분석됨.

-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신(新) 실크로드’의 ‘일대’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 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에서 출발해 서남아를 거쳐 유럽-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일로’를 의미함.

-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학 강연에서 인구 30억 명을 포괄하는 ‘신(新) 실크로드’ 구축에 관한 구상을 처음 발표하였으며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공식 제안함.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청사진



자료: 신한금융투자 재인용.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이 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자국의 균형 발전 및 수출 확대를 기대함.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주변국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함.
 - ‘일대일로’ 전략은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친 인프라 개발 및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낙후된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발전 및 철강과 시멘트 등의 잉여 생산능력을 가진 업종의 대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해당 국가의 인프라 투자에 약 5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필요함.
- 한편, 그동안 중국기업은 중국개발은행(CDB, China Development Bank)¹⁾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해외진출 대상국²⁾의 정권교체 및 환경오염 문제 증가로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됨.

1) CDB는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 정부의 외화를 활용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임.

2) 최근 중국기업은 태국, 미얀마, 멕시코, 그리스에서 현지 정권교체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 미국은 동맹국의 AIB 참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을 고립하는 외교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함.³⁾

- 미국은 AIB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이유로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및 안정장치 부재를 들고 있음.
 - 중국이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는 지분구조와 집행부 중심의 운영체계가 국제관례는 물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됨.
 - 환경, 노동, 조달자격 등 국제금융기구 역할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규범들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됨.
- 미국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외교 루트를 통해 AIB에 대해 불참을 권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AIB 참여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한국,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은 2015년 3월 초까지 AIB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2015년 3월 미국의 동맹국이자 G7 회원국인 영국의 AIB 참여 결정 이후 AIB 참여 국가가 증가하자 미국은 AIB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완화하였음.

- 2015년 3월 12일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이 영국기업의 최대 투자 기회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A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2015년 3월 12~31일⁴⁾ AIB 참여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영국 외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터키, 한국, 네덜란드, 브라질, 그루지야, 덴마크, 호주, 이집트, 핀란드,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스웨덴, 대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AIB의 창립 회원국(예정 창립 회원국 포함) 개수는 기존의 26개에서 25개가 증가한 51개를 기록함.
- 미국은 3월 12일 영국의 AIB 참여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3월 16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AIB 참여 결정 이후 AIB의 참여 여부가 주권국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밝힘.
- 다만 미국은 AIB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MF, WB 등의 국제금융기구와 AIB간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음.

3) 한국금융연구원(2014, 12), 『AIB 출범 선언과 향후 논의의 방향』.

4) 2015년 3월 31일은 AIB의 창립회원국 신청 마감기한임.

- 일본의 경우 AIIB의 창립회원국이 되고 싶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오는 6월 AIIB 설립 협정문 공개 이후 AIIB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발표함.

■ 한국의 경우 2015년 3월 26일 국내기업 투자기회 확대 및 통일시대 대비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AIIB에 창립 회원국(예정)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함.

- 한국의 AIIB 참여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비교우위를 가진 한국기업이 8조 달러 규모의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⁵⁾
- 한국은 낙후된 북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NEADB,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설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한 AIIB는 NEADB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AIIB는 한국이 창립 회원국(예정)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이며 한국이 AIIB에서 유력한 지분율을 확보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향후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제금융체제 다원화,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강화,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 등이 예상됨.⁶⁾

- 현재 미국은 IMF, WB, ADB에 대한 지배를 통해 국제금융체제를 독점하고 있으나 중국은 AIIB 설립이 국제금융시장의 다원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함.
 - 미국은 IMF와 WB에서 각각 17.69%와 15.85%의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유일한 거부권을 갖고 있으며 ADB에서도 15.56%의 지분율로 일본의 15.67%와 버금가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은 IMF와 WB에서는 물론 ADB에서도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⁷⁾에 비해 발언권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2010년 신흥국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IMF 지분 개혁안은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으나 미국 국회의 반대로 4년째 표류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도화선이 되었음.
- AIIB는 빈곤퇴치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는 ADB, WB와 달리 인프라

5)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2015.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가입 결정 환영』.

6) Cecilia Tortajada, Asit K Biswas(2014, 10), "AIIB: Myths, vested interests, reality".

7) IMF에서 발표된 2014년 세계 GDP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10조 3,554억 달러로 미국(17조 4,163억 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위에 위치한 일본 GDP(4조 7,698억 달러)의 2배를 초과한 수준임.

-
- 투자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어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AIIB 설립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의 계기될 것으로 기대함.
 - AIIB 설립으로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AIIB 설립 이후 위안화로 결제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kiri](#)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배경과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최근 미국 및 독일 등 글로벌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독일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은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ECB 양적 완화정책 효과의 반작용에 기인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글로벌 채권시장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글로벌 금리급등이 통화정책 정상화에서 비롯된다면 무역수지 적자 또는 단기외채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의 급격한 자본 유출로 금융체제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 저금리 통화기조의 수정 또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미국 및 독일 등 글로벌 국채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월 20일 0.075%에서 5월 12일 0.727%로 65bp 상승함.
 - 작년 6월 ECB가 마이너스 예치금리를 도입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최근 상승으로 ECB 국채매입이 시작된 3월 9일 0.268% 수준을 크게 상회함.
 - * ECB 마이너스 예치금리 도입은 시중은행들이 기업이나 가계 등에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고 중앙은행에 쌓아두는 데 대해 사실상의 벌칙을 주어서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조치임.
-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5월 12일 전 거래일 대비 11bp 오른 연 2.29%를 기록하여 2014년 12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15bp 오른 연 3.05%였으며,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연 3%를 웃돈 건 작년 12월 5일 이후 처음임.

〈그림 1〉 독일, 미국 만기 10년 국채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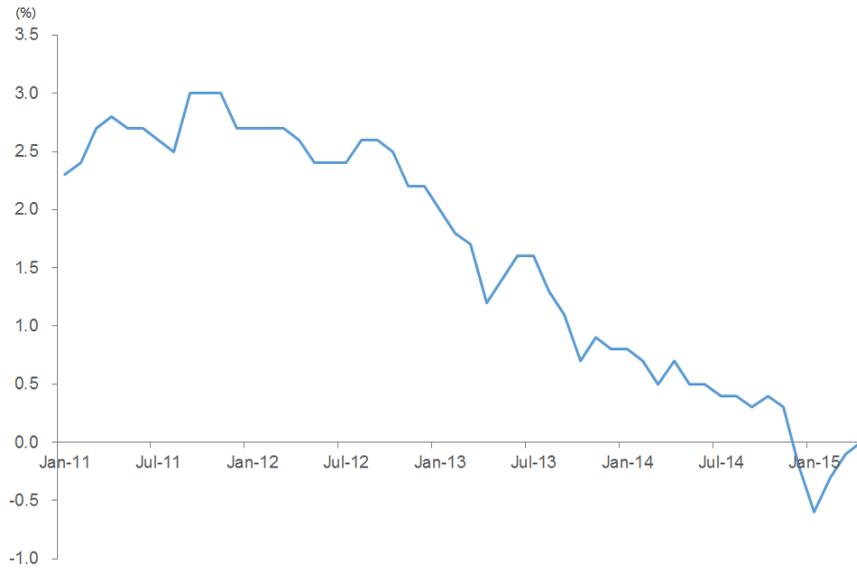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미국과 독일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ECB 양적 완화정책 효과의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후자요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지난 3월부터 ECB가 유로지역의 디플레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양적 완화정책을 실행하면서 금리가 급락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임.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 10월 이후 1%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초래하였으나,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0%를 기록함 (〈그림 2〉 참조).
- 독일 단기금리(3년 이하)가 ECB 예치금리인 -0.2%를 하회하고 장기금리(10~30년)는 0%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채권 전문가들의 매도 권고가 잇따르면서 차익실현 유인이 강화되었음.

〈그림 2〉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Eurostat.

■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거론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그동안 급락세를 보였던 유가가 최근 크게 오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형성
 -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월 13일 \$48.87에서 5월 14일 \$59.88로 상승하였으며, 브렌트유 기준 유가도 1월 13일 \$52.92에서 5월 14일 \$66.70으로 상승함.
 - 5년 후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스왑 금리¹⁾가 1월 14일 1.48%에서 5월 14일 1.82%까지 상승함.
-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 실질금리는 떨어져 채권 투자매력이 감소하게 됨.

■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글로벌 채권시장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정상화했을 때 쏠림현상²⁾으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고 금리 변동성이 증폭될 것임.

1) 5년 후 5년 만기 스왑금리는 통상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알려져 있음.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스왑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낸다고 말한 바 있음.

2) 모든 금융기관들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채권을 대량 매각하면 추가 금리인상이 발생하고 추가 매각이 반복되는 현상

- 특히 신흥국은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동반 상승하면서 ‘긴축 발작(taper tantrum)’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큼.
 - 2013년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로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신흥국은 주식·채권·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임.

■ 최근 글로벌 금리급등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의 여부는 좀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만 후자인 경우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됨.

- 과거 미국 금리인상 시점에서 신흥국들의 외환 또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볼 때, 이번 금리상승이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기인한다면 무역수지 적자 또는 단기외채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의 급격한 자본 유출로 금융체제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 석유파동 이후 1980~81년에 미 연준이 물가안정을 위해 고강도 긴축통화정책(기준금리 11% → 20%)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위기를 겪은 바 있음.
 - 1990년대 중반에도 달러 약세와 저금리를 기반으로 단기 해외차입에 의존하였던 아시아 신흥국(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들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³⁾ 이후 달러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1997년에 금융 및 외환위기에 직면함.
 -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들이 달러화 채권을 대량 발행하여 신흥국의 달러화 채권 규모⁴⁾가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기초 경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금리충격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나 국내 통화정책 기조 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 금리상승은 국내 금리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대내적으로 민간 부채조정의 연착륙(soft-lending)을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나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 금리도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봄.
-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금리인상 압력은 원화 가치의 평가절하에 반영될 수밖에 없음. [kiri](#)

3) 1994년 Fed는 장기간 유지했던 연 3%대 기준금리를 1년 만에 6%로 인상하였음.

4) 2014년 3/4분기 현재 2조 달러로 2008년 이후 3배 증가함.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지난 6월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로 하락함.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임. 대출금리 인하는 전세금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가하는 거주비 부담은 내수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또한 2012년 2/4분기 이후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금리 하락폭은 확대되고 있음.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부진, 그리고 금리하락은 우리 경제의 성장성과 더불어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특히 저금리 장기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여 보험산업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보험회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라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함.

- 지난 6월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실물경제 회복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와 이로 인한 내수부진 지속, 그리고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악화와 순자산가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음.

- 기준금리는 1.75%에서 1.50%로 인하되었는데 향후 은행 여수신금리와 시장금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최근 OECD가 우리나라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와 가계의 거주비 부담 등으로 내수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가계부채 규모는 2015년 1/4분기 말 가계대출 1,040조 원, 판매신용 5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5%, 3.2% 증가함.

- 2015년 1/4분기 주택담보대출은 469.9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하였고, 특히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13.4%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3.7%보다 높음.

● 2012년 2/4분기와 3/4분기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전세가격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지난 해 2/4분기 이후 주택매매거래 증가세 확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은 상승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하락하고 있고 주택매매거래는 2014년 2/4분기 이후 평균 19.21% 증가함.

● 전월세 임차가구 비중 확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2014년 20.3%로 2007년 17.5%에 비해 2.8%p 상승했으며 수도권 월세가구 비중은 2014년 46.1%로 상승함.¹⁾

〈표 1〉 기준금리 증감과 수신금리, 전세가격 증가율 추이

구분	06.1Q → 06.3Q	07.2Q → 08.1Q	08.3Q → 09.1Q	10.2Q → 11.2Q	12.2Q → 13.2Q	14.2Q → 15.1Q
기준금리(%p)	0.50	0.75	-3.00	1.25	-0.75	-0.75
수신금리 ¹⁾ (%p)	0.32	0.72	-2.00	0.75	-0.97	-0.57
전세가격증가율(% ²⁾)	4.80	4.96	3.05	7.79	2.62	3.83
주택담보대출금리(%p)	0.25	0.69	-1.31	0.06	-1.06	-0.45
주택매매거래 증가율(%)		-18.09	-21.18	1.85	-3.26	19.21
가계대출 증가율(%)	10.34	10.19	8.60	8.37	5.53	6.69
명목 GDP증가율(%)	5.17	8.18	3.53	8.14	3.00	3.68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	7.00	8.05	4.47	6.36	3.72	2.90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임.

2) 전세가격, 가계대출, 명목 GDP와 민간소비 증가율은 기간 중 평균 증가율이고 기준금리, 수신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간 중 증감임.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 2012년 2/4분기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금리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약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

● 2012년 2/4분기에서 2013년 2/4분기, 2014년 2/4분기에서 2015년 1/4분기 동안 기준금리는 각각 0.75%p 인하되었는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72%p, 0.84%p 각각 하락함.

1) 국토교통부(2014. 4. 15),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으로 이번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 중장기 국고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전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²⁾
 - 최근 미국 국채금리(10년)는 2015년 1월 1.64%에서 4월 2.03%, 6월 11일 2.38%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5년)는 2015년 4월 1.86%, 5월 2.11%에서 6월 11일 2.09%로 상승함.

〈표 2〉 기준금리 조정과 시장금리의 변화

(단위: %p)

구분	06.1Q → 06.3Q	07.2Q → 08.1Q	08.3Q → 09.1Q	10.2Q → 11.2Q	12.2Q → 13.2Q	14.2Q → 15.1Q
기준금리	0.50	0.75	-3.00	1.25	-0.75	-0.75
주택담보대출금리	0.25	0.69	-1.31	0.06	-1.06	-0.45
무담보 콜금리	0.52	0.42	-3.03	1.08	-0.62	-0.53
CD(91일물)	0.43	0.44	-2.58	0.99	-0.80	-0.58
국고채 3년	-0.16	0.13	-1.68	-0.06	-0.72	-0.84
국고채 5년	-0.29	0.13	-1.04	-0.42	-0.71	-1.00
회사채 3년	-0.27	0.86	0.58	-0.15	-1.00	-0.99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임.

2) 기간 중 증감임.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

■ 가계부채 증가, 내수부진 지속, 그리고 저금리 장기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성과 더불어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소비위축은 부채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간소비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임.
-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소득증가가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전월세 임차가구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계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 거주비용과 생활자금을 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주거비 부담 증가는 내수부진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실 확산은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2) 자유로운 자본이동으로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가 해외 금리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전용식 외(2014),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산업」, 보험연구원 참조.

- 엔저 지속으로 수출경기도 악화될 경우 국내 경제의 장기부진 가능성은 커질 것임.

■ 특히 저금리 장기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여 보험산업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저금리 장기화로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산-부채관리(ALM)를 위해 장기 자산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자산부채 관리를 위해 사회간접투자,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자산 운용을 확대할 필요
-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운용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므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처를 모색하기 보다는 보험영업이익 합리화, 비용절감을 통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함.
 - 독일 보험산업의 경우 1980년부터 시작된 금리하락에 대응하여 보험영업이익 합리화를 추진하였고 캐나다의 경우 상품포트폴리오 조정, 금리위험 축소를 통해 대응하고 있음.³⁾
- 강화된 RBC 제도와 IFRS4 Phase 2가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 순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할 수 있어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IFRS 4 Phase 2가 시행될 경우 고금리확정형 상품, 최저보증 상품 등으로 인한 예상손실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하므로 보험회사 순자산가치가 훼손될 우려

■ 보험산업의 합리적인 저금리 대응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보험회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함.

- 표준이율과 공시이율이 시장금리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함.⁴⁾
- 과거의 양적 성장 전략보다는 수익중심의 질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kiri](#)

3) 전용식 외(2014),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전략」, 보험연구원 참조.

4) 전용식 외(2014),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 장기화와 보험산업」, 보험연구원 참조.



국내 구조화채권시장 현황 및 시사점

황인창 연구위원, 최창희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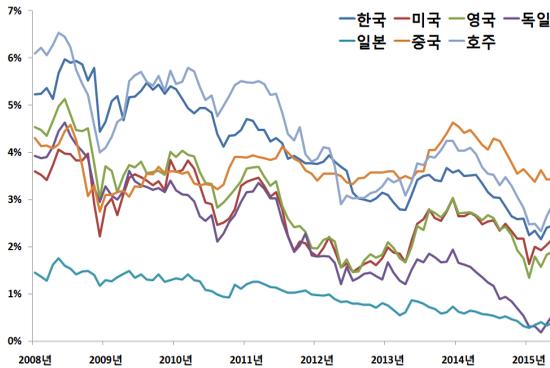
요약

-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회사, 연기금, 공제 등 기관투자자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구조화채권(structured note) 투자에 꾸준한 관심을 가짐. 국내 구조화채권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충족하기 위해 만기구조가 장기화되고, 해외금리(주로 미국 및 유럽)를 이용한 상품이 증가하였음. 올해 유력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금리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상품구조에 따라 일부 구조화채권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 있음. 위를 종합해 볼 때, 금융회사들은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구조화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회사, 연기금, 공제 등 기관투자자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새로운 자산운용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데, 구조화채권(structured note) 투자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급격히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내 역시 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구조화채권은 일반채권(원금+고정이표)¹⁾과 파생상품(금리연계 추가변동이표)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상품으로, 일반채권에 비해 높은 표면금리를 제공함(〈그림 2〉 참조).
 - 국내 구조화채권시장에서의 구조화채권은 대부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리연계채권임.
 - 주요 투자자는 저금리 환경에서 일반채권을 대체하여 높은 수익을 필요로 하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기관투자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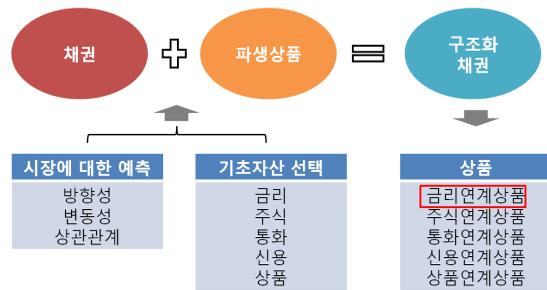
1) 발행할 당시 이자율이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고정금리부 채권.

〈그림 1〉 국가별 국채 10년 수익률 추이(월간)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2〉 구조화채권의 개념



■ 최근 국내 구조화채권시장의 큰 특징으로 첫째, 만기구조의 장기화, 둘째, 해외금리(주로 미국 및 유럽)를 이용한 상품 증가를 꼽을 수 있음.

- 2009년 이후 구조화채권은 연 평균 약 26조 원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특히 복합구조화채권의 발행이 증가함(〈그림 3〉 참조).
 - 단순구조화채권²⁾은 지급이자율(표면금리)이 기준금리에 단순 연동된 변동금리부채권임.
 - 복합구조화채권³⁾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높은 지급이자율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낮은 지급이자율(일반적으로 0)을 제공하는 변동금리부채권임.
- 만기가 긴 구조화채권 상품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신 조기상환옵션이 부여된 형태로 발행됨.
 - 만기를 장기화할수록 높은 지급이자율을 가진 구조화채권 설계가 가능하고, 대신 구조화채권 발행자는 만기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callable option)을 구조화채권에 부여함.
- 구조화채권 설계 시 국내금리만으로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자 해외금리도 같이 이용하는 구조화채권⁴⁾ 발행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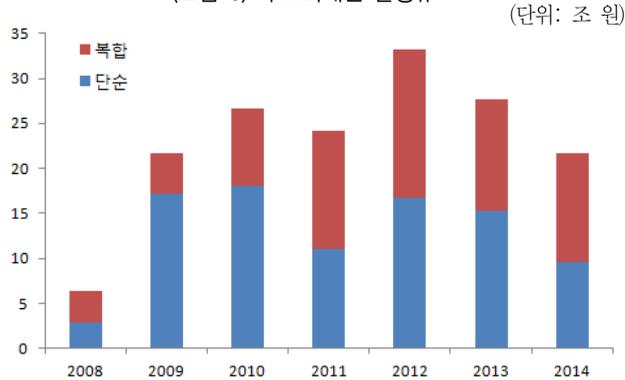
2) 지급이자율 = 기준금리(reference rate) + 가산금리(spread)

3) 지급이자율 = C_1 (기준금리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 C_2 (기준금리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C_1 > C_2$ (일반적으로 $C_2 = 0$)

4) Quanto 형 구조화채권이라고 분류함.

〈그림 3〉 구조화채권 발행규모



자료: KIS Pricing(2014년 11월 말 기준).

■ 올해 유력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금리기간구조(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⁶⁾)는 2014년 10월 대규모 자산매입프로그램(QE3⁷⁾)을 종료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0% ~ 0.25% 목표범위를 유지해온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시장금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고, 변동성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리기간구조에 영향을 줄 것임.

■ 이러한 금리기간구조 변화는 국내 구조화채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상품구조에 따라 일부 구조화채권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 있음.

- 최근 국내에서 발행된 구조화채권 중 해외금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채권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러한 구조화채권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특히, 구조화채권 가격은 상품구조에 따라 조기상환위험, 금리상승위험, 변동성확대위험 등 내재된 위험에 의해 상당부분 하락할 수 있음.
 - 구조화채권 투자를 통해 잠재적인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나, 이는 위험-수익 교환관계(risk-return tradeoff)에서 비롯된 위험부담을 전제로 한 보상임.
 - 구조화채권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 변화(방향성, 변동성 등)에 의한 가격

5) 금리기간구조란 채권 만기와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말함.

6) Federal Reserve Board.

7) QE3란 2012년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3차 양적 완화조치(Round 3 of quantitative easing)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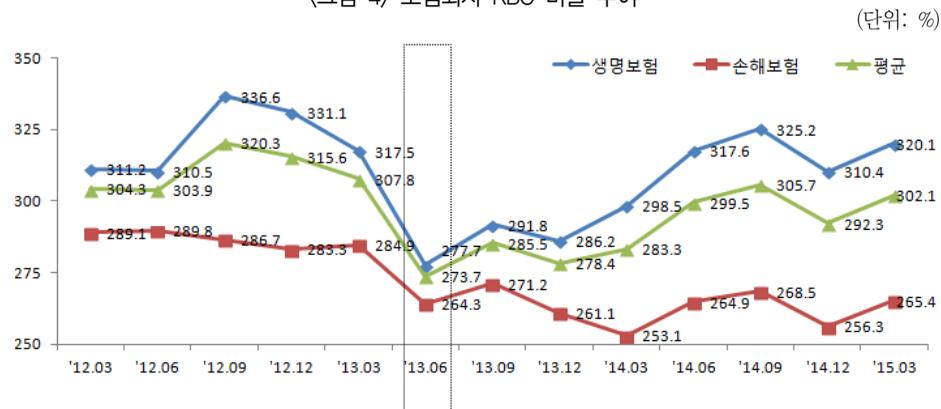
변화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일반채권보다 훨씬 큼.

- 따라서, 금리 상승 시, 구조화채권 가격은 일반채권 부분에 의해 하락하고, 추가로 상품구조가 금리 상승에 취약할 경우⁸⁾, 내재 파생상품으로 인해 더욱 크게 하락함.
- 또한, 변동성 확대 시, 높은 지급이자율을 주는 조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화채권의 가격은 하락함.

■ 위를 종합해 볼 때, 금융회사들은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구조화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6월말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에 따른 금리 상승 및 주가 하락으로 인해 유가증권의 평가 손익이 대폭 감소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은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바 있었음(〈그림 4〉 참조).
 - 일부 보험회사들의 RBC 비율은 권고수준(150%) 내외로 떨어졌고, 일부 대형사의 RBC 비율도 200% 근처로 떨어졌었음.
- 금융회사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일부 구조화채권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조화채권에 내재된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화채권 적정가격 평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kiri](#)

〈그림 4〉 보험회사 RBC 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8) 예를 들어, 국내에서 많이 발행된 Range Accrual 형 상품은 기준금리(CD 금리, 국고채 금리 등)가 일정한 범위(range) 내에서 유지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화채권임. 이러한 구조화채권의 경우, 금리상승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해당 구조화채권의 가격은 크게 하락함.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전망

전용식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지난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우리나라의 IT인프라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발전 및 핀테크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예외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현행 은행의 업무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자산규모와 취급 업무를 고려하여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는 완화할 계획임. 은산분리 예외적용과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법 개정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금융위원회의 방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은행들과 정보통신 기업들이 합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매금융 중심의 사업구조가 예상됨.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간 융합 확대와 이를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난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짐.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우리나라의 IT인프라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발전 및 핀테크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모바일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되고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
 - 금융과 정보통신부문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핀테크 활성화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후 일부 지급결제사업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의향이 있다고 밝힘.
- 인가 심사기준에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임.
 -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

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함.

-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출현 및 성공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 후 은행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인가하기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기업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확대하고 자본금 규제를 500억 원으로 인하함.
 - 2015년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함.
 -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하고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을 금지함.
-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4%에 불과함.
- 기존 은행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현재도 가능함.

〈표 1〉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도입방안	구체적인 내용
소유구조	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 4% → 50% 상향조정
최저자본금	은행업 인가 절반수준인 500억 원으로 완화
업무범위	일반은행과 동일
건전성규제	자기자본 및 유동성 비율 등 일정기간 예외 인정
기타	전산설비 구축 외부위탁 허용, 계좌개설시 다양한 비대면확인을 통한 실명확인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6. 18).

■ 현행 은행의 업무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자산규모와 취급 업무를 고려하여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

- 건전성 규제는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차주별 리스크도 고려하는 BaselⅢ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Basel I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유동성 규제는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여 특수은행의 규제비율을 적용하기로 함.
 - 유동성 규제(LCR)¹⁾의 경우에도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가 제한적이므로 일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80%)이 아닌 특수은행의 규제비율(60%)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 은산분리 규제와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완화는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 기존 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근거가 부족함.
- 은행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고유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의 방안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될 경우 기존 은행들과 정보통신 기업들이 합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은행 고객들의 거래 은행 변경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고객 확보는 제한적일 수 있고 정보통신 기업들은 은행업 경험이 부족함.
- 저금리-저수익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으로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의 미쓰비시도쿄은행과 통신사업자인 KDDI가 설립한 지분뱅크를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분뱅크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절감 등으로 2008년 7월 출범 이후 4년 만인 2012년 흑자 전환됨.²⁾
 - 지분뱅크의 고객은 150만 명이나 인력은 157명에 불과함.³⁾
 - 지분뱅크의 2012년 ROE는 8.3%이며 2014년 총자산은 7,113억 엔, 자본금은 350억 엔이며 개인고객 대상 여수신, 담보대출, 투자상품 판매가 주된 사업임.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현금·국채 등 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2) 지분뱅크의 2014년 기준 이자수익 비중은 69%, 수수료 수익 비중이 21%임.

3) FinacleConnet(2014).

〈표 2〉 지분은행과 주요 주주들의 사업 전략

미쓰비시도쿄은행	지분은행	KDDI
여성과 젊은 세대 중심의 고객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형 금융보다는 거래형 금융 위주의 수수료 수입 극대화 전략 • 휴대전화/PC 등을 이용한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 	통신서비스 차별화
높은 예금금리 낮은 수수료	부가채널로서 휴대전화가 아닌 계좌 개설에서부터 폐지까지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	은행 고객 유치를 통한 가입자 증가
관계형 금융의 리스크 회피	현금의 입출금은 미쓰비시도쿄 지점의 ATM을 이용	은행업 진출이라는 신성장동력 확보
자동화를 통한 비용절감	엔화 및 외화 예금/대출/펀드/방키슈랑스 상품 판매	

자료: 미쓰비시UFJ 연차보고서.

■ 은행업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므로 중소기업 대출 등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은 제한적일 것이고 소매금융 사업 비중이 높을 것임.

- 상대적으로 완화된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려는 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매금융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관계형 금융이란 은행이 비용을 투자하여 획득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한 고객에게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매금융 등 거래형 금융이란 정량적 평가에 근거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일본의 주거대출은행 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관계형 금융의 예로 생각할 수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이 현재 은행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옮긴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으나 해외 은행들은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스마트폰 이용자와 젊은 고객들의 수요 변화, 기술의 발전, 은행업의 보편화, 편의성 등으로 인해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간 융합 확대와 이를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존 거래 은행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리와 수수료, 그리고 편의성 등에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함.
 - 설립 및 고객 유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의 혁신과 더불어 금융업권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인터넷 전문은행이 온라인에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함.
 -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은 20억 엔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분뱅크의 2014년 말 자본금은 350억 엔임.
 -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의 빈번한 이동과 이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미국 통화감독청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승인할 때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성, 계좌보유자와 사용자 보호, 그리고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⁴⁾
 - 비대면채널을 통한 실명확인,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방식은 고객 정보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전자금융 사고 규모는 약 3조 원에 이룸.⁵⁾ **kiqi**

4) 전용식 외(2015),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보험연구원.

5) 김종현(2015),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조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그리스 사태의 현황과 향후 전개과정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그리스 정부가 만기도래 채권에 대한 상환을 거부함으로써 국채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채권단과의 협상 쟁점은 그리스 정부가 재정수지 흑자 목표치 하향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채권단이 이를 거부한데서 비롯되었음. 채권단의 협상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그리스 정부는 국채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유로존 탈퇴를 선택할 수 있음.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다만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음: 1)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있으나, 재협상의 결과로 그리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는 경우, 2) 유로화회원국으로서 잔존하면서 채무불이행 공식적 선언, 3) 채무불이행 선언 및 유로화 탈퇴, 4) 이번 계기를 통한 재정통합(fiscal union) 가속화. 시나리오 1의 가능성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채권단이 추가적인 부담을 할 의향이 있을 경우에 가능함. 시나리오 2는 성립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시나리오 3은 유로화 체제의 재편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컨대 핵심 유로존(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과 변방 유로존으로 이분화될 수 있음. 유럽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미국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그리스사태로 오히려 유럽재정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어 시나리오 4도 가능함. 향후 그리스 사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나 그 충격은 글로벌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한 위기의 유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2015년 7월 5일 그리스 국민이 국제 채권단의 채무 협상안에 대해 반대¹⁾를 압도적으로 선택하면서 그리스 사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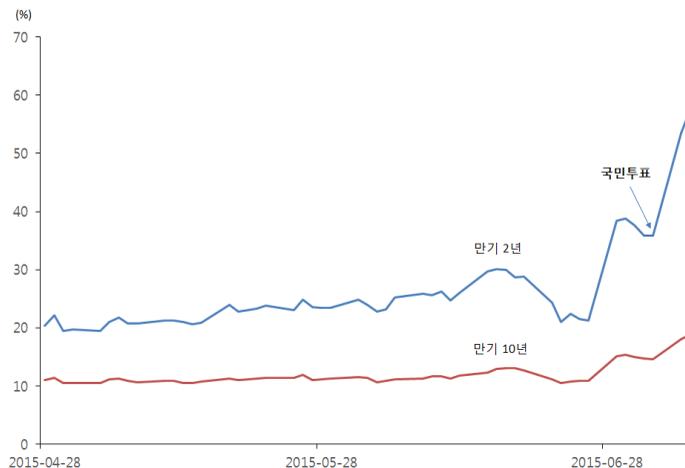
●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만기일이었던 지난달 30일에도 16억 유로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해 IMF는 그리스가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

1) 투표율: 62.36% (유권자: 약 985만 명), 찬성: 38.7%, 반대: 61.3%

- 그리스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따라 은행 영업중단 등의 자본통제조치를 8일까지 연장함.
 - 지난 6월 26일 긴급유동성지원(ELA²⁾) 요청이 거부되면서 그리스 정부는 뱅크런 사태로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우려됨에 따라 은행 영업중단과 현금인출기(ATM) 출금 제한(하루 60유로) 등의 자본통제조치를 시행함.
-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에 대한 ELA 한도를 890억 유로(약 984억 달러)로 유지하고 담보물의 헤어컷(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자금지원 조건을 강화함.³⁾
 - 담보물 할인비율이 높아지면 그리스 은행들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제한되며, ELA 자금을 쓸 수 있는 담보비율이 낮아져 그리스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ELA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임.
 - 그리스 은행들은 ELA를 받으면서 주로 정부보증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음.
- ECB는 유로존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일까지 그리스 은행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그리스 국채는 채권시장에서 이미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만기2년 국채 유통금리는 50%에 육박하고, 10년 국채는 약 20%대에 육박(〈그림 1〉 참조)

〈그림 1〉 그리스 만기 2년, 10년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2) 긴급유동성지원(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 ELA)이란 시중은행이 자금난을 겪을 때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제도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만료되고 금융시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된 상태에서 그리스의 유일한 유동성 공급 수단이었음.

3) ECB는 조정되는 담보물 할인비율(헤어컷 규모)은 공개하지 않음.

■ 그리스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그리스의 유로화 사용 여부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음.

- 시나리오1: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있으나, 재협상의 결과로 그리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는 경우
- 시나리오 2: 그리스가 유로화회원국으로서 잔존하면서 채무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선언
- 시나리오 3: 채무불이행 선언 및 유로화 탈퇴
- 시나리오 4: 재정통합(fiscal union) 가속화

■ 시나리오 1의 가능성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채권단이 추가적인 부담을 할 의향이 있을 경우에 가능함.

- 그리스는 6월 30일에 제시한 마지막 제안을 수정하여 채권단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 재정개혁의 지연과 이에 따른 채권단의 추가 자금 부담과 원금의 일부 탕감부담을 채권단이 얼마나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
- 다만, 시간이 그리스에게 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채권단은 그리스에 대한 ECLA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시간을 계속 끌면서 그리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긴축 합의에 나서도록 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그리스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다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 채권단의 추가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시나리오 2는 유로화회원의 자격요건인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 위배되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봄.

- SGP 재정건전성 요건이란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내외로 유지하거나 현재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60%로 감축하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표 1〉 그리스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초재정수지	-10.2	-5.2	-2.9	-1.3	1.2	1.5	3.0	4.5	4.5	4.2	4.2	4.2
국가채무비율	126.2	145.7	171.0	156.5	174.9	177.2	172.7	162.4	151.8	142.1	132.9	124.2

주: 2015년 이후는 추정치임.
자료: IMF.

- 채무불이행 선언은 동 조건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유로화 탈퇴로 해석할 수 있음.

■ 시나리오 3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시나리오가 기정사실화 되는 경우 EU차원에서 유로존이 재편성될 가능성이 있음.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재정취약 회원국들(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의 유로존 탈퇴를 유발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유로화체제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음.
- 유로화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유로화체제를 핵심 유로존(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과 변방 유로존으로 분리해 이원화된 유로화체제로 재편성할 가능성도 있음.
 - 2010년 유럽 각료급 회담에서 기존 유로와 함께 또 다른 통화인 '슈퍼 유로'를 병행해 사용하는 유로 이원화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음.⁴⁾
 - 즉,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단일통화를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말함.

■ 유럽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미국사례를 비추어 볼 때, 그리스사태로 오히려 유럽재정통합(fiscal union)이 가속화될 수 있어 시나리오 4도 가능함.

- 과거 유럽환율매카니즘(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ERM)의 붕괴를 계기로 유로화가 도입되었듯이, 그리스사태로 인한 유로화붕괴를 우려하여 유럽재정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음.⁵⁾
 - 유로화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회원국간 ERM을 도입하였으나, ERM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출범한 사실이 있음.
 - 1979년 회원국간 일종의 고정환율제도인 ERM의 유지를 전제로 하였으나, 1992년 투기적 공격으로 회원국들이 탈퇴(영국, 이탈리아)하면서 ERM 체제가 붕괴되었음.
 - ERM 체제 붕괴로 인해 회원국간 유로화출범에 비관적이었으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1999년 유로화가 전적으로 도입되었음.
- 또한 이번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U가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리스 정부로부터 재정주권(조세징수권 등)을 일부 양도 받음(또는 EU가 그리스에 유럽연합정부세금을 부여함)으로써 유로회원국간 재정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

4) 텔레그라프(2010. 6. 19), Germany and France examine 'two-tier' eu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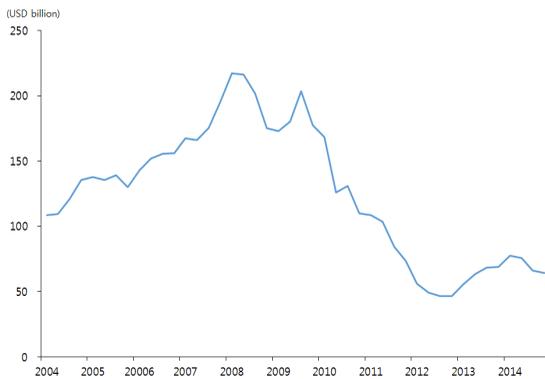
5) 유럽공동체 설립에 기여하고, 1952~1955년 유럽공동체 의장을 지낸 모네(Monnet)는 통합연쇄반응(integration chain reaction)을 기대함. 통합연쇄반응이란 통합이 더 견고한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위기가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임(Guiso et al, 2015, Monnet's error?, NBER working paper).

- 이러한 방안은 과거(1790년) 미국 주정부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졌을 때 미 연방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고 주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연방정부세를 부과한 사례와 유사함.⁶⁾

■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든 향후 그리스 사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지역적 충격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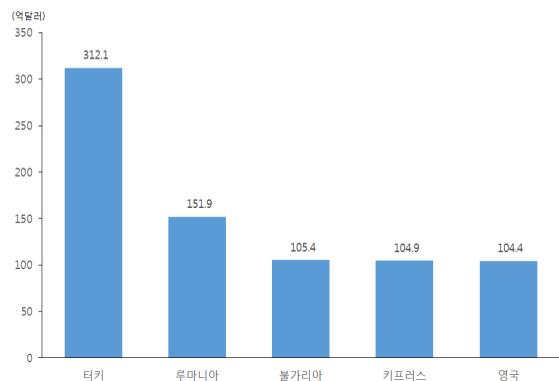
-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시장과 더불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구조화상품의 도입으로 인해 과도한 레버리지가 내재되어 있어 전염효과가 컸음.
- 반면 이번 그리스 사태의 경우, 그리스 국가부채 중 민간부문 채무는 20%에 불과하고 그리스에 대한 각국 금융기관의 익스포저(exposure)가 그리 크지 않으며 단순 기초현물상품(국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연계성이나 전염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그림 2〉 참조).
- 하지만, 그리스 은행들이 발칸반도 국가들(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게 제공한 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자금유출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시할 필요가 있음(〈그림 3〉 참조).
- 이를 종합해 볼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나라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그리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kiri](#)

〈그림 2〉 민간 은행의 그리스 익스포저



자료: BIS.

〈그림 3〉 그리스계 은행의 국가별 대출 현황



자료: BIS.

6) Sargent(2012), U.S. Then, Europe Now.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평가

전용식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지난 7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내용은 첫째,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 유도, 상환능력 심사 강화, 그리고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제 2 금융권 대출 관리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이유는 이지만 납입하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분할상환 대출이 증가할 경우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임. 또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제 2 금융권의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은 가계의 차입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 상승으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 경기 부진 지속, 차입 제한 등으로 가계의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160.3%로 스페인 130.5%, 포르투갈 140.6%, 그리스 11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은 가계의 지출 여력에 비해 부채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 상승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가계의 재무적 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y)이 높다는 의미임.
 -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가계부채의 90%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에 미치지 못함.
 - 가계부채 규모는 2015년 1분기 1,099조 원이며 은행·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각각 375조 원과 94.6조 원임.
-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2012년 11월, 2014년 8월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됨.
 -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9.2조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같은

기간 35.5조 원, 2013년 같은 기간 20.7조 원 증가한 것에 비해 큼.

- 향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은 국내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재무적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임.

〈표 1〉 2013년 기준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비율¹⁾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79.1	86.0	56.4	54.4	66.0	79.0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57.2	75.9	53.8	52.7	23.4	34.5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114.1	154.0	93.9	104.2	129.2	160.3

자료: OECD, 각국 중앙은행 및 자금순환표.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가계부채의 규모와 가계의 상환부담을 모두 관리하기 위한 것임.¹⁾

- 거치기간 단축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 상환능력 심사 선진화로 가계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이번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진 제 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억제 방안도 포함됨.
 - 제 2 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 인정한도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거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대출 심사를 담보 중심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임.
- 또한 주택담보대출 인프라 확충과 은행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역량 강화와 MBS시장 활성화, 그리고 은행권 자본 확충 등을 유도하기로 함.

■ 분할상환 관행 정착 방안은 가계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정책인데 이번 대책은 거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6월과 2014년 2월에 발표한 대책에는 은행의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를 2016년까지 30%, 2017년까지 40%로 할당하였고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도 40%

1) 금융위원회(2015. 7. 22),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참조.

로 유지함.²⁾

- 그러나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여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후 분할상환 비중은 7.7%에서 2014년 26.5%로 상승함.
- 보험권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013년 26.1%임.

● 국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시중금리 상승 시 가계의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고 함.

- 2013년 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비중은 69.7%,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4.1%임.

〈표 2〉 은행권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고정금리	0.5	3.1	14.2	15.9	23.6
비거치식 분할상환	6.4	7.7	13.9	18.7	26.5

자료: 금융감독원.

■ 상환능력 심사도 소득 확인 내실화 이외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를 대출 가능 금액에 반영하도록 강화되었음.

-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소득 입증 자료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잠재적 금리 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여 과거의 담보위주 대출심사에 비해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됨.³⁾
- 또한 소득·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클 경우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함.

■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거치기간 단축 및 분할상환 유도 정책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제고에는 긍정적이나 가계의 원리금 부담은 가중될 것임.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내년 이후 연장되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과 내년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

2)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 6. 29), “제 2 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2012. 2. 27),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 2. 25),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014. 2. 27) 등에서는 분할상환 유도를 강조함.

3)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상환능력을 추정하는데 신뢰성이 낮은 자료보다는 사업·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자일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함.

출에 적용되는데 일시상환 대출의 90% 내외가 연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90조 원의 주택담보 대출이 분할상환으로 유도되거나 연장 시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2014년 9월 말 일시상환 대출 규모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8.9%인 101조 원에 이룸.
- 2012년 5월과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적용되는 대출금액은 더 클 것임.

● 따라서 90조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 분할상환이 유도되거나 대출금액이 줄어들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중될 것임.

- 2014년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은 저소득층인 1분위 69%, 2분위 37%, 3분위 31%, 4분위 25%, 5분위 23%임.⁴⁾
- 가구주 나이가 50~60대인 가계의 가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비율은 26%, 가구주 나이 60대 이상 가계의 경우 27%임.
- 대출금이 줄어들 경우 가계의 상환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대출 상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

■ 국내 경기가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이번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재무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내년 중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 경제의 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부진은 지속될 수 있음.

- 2015년 2/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에 그쳐 2014년 1/4분기 1.1%를 기록한 이후 5개 분기 연속 1% 미만을 기록함.
-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내 경제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정책으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가계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경기가 악화될 경우 은행의 대출 회수·축소가 경기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기순응성 현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음.

● 또한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제 2 금융권의 대출을 억제할 경우 차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4) 소득 기준 1분위의 가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69.8%라는 점은 연간 소득의 69.8%를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함. 김완중(2014),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상황 점검 및 시사점: 가계금융 복지 조사를 중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계의 신용경색을 심화시킬 우려

- 주택 구입용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1년 43.2%, 2012년 50.6%, 2013년 50.9%, 2014년 1~7월 53.8%임.
- 특히 2014년 1~7월 중 주택 구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사용 목적 가운데 25.2%가 생계자금임. **kiri**



신흥국¹⁾발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최근 들어 신흥국들은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G2 리스크에 노출되어 이른바 신흥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G2 리스크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하락 및 통화가치 급락을 초래하고, 미국 금리인상 전망은 해외자금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기업부채 위기를 통해 글로벌 금융자산 가격 상승세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G2 리스크 중 중국 관련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훨씬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됨. G2 리스크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격의 파급경로를 무역, 금융별로 채널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주요 연구기관 및 언론에서 신흥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파이낸셜타임즈).

● 세계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타이저지수²⁾에 의하면 신흥국 경제가 경제종합, 실물경제활동, 신뢰도 측면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신흥국의 경우 경제종합지수, 실물경제활동지수, 금융지수, 신뢰지수는 마이너스(-)로 부진하였으나 선진국은 금융지수를 제외하고는 플러스(+)를 기록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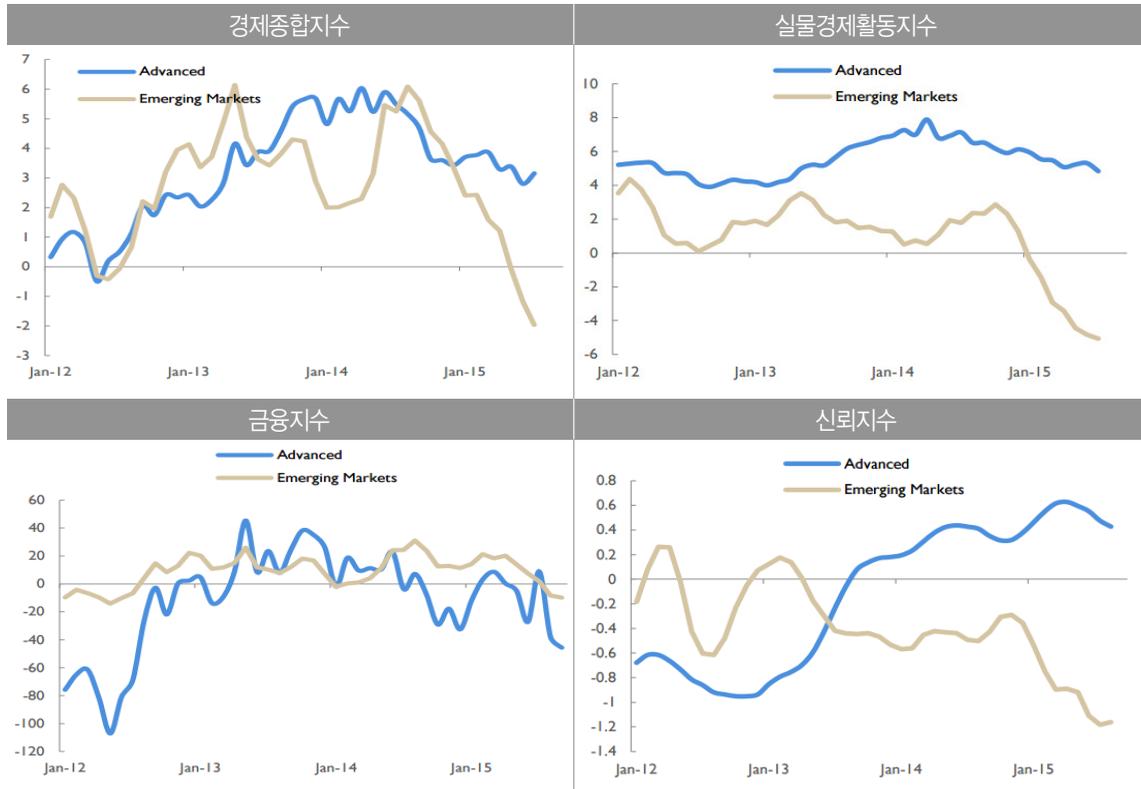
1)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라는 말은 1981년 당시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인 앙트완 반 아그마엘(Antoine van Agtmael)이 처음으로 만들었음. 신흥시장이 나오기 전에 이 지역은 ‘제3세계(the third world)’나 ‘개발도상국(the developing world)’으로 불렸음. 그러나 신흥시장은 뚜렷한 기준을 가진 말은 아니며, 보통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에 편입된 국가들을 일컫는 말로 쓰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UN), 세계은행 등은 편의를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을 분류하고 있음. 또한 국제적인 지수 산정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FTSE, S&P 다우존스 지수 등이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 등을 분류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나 벤치마크 지수를 두고 있음.

2) 타이저지수(Tracking Indices for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Index)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가 공동 개발해 산출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경제종합지수로 G20의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입 규모, 주가지수 등의 금융 지표, 기업·소비자신뢰지수 등을 반영해 산출함. 한편 타이저지수는 G20의 선진국과 신흥국 지수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분석함.

3) 타이저지수는 ‘0’을 기준으로 경기회복과 침체를 구분함.

-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신흥시장의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1〉 타이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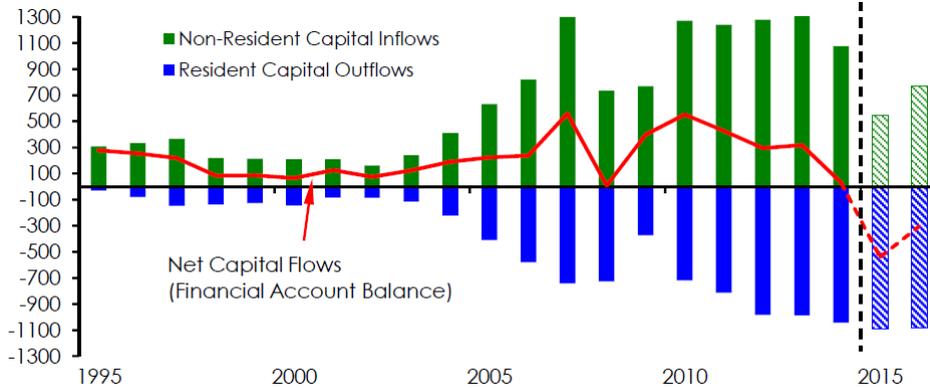
자료: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 신흥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전체 신흥국들은 향후에도 성장둔화 및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대규모 자본 순유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⁴⁾).
- 2015년 전체 신흥국들이 198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자본순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예상 자본적자 규모는 5,400억 달러(약 636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4) IIF(2015. 10),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 자본순유출의 주된 요인은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신흥국 성장 둔화 및 통화가치 불안 등 신흥국 내부 요인이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향후에도 신흥국의 자본유출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림 2〉 신흥시장 자본유출입 추이



자료: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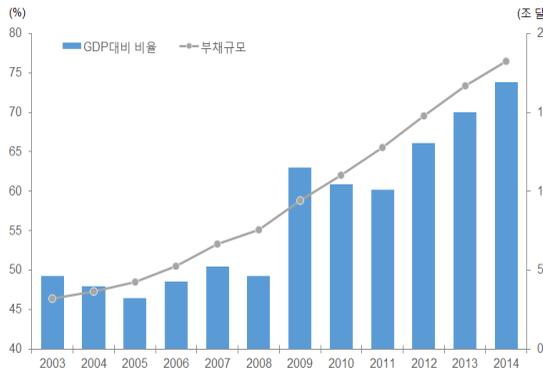
■ 먼저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는 원자재 및 공산품 수출국의 가격 및 통화가치 하락과 신흥국 기업의 부채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중국의 경기둔화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신흥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입 감소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중국의 산업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브라질, 남아공, 호주 등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해 오던 자원국들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공산품을 수출해 오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함.
 - 브라질은 연초 대비 해알화 환율이 45%나 급등해 S&P는 브라질 신용등급을 BB+ 투기등급으로 강등했으며, 러시아, 남아공,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도 모두 환율이 연초대비 10% 이상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금융시장 불안을 연상케 함.
 - 또한 최근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회사인 글렌코어의 파산설도 대두되고 있음.
-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기업의 부채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⁵⁾

5) IMF(2015, 10),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Vulnerabilities, Legacies, and Policy Challenges Risks Rotating to Emerging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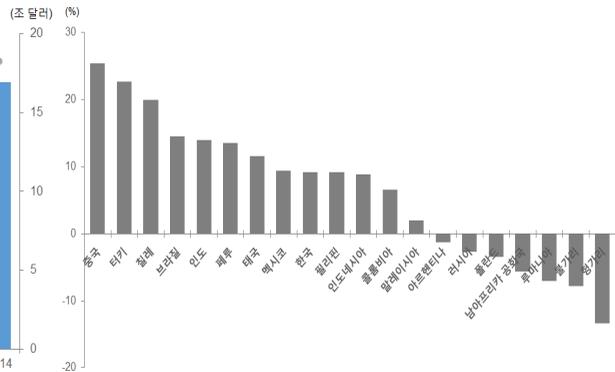
- IMF 금융안정보고서는 신흥국 기업부채를 새로운 위기의 근원지로 지목했는데, 2004년 GDP 대비 48%(4조 달러)였던 신흥국 기업부채가 2014년 말 74%(18조 달러)로 대폭 늘어났는데, 특히 중국, 터키, 칠레, 브라질, 인도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짐(<그림 3, 4> 참조).

<그림 3> 신흥국 기업부채 규모와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추이



자료: IMF.

<그림 4> 신흥국별 (GDP 대비) 기업부채 증가율(2007~2014년)



자료: IMF.

■ 미국 금리인상은 다른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나, 과다 외채에 직면한 신흥국들의 외환 및 외채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유로화, 엔화 등 통화의 추가 약세가 수출 확대, 기업이익 증가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신흥국들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은 ‘자국 통화가치 하락 → 자금 이탈, 대외 채무 부담 가중 → 통화가치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함.
- 통화가치 지속 하락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유발하고 외환위기 및 외채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10개⁶⁾ 신흥 통화가치를 보여주는 JP모건 신흥국통화지수(Emerging Market Currency Index, EMCI)는 1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음(<그림 5> 참조).

6) 칠레,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중국, 인도, 헝가리, 남아공, 러시아, 터키.

〈그림 5〉 JP모건 신흥국통화지수(EMCI) 추이



자료: Bloomberg.

■ 한편 G2 리스크에 직면한 신흥국 경제위기의 경우 세계 경제의 무역 및 금융시장이 상호 연결되고 글로벌화되어 있는 정도를 감안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골드만삭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은 글로벌 금융자산 가격 상승세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신흥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가능성을 지적함.

■ 우리나라의 경우 G2 리스크 중 중국 관련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훨씬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금리인상 충격은 금융 채널(금리인상 또는 원화 평가절하 등)을 통해 흡수될 수 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는 금융과 실물 채널(국제무역) 동시적 조정이 요구되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수 있음.

● 미국 금리인상은 국내 금리인상보다는 원화 평가절하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대외충격효과를 완화시킬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반면 중국 경기둔화는 국내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감소시키고 이들에게 대출해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G2 리스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격 파급 경로를 채널별로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면 금리조정, 환율조정, 또는 금리 및 환율조정, 외환시장 개입, 외환보유고 활용,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등이 시나리오별로 검토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신흥국 통화가치 추가 하락 및 그에 따른 자금이탈 가능성 등 금융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단을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감소는 위기 대응능력 약화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소지가 있음. **kiqi**



중국정부, 해외 첫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의미와 시사점

황인창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지난 10월 20일 중국 정부는 최초로 홍콩 이외의 지역인 영국 런던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음(발행규모: 50억 위안, 만기: 1년). 이번 채권 발행의 배경에는 중국과 영국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있음.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플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채권 발행의 직접적인 목적은 역외인 런던에 질 높은 위안화 표시 자산을 공급함으로써 역외 위안화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임. 이는 위안화의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편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음. 현재 위안화의 SDR 편입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지만, 자유로운 사용통화(freely usable currency) 기준 충족 여부와 미국 및 일본의 찬성 여부 등 국제정치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위안화가 무역결제 수단으로서의 통화가 아닌 투자 및 준비 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한중간 경기동조화, 중국의 환율 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또한, 한국이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안화 유동성 확보,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확대 등 무역 거래 및 금융거래 확대를 통한 국내 위안화 공급기반 조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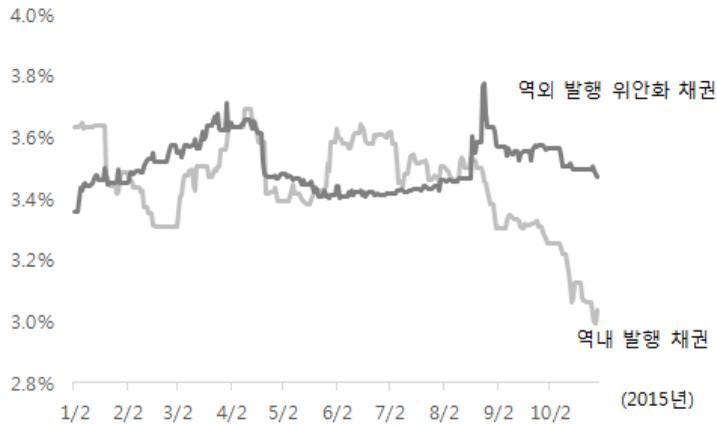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최초로 홍콩 이외의 지역인 영국 런던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음 (2015. 10. 20).

● 발행규모는 50억 위안(약 7억 8,700만 달러), 채권 만기는 1년으로 당초 중국인민은행(중양은행)은 3.3%의 금리를 예상했으나 발행 물량의 6배가 넘는 300억 위안 이상의 주문이 몰려 3.1%까지 하락하였음.

– 최근 중국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 내 채권 금리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역외 위안화 채권(dim sum bond, 딴섬본드)으로 투자 수요가 커짐(〈그림 1〉 참조).

- 아시아계 투자자들이 발행 물량의 51%를 가져갔고, 나머지는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에게 거의 균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전해짐.¹⁾

〈그림 1〉 역내 및 역외 발행 위안화 채권 금리(중국 국채, 10년물)



자료: Bloomberg.

- 이번 채권 발행의 배경에는 중국과 영국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있음.
 - 이번 채권 발행은 중국 지도자로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방문 일정(10월 19일~23일)에 맞춰 이루어짐.
 - 양국은 400억 파운드(약 70조 원)에 달하는 무역 및 투자 협정을 맺고, 에너지·관광·헬스케어·금융 등에 걸쳐 약 150여 개의 경험 합의를 체결함(〈표 1〉 참조).

1) 로이터 통신(2015. 10. 22), China faces obstacles in making London a big dim sum market.

〈표 1〉 중국 영국 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거래(Deal)		규모	일자리
에너지	• 영국 BP사는 중국 화전(Huadin)에 20년 동안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기로 함	65억 파운드	
원전건설	• 중국은 EDF와 합작 투자하여 영국의 신규원전건설(Hinkly Point C)에 투자하고 지분 33.3%를 확보하기로 함	60억 파운드	최대 25,000개 (임시직: 24,100, 정규직: 900)
헬스케어	• 중국 건설은행(자회사 CCBI)는 옥스퍼드 대학에 재생의학 및 조직 공학 연구 펀드를 위해 자본시장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60억 파운드	
조선	• Carnival Plc는 중국 State Shipbuilding Company와 중국 내 시장을 위한 배(크루즈)를 건조하기로 합의	26억 파운드	1,600개 창출, 400개 보장
자동차	• 영국 알렉산더 데니스(Alexander Dennis)와 중국 비야디(BYD)는 전기차 200대에 합작투자하기로 함	20억 파운드	2,100개 보장
관광	•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 관광객들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2년의 복수비자로 확대하고 같은 비자발급비용으로 (85파운드) 10년 복수비자를 새롭게 도입함 • 중국 내 영국 mobile fingerprinting service를 현행 9개 도시에서 50개 도시로 확대하기로 함		
금융	• 영란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 연장 체결 (유효기간 3년)	200억 파운드 → 350억 파 운드 확대	

자료: 영국총리실 공식홈페이지.

■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플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채권 발행은 역외인 런던에 질 높은 위안화 표시 자산을 공급함으로써 역외 위안화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임.

- 중국 정부는 경제규모에 비해 미약한 국제금융에서의 영향력 증대, 중국 은행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의 달러화 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함(〈표 2〉 참조).
 - 위안화 국제화는 통화의 활용 목적 면에서 결제통화, 투자통화, 준비통화 순으로 추진 중이며,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 시장 발달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역외 위안화 시장(런던)에 위안화 표시 자산(국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위안화 보유 유인을 상승시키고 역외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간 포지션 불일치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시켜 역외 위안화 시장 성장에 도움을 줌.
 - 런던은 대표적인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영국은 G7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통화스왑체결, RQFII²⁾ 배정,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진행함.

〈표 2〉 위안화 국제화의 개념 및 전략

구분	국제화 1단계	국제화 2단계	국제화 3단계
용도별	결제통화 (settlement currency)	투자통화 (investment currency)	준비통화 (reserve currency)
지역별	주변국	지역권	전세계
주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 간 무역거래 및 직접투자에서 위안화 결제 촉진 •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개발 • 국가 간 공식적 통화 협력(예, 통화스왑 협정 체결) 강화 • 자본 계정 자유화 개선 등 		

■ 특히, 이번 국채 발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이 11월 이사회를 열고 위안화의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편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 SDR이란 IMF 회원국이 자유로운 사용통화(freely usable currency)로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 권리(potential claim)로 일종의 국제준비통화임.
- 현재 SDR 구성 통화는 미국 달러화(비중 41.9%), 유로화(37.4%), 영국 파운드화(11.3%), 그리고 일본 엔화(9.4%)로, 최근 가치를 보면 1USD=0.7084SDR 수준임(2015. 10. 13기준).
-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준비통화로서 국제적 공인을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이 증가하고 투자통화로서의 위상도 함께 제고됨.
-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현재 미국 중심의 글로벌 통화체제 헤게모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위안화의 SDR 편입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지만, 자유로운 사용통화 기준 충족 여부와 미국의 거부권 행사 등 국제정치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SDR 통화바스켓 편입에 관한 최종결정은 5년마다 IMF 집행이사회가 담당하는데, 크게 수출 기준과 자유로운 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투표권의 70%³⁾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표 3〉 참조).
- 위안화의 경우, 수출 기준은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나 자유로운 사용통화로서의 기준 충족은 다소 미흡해 보임.

2) RQFII(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란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의 주식·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주는 제도로 중국 본토 밖인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본토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제도와 차이가 남.

3) 일반적으로, SDR 평가 방법은 투표권의 70%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됨. 투표권의 85% 이상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평가 원칙의 변경 또는 원칙적용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임(IMF).

- 과거 5년간(2010-14) 재화 및 용역 수출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전체 수출 중 11%를 차지하여 유로존,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SDR 구성 통화국인 영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을 이미 초과함(<그림 2> 참조).
- 하지만,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구성통화나 외환거래량 등에서 여타 선진국 국제통화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고(<그림 3> 참조), 자본거래의 개방성·통화의 완전태환성·환율 및 금리 자유화 측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
- 또한, 미국(의결권 16.7%)과 일본(6.2%) 등의 국가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SDR 편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국가의 결정도 주요 변수 중의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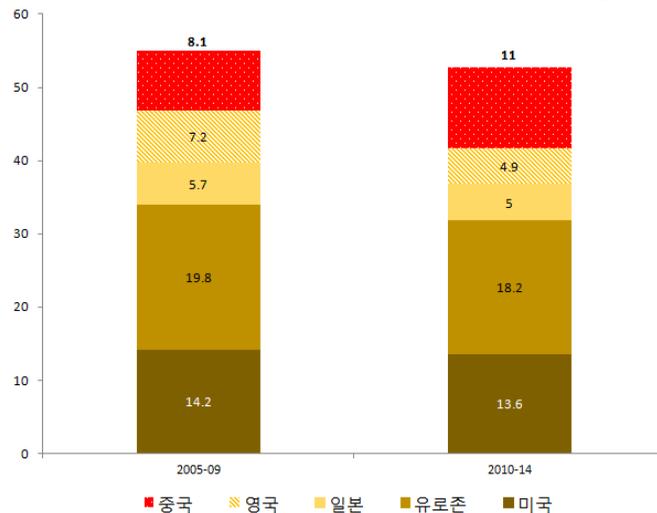
〈표 3〉 SDR 편입 통화 선정 기준

구분	수출 기준(export criterion)	자유로운 사용 기준(freely usable criterion)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출 비중 상위권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 결제에 널리 사용 • 주요 외환시장에서 폭넓게 거래
주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년간 재화 및 용역 수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외환보유액(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 공적 외화자산(official foreign currency assets) • 은행부문부채(international banking liabilities) • 국제채무증권잔액(international debt securities outstanding) • 국제결제통화(SWIFT cross-border payments) • 외환거래량(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 Turnover) 등

자료: IMF.

〈그림 2〉 전체 수출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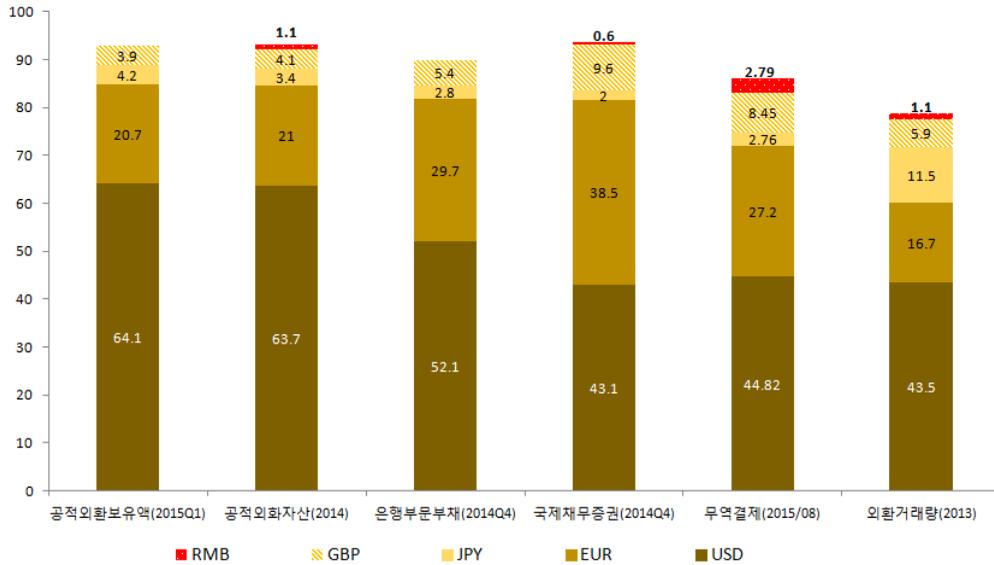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그림 3〉 주요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정도

(단위: %)



자료: IMF.

- 최근 위안화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위안화가 무역결제 수단으로서의 통화가 아닌 투자 및 준비 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한국의 자본시장 및 실물시장에 영향을 끼쳐 한중간 경기동조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된 중국의 환율 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함.
- 한국이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안화 유동성 확보,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확대 등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 확대를 통한 국내 위안화 수급기반 조성이 필요함. [kiri](#)



위안화 SDR 편입의 의미와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 최근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의 구성통화에 편입되면서 조만간 세계 기축통화로 부상할 것이라는 견해가 급부상하고 있음. 중국이 외환 및 자본 통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SDR 구성통화국과 대등한 반열에 오른 것은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금융개방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이러한 면에서 위안화의 SDR 편입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보다 무게가 실림. 향후 보다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환율신축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추가개방을 실행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감안해 볼 때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우려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예상되어 중국에서 자본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중국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편입시점(내년 10월) 이전에 외환 및 자본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조치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의 원칙”에 위배되어 SDR 편입 결정 원칙과 정면충돌하는 것임. 그러므로 조만간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분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견해에 불과할 것임.

■ 최근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이하 SDR)¹⁾ 통화바스켓 편입 이후 세계 기축통화 역할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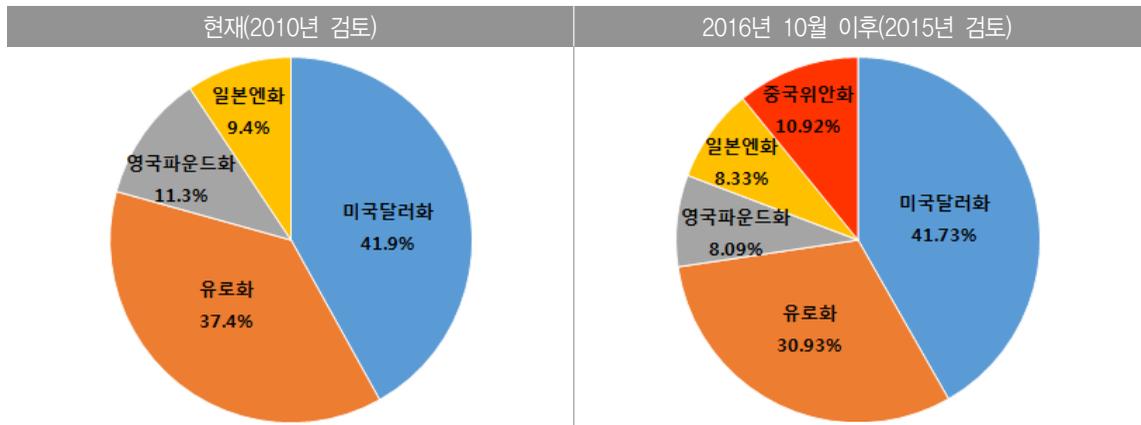
- 2015년 11월 30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이사회를 개최²⁾ 하여 SDR 통화바스켓의 구성통화로 기존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에 추가로 중국 위안화를 편입하기로 결정함.
- 새로운 통화바스켓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구성통화 간 가중치는 미국 달러화

1) SDR이란 IMF가 1969년에 국제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유동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안한 가상통화 및 대외준비자산으로 IMF 회원국은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을 배분받고 보유한 SDR 규모 내에서 자유로운 사용통화(freely usable currency)인 SDR 통화바스켓 구성통화로 교환할 수 있음.

2) IMF는 5년 주기로 통화바스켓 구성통화, 통화 간 가중치, 이자율 산정 등 SDR 가치산정 방법에 대한 검토(Review of the Method of Valuation of the SDR)를 수행하고 있음.

41.73%, 유로화 30.93%, 중국 위안화 10.92%, 일본 엔화 8.33%, 영국 파운드화 8.09%임(〈그림 1〉 참조).

〈그림 1〉 SDR 통화바스켓의 구성통화 간 비중치 변화



자료: IMF.

■ 이번 SDR 검토에 있어 핵심 쟁점사항은 위안화가 통화바스켓 구성통화 요건 중 하나인 자유사용가능 기준(freely usable criterion)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음.

- SDR 통화바스켓은 수출기준과 자유사용가능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됨(〈표 1〉 참조).
- 지난번 SDR 검토인 2010년에도 위안화 편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편입기준 중 수출기준은 충족하나 자유사용가능기준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편입하지 않음.

〈표 1〉 SDR 통화바스켓 구성통화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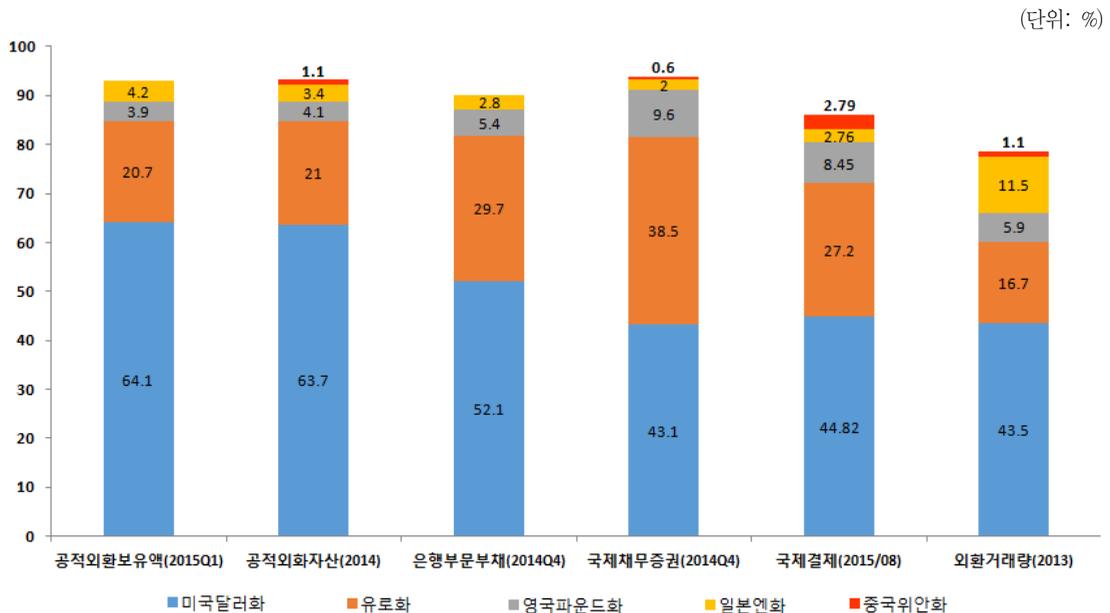
구분	수출기준(export criterion)	자유사용가능기준(freely usable criterion)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출 비중 상위권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거래에서 지불수단으로 널리 사용(widely used) • 주요 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widely traded)
주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년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액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외환보유액(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 공적 외화자산(official foreign currency assets) • 은행부문부채(international banking liabilities) • 국제채무증권잔액(international debt securities outstanding) • 국제결제통화(SWIFT cross-border payments) • 외환거래량(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 Turnover) 등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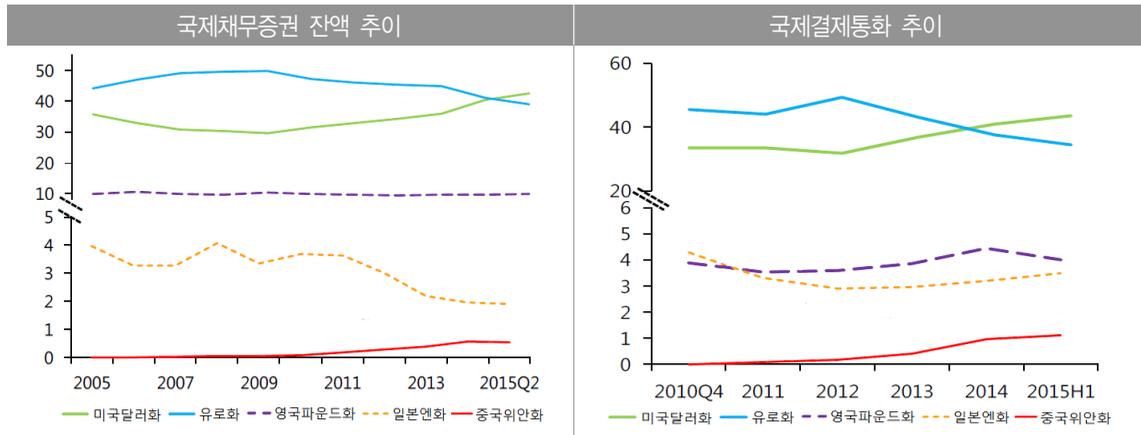
■ 이에 IMF 이사회는 통계지표와 중국정부 정책평가 등을 바탕으로³⁾ 위안화가 자유사용가능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기로 결정함.

- 자유사용가능기준과 관련된 주요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아직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간 빠르게 수치가 증가함(〈그림 2〉 참조).
- 지난 7월 1차 이사회에서 제기되었던 SDR 운영상 이슈(operational issue)는 이후 중국정부가 보완 조치를 취해오고 있어 향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위안화의 SDR 편입 이후 원활한 SDR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됨.
 - ① SDR 환율 계산 시 위안화 환율의 대표성 문제(역내환율과 역외환율 간의 괴리 존재)
 - ② SDR 이자율 계산을 위한 3개월 만기 국채금리 부재
 - ③ SDR 보유에 따른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줄일 수 있는 헷징 수단 미비 등
 - 이에 중국정부는 ① 환율고시제도 변경으로 환율 시장결정성 제고, ② 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③ 3개월 만기 국채 발행 결정, ④ SDR 이해당사자(중앙은행 등)에 대해 역내 외환시장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함.

〈그림 2〉 자유사용가능기준 주요지표



3) IMF Policy Paper, Review of the Method of Valuation of the SDR(2015. 11).



자료: IMF Policy Paper, Review of the Method of Valuation of the SDR(2015. 11).

■ 그러나 기존 SDR 구성통화와 비교해 볼 때, 위안화는 자유사용가능기준 측면에서 중국정부의 자본 및 외환 통제로 인해 현저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위안화는 다른 통화와 달리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태환성(fully convertibility)이 보장된 통화가 아님(이를 자본통제라 함).
 - 여기서 완전태환성이란 법적인 의미로 아직까지 국제 자본계정거래에서 위안화사용이 정부통제로 자유롭지 못함.
- 둘째, 위안화는 다른 구성통화와 달리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부의 통제 또는 적극적 시장개입의 대상임(이를 외환통제라 함).
 -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란 위안화의 국제통화가격(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보다는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함.
 - 최근 중국정부의 관리변동환율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형태의 관리변동환율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된 것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비중확대와 더불어 향후 자본시장 추가개방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의 의미는 중국통화와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제고라는 다분히 상징적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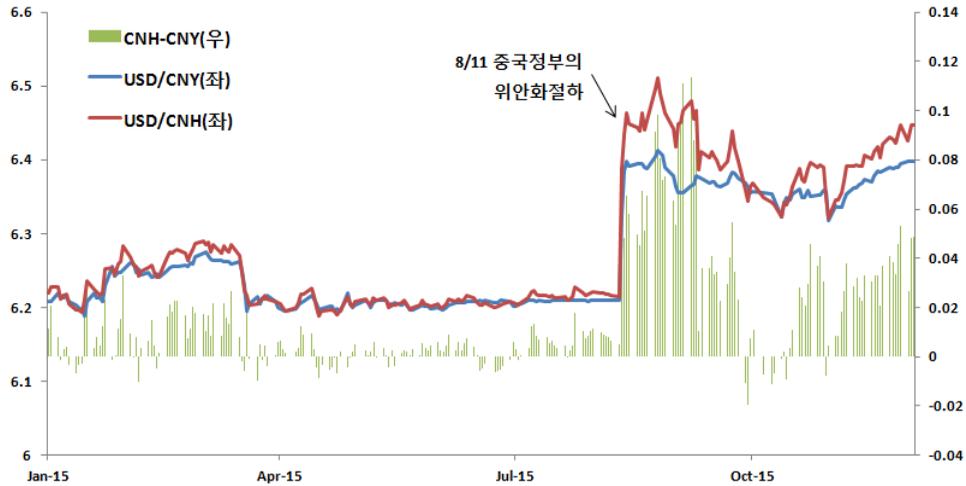
- 중국통화가 완전태환성과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추구하는 다른 국제통화들과 대등한 위상에 놓인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님.
- 이는 중국의 경제활동 규모에 비해 영향력이 미약했던 국제금융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국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음.

- 최근 중국경제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수출부양을 위해 위안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3〉 참조).
- 또한, 올해 1~8월 중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중국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산⁴⁾되는데, 이러한 규모는 중국 외환보유고 3조 8,000억 달러와 비교해 적지 않은 규모임(〈그림 4〉 참조).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환율신축성 제고와 자본시장 추가 개방 압력을 받을 것인데, 이는 위안화의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음.
 - 자본거래계정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면, 중국투자자들은 위안화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여 중국 위안화를 안전자산 통화인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등으로 교환해 보유할 수 있음.
 - 특히,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급등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것임.
- 미국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부채 상환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바로 자금상환 미스매치(불일치)위험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편입시점(2016년 10월) 이전에 외환 및 자본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조치는 SDR 편입의 두 번째 조건인 통화의 자유사용가능 원칙에 위배됨.

4) FT(2015. 10. 19), "China's capital outflows top \$500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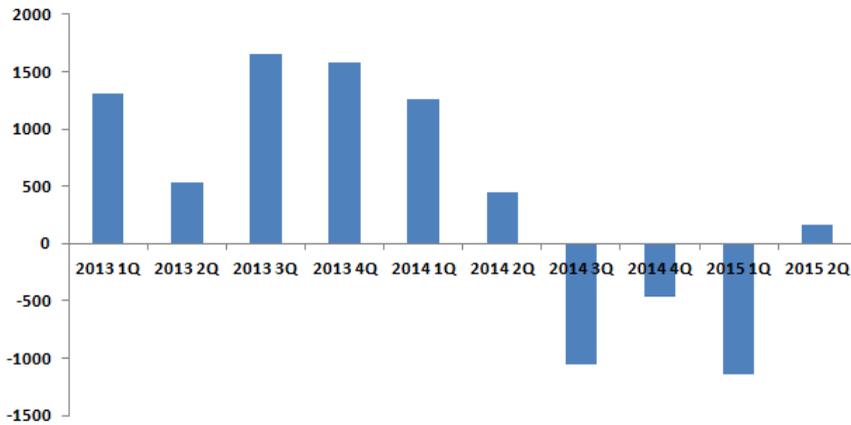
〈그림 3〉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추세



자료: Bloomberg.

〈그림 4〉 분기별 중국 외환보유고 증감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 따라서 이를 종합해볼 때, 위안화가 조만간 세계 기축통화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 금융시장이 주요 국제통화국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 다분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견해에 불과할 것임. [kiri](#)

2.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1.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의 시사점 | 최창희 김혜란 |
| 2.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 정원석 강성호 |
| 3. 국내 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황인창 |
| 4.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 최창희 |
| 5.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박선영 |
| 6.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최창희 |
| 7. 자동차보험의 시장기능 활성화: 유럽의 사례 | 전용식 정승연 |
| 8. 국제기구 보험자본규제 통합논의와 시사점 | 이승준 |
| 9. 비급여 의료비 심사 논란과 진료비확인제도 개선안 모색 | 이태열 정성희 |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의 시사점

최창희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정보유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정보유출 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이 보험을 통해 정보유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관련 보험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손해보험회사들은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잠재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정보유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최근 10년간 정보유출 사고 건수와 유출된 정보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표 1〉 참조).
 - 특히 올해 1월에는 카드 3사가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정보유출 사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한국수력원자력은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해킹 공격에 의해 내부 정보를 유출 당했음.¹⁾
 -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5,000개 네트워크 구축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20.8% 정도만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조선비즈(2015. 1. 2), “한수원, 2년전에도 ‘보안 구멍’ 감사원 지적받았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3/2014122300594.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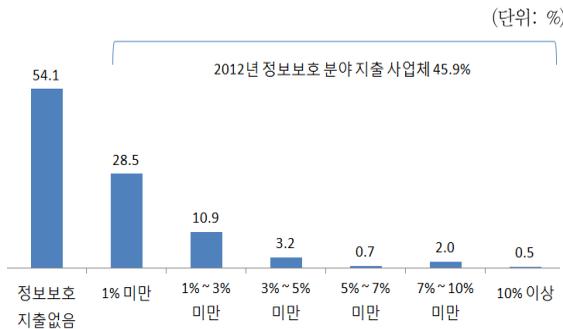
- 2012년 한 해 동안 기업들 중 45.9%만이 정보화 예산의 일부를 정보보호에 투자하였고 정보보호 지출이 없었던 경우의 46.5%는 ‘정보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17.2%는 ‘정보보호에 관심이 없다’고 답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정보유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2001년 이후 국내 주요 정보유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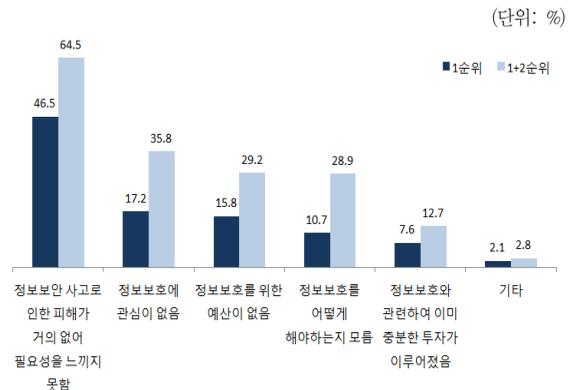
년도	사고사례	정보유출 규모
2001년	SK텔레콤	관리소홀로 휴대전화 가입자 신상정보유출
2002년	하나로통신	e메일 입력 실수로 3,000명의 신용카드 정보 등 유출
2007년	KT하나로텔레콤	고객 7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탁업체 등에 유출
2008년	옥션	해킹으로 고객 1,081만 명 개인정보유출
2008년	GS칼텍스	고객 1,119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용 디스크 유출
2009년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으로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200만 명 정보유출
2011년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고객 42만 명 정보유출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 유출
2011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 여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
2012년	KT	고객 870만 명 정보유출
2012년	진학정보사이트	고교 3학년생 68만 명 정보유출
2014년	KB국민, 농협, 롯데카드	1억 580만 건 신용정보유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 및 부품 설계도 등 내부문건 유출

자료: 박영준(2012),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연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그림 1〉 정보보호 관련 지출



〈그림 2〉 정보보호 관련 지출이 없는 이유



주: 〈그림 2〉는 정보보호 관련 지출이 없는 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2〉 복수응답 인정.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3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기업부문-』.

■ 정보유출 사건은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정보를 유출할 경우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음.

● 예를 들어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3,495만 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2,882명의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피해자 전부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총 손해배상액은 6조 9,900억 원에 이릅니다.²⁾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처리자,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자산예탁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됨.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서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됨.

● 그러나 사업자 과실에 의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기업이 파산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래서 특정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자산예탁을 통해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됨(〈표 2〉 참조).

〈표 2〉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법률개정안 요약

법률	개정안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함	제75조: 위반시 과태료 3천만 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함	제52조: 위반시 과태료 3천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산을 예탁하여야 함	제76조: 위반시 과태료 3천만 원

주: 개정안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음.
 자료: <http://www.parkdaedong.kr/ddc/?r=home&c=3/15> 참조.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2.15선고 2011가합11733 등 판결.

■ 현재 은행, 증권, 카드, 보험회사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주로 가입하고 있으나 위 제도개선으로 인해 다수의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위 제도개선으로 적용으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수는 최대 820만(개인정보보호법(380만), 신용정보법(7만), 정보통신망법(433만)) 정도일 것으로 추산됨.

〈표 3〉 개인정보관련 법률의 적용대상

법명	분야	적용대상	대상 수	관할청
개인정보보호법	총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380만	행정자치부
신용정보법	금융·신용분야	신용정보회사 등	7만	금융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33만(273만 사업자 + 160만 스마트폰 앱 개발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주: 적용대상의 중복 및 범위 미확정으로 실제 가입자 수는 820만 보다 적을 수 있음. 일본은 '개인정보처리자'를 5천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자료: 박영준(2012),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연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 손해보험회사들은 위와 같은 제도개선에 대비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상품³⁾이 주요수요자인 금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향후 비금융권 기업들과 중소기업자들의 가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외국 손해보험회사들을 벤치마크하여 사이버 리스크 평가·관리 컨설팅, 사이버 리스크 관리 교육, 사이버 사고 대응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⁴⁾
 - 알리안츠는 표준(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프리미엄(휴지⁵⁾ 담보 포함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자체 사이버 리스크 평가 컨설팅), 플러스(기업 맞춤형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사이버 리스크 평가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Cyber Protect라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AIG는 사고 예방 서비스(지식 공유, 교육 프로그램, 정보유출 리스크 평가, 관리 컨설팅), 포괄적인 담보를 포함하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사고관리 서비스(24시간 사고 관리 지원팀 대

3)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배상책임보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4) 최창희·김혜란(2014),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의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참조.

5) 休止, Business Interruption.

기, 법률 지원, 휴업 복구비용 지급, 대중매체 관리) 등을 포함하는 Cyber Edge라는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솔루션을 제공함.

- 재보험회사들은 원수보험회사의 사이버 리스크 평가 역량을 고려하여 요율을 제공하므로 손해보험 회사들은 사이버 리스크 평가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손해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은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련 역량 강화와 정보유출 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임. [kiri](#)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정원석 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

요약

■ 정부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 하였음. 하지만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발표 이후 개인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급속히 감소하였음.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특히 중산층 이하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음. 현재의 세액공제제도는 중산층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향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제율 재조정 및 소득계층별 차등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연말정산 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

●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납세자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되므로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세액공제 전환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납세자들의 노후 대비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2/4분기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발표¹⁾된 이후 개인연금 저축의 신계약 건수는 2012년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들었음.

1) 기획재정부 2013년 6월 16일 보도자료 참고.

〈표 1〉 생·손보 업계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

(단위: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분기	437,623	267,807	85,385
2/4분기	177,971	78,366	92,563
3/4분기	189,738	102,731	117,608
4/4분기	314,339	122,187	-

주: 2013년 6월 세액공제로 전환계획 발표.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이러한 모습은 사적가능을 통해 선진국 대비 낮은 노후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온 정부의 노후보장정책과는 부합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음.²⁾
- 세제개편 이후 신규 개인연금가입 계좌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표 2〉 주요국의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개인연금	24.7	18.1	29.9	25.7	35.1	12.2
퇴직연금	32.8	49.1	32.2	12.1	33.9	18.8
소계	41.1	-	-	-	52.6	-

주: 1) 생산활동인구(16~64) 대비 가입률.
2) 영국, 독일, 한국의 소계는 원자료에서 제공하지 않음.
자료: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p. 173 재구성.

■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는 옳은 방향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임.

- 총 소득이 5,500만 원 안팎인 중산층 가구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15% 혹은 24%의 한계세율³⁾을 적용받게 됨.⁴⁾
 - 이는 중산층 역시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최소 3% 최대 12%의 세제혜택 감소가 발생

2)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상한 확대 및 퇴직연금 의무화 등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의 예라고 할 수 있음.
3)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의 한계세율을 적용받음.
4) 정부는 2013년 9월 세법을 개정하면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액공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여력이 있는 중산층 연금가입에 대한 부의 효과(-)는 큰 반면, 상대적으로 이전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의 양의 효과(+)는 작다는 점임.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한 소득계층은 총소득 4,000 ~ 6,000만 원 의 계층인 것으로 분석된 반면, 총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세제혜택 확대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⁵⁾
- 특히 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4,000 ~ 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4%로 높지 않은 수준인데,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3〉 근로자 소득계층별 연금저축¹⁾ 가입률(2012년)

소득계층	2천만 원 이하	2~4천만 원	4~6천만 원	6~8천만 원	8천만~1억 원
가입률	1.2%	11.6%	34.0%	52.8%	66.2%

주: 1)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률을 의미, 국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태조사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세통계연보(2013)를 참고하여 재구성.

■ 따라서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시 연금세제의 근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과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적연금 가입률을 감안했을 때 개인연금 세제는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소비자 행동을 고려했을 때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세(稅)부담이 늘지 않는 기준 소득 계층인 5,500만 원 이하 가구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세액공제율 15% 이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소득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산층 이하 계층에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적 공제율 적용도 고려되어야 함. [kiri](#)

5) 정원석·강성호·이상우(2014),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연구원.



국내 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하고, 핀테크 관련 산업의 고성장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음.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통칭하는데, 최근 금융업 전반적인 분야에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들이 활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됨.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도입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품판매 및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보험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보험산업에서 핀테크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보험회사의 핀테크 역량 강화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와 시장경쟁촉진·혁신장려 사이에 균형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고, 현재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의 금융법 체계를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하고, 향후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스타트업¹⁾ 및 벤처기업인 스트라이프(온라인지급결제), 온택(온라인 대출) 뿐만 아니라 구글(구글 월렛; 모바일 전자지갑), 애플(애플페이; 모바일 결제서비스), 알리바바(위어바오; 온라인 전용 MMF 상품) 등 거대 ICT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모형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함.
- 글로벌 시장에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008년 약 9.2억 달러에서 2013년 29.7억 달러로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함(〈표 1〉 참조).
- 국내에서는 작년 카카오페이 등장 이후 정책당국 및 금융업계에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1)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기업을 뜻하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음.

〈표 1〉 글로벌 시장에서의 핀테크 투자규모

(단위: 억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2	9.8	19.8	24.3	27	29.7

자료: Accenture, CB insights.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통칭하는데, 최근 금융업 전반적인 분야에 빅데이터 등 첨단 ICT기술들이 활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

- 기존 금융회사들은 이미 ICT기술을 경영에 활용하고 있지만, 주로 미들 또는 백 오피스 중심으로 기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써 그 역할이 국한됨.
- 하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는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ICT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형을 만들거나, 비금융회사가 ICT기술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틈새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를 말함.

〈표 2〉 핀테크 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와 사업영역

구분	내용	주요기업	
금융업무	지급결제	IC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방식으로 이용이 간편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eBay, Stripe
	송금	송금 의뢰자와 수탁자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시켜 송금 수수료를 낮추고 송금시간도 단축	Google, Azimo
	자산관리	온라인으로 투자 절차를 수행하여 자금운용 수수료를 낮추고, 각종 분석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최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Alibaba, Tencent
	대출중계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자금의 수요자(차입자)와 공급자(대출자)를 직접 중개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수행	Lending Club, Prosper
기술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인 또는 기업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Affirm
	금융소프트웨어	보다 진화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Billguard
	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기반을 제공	Ondeck

자료: UK Trade & Investment, Anthemis Group.

■ 해외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형이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해 금융시스템과 ICT와의 융합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페이팔과 애플페이, 중국의 알리페이 등은 각국 통화나 결제시스템의 차이에 구애 받지 않고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
 - 국내 법규상 비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금융업 진출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어 ICT업체가 금융업 진출 시 금융권과 연계하여 초기단계의 서비스를 제공
 - 최근 들어 국내은행들은 다음카카오 등 ICT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위협을 느껴 ICT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하는 양상
- 국내 핀테크 관련 금융산업 주요 이슈는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핀테크 성장,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ICT업체의 금융업 진출 허용 가능성, 빅데이터 활용에 있음(〈표 3〉 참조).
- 보험회사가 지급결제 등 업무영역 확대 시, 기존 고객들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고시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ICT업체의 금융업 진입 규제가 낮아지면, 새로운 시장 경쟁자 등장으로 인해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으로 이러한 ICT업체와의 인수 및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됨.
 - 아직까지 보험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보유량이 많고 증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향후 경영효율화 및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 등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표 3〉 국내 핀테크 관련 금융산업 주요 이슈

주요 이슈	내용	보험회사 영향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핀테크 성장	ICT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급격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은 낮으나,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 지속 강화 전망	지급결제 등 업무영역 확대 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 가능성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²⁾	금융산업의 경쟁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음.	
ICT업체의 금융업 진출 허용 가능성	금산분리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ICT 업체의 금융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	ICT업체와의 인수 및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빅데이터 활용	향후 빅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다양하고 활용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	경영효율화 신사업모형 창출

■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도입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품판매 및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보험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표 4, 5〉 참조).

2)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전용식·황인창(2015),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KiRi Weekly 이슈 참조.

- 개인 및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해 기존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여 위험률 조정 등을 통해 적정 보험료 산출이 가능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청약 등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 활성화가 예상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보험가입 승낙 여부 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알고리즘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
-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 조사 시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소프트웨어,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관련 프로세스 개선이 예상

〈표 4〉 보험업 관련 핀테크 활용

업무	관련 핀테크
상품개발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상품판매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보험금 지급	지급결재,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표 5〉 보험산업 핀테크 도입 사례

회사명	내용
Progressive(미국) Insurethebox(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에 차량운행 기록 장치나 센서를 장착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사고이력을 분석해 보험료 산정에 이용
Discovery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에서 생명보험을 판매해 온 회사로 온라인 건강진단 및 실시간 건강상태를 기록하는 손목 밴드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 ● 수집한 정보는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고, 건강한 식단 및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의 충성도를 높임
Tune Insu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를 소유하고 있는 Tune Group은 항공사의 온라인 항공권 발행 및 예약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행자보험을 판매
Friendsu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에서 SNS를 통해 친구들끼리 단체로 기존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 ● 친구 사이의 우정을 이용하여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여 보험료를 큰 폭으로 낮춤
You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보험회사로 홈페이지에 고객의 피드백을 여과 없이 그대로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

자료: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

■ 보험산업에서 핀테크 도입의 시사점으로 보험회사의 핀테크 역량 강화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와 시장경쟁촉진·혁신장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

- 현재 핀테크 역량을 강화하려는 보험회사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서 핀테크의 활용도

는 그리 높지 않은데, 이는 아이디어 부재로 인한 보험회사의 낮은 핀테크 역량 때문으로 보임.

- 하지만 핀테크를 주도하는 리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한 보험회사는 그만큼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금융업권의 개인정보 처리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촉진과 혁신장려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사이에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고, 현재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의 금융법 체계를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건전 사전규제’에서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함.³⁾
 -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
- 전자금융 규제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금융법 체계는 열거주의 방식(법에 근거가 있어야 승인)으로 규제 방식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만 열거하는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kiri](#)

3)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2015. 1. 15),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최근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상한도가 충분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국내 경제주체들이 보상한도가 충분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식 부족, 의무화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보험회사의 마케팅 노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 선정, 의무화재보험 최소 보상한도 통일, 의무화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의무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최근 화재사고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낮은 보상한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함.

- 올해 1월 10일 일어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4명의 사망자, 225여 명의 이재민, 90여 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지급 보험금은 손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¹⁾
 - 특히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²⁾
- 올해 1월 15일에 일어난 도곡시장 화재는 5개 점포를 전소시키고 6개 점포를 부분 연소시켰음.
 - 2013년 현재 전체 전통시장 중 22.5%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시장 화재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³⁾

1) 예상 지급 보험금: 대봉그린아파트(35억 6천 500만 원), 드림타워(11억 원), 헤뜨는마을(조사 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1/0200000000AKR20150111041900060.HTML?input=1195m>

2)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02674&ref=A 참조.

3) 보험에 가입한 시장 중 36.5%는 대물 보험에만 0.3%는 대인 보험에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하였음. 『2013년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진흥원 참조.

- 전통시장은 화재발생 시 점포 밀집, 소방시설 부재,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형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음.

■ **현재 국내에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과 화재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두 개의 의무보험이 존재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건물들을 “특수건물”⁴⁾로 정하고 이들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본 법에 따른 가입대상자는 최소 사망 8천만 원·실제손해액 2천만 원·상해 1,500만 원을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 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는 다중이용업소⁵⁾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법임.
 - 본 법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는 사망 1억 원·실제손해액 2천만 원·상해 2천만 원을 최소 보상한도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중 다수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음.**

- 한국화재보험 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1월 말 현재 조사된 36,771개의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자 중 6.5%인 2,402개의 건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특히 특수건물 중 학원(24.7%), 병원(9.8%), 관광숙박(8.7%), 숙박(17.3%), 농수산물도매시장(9.2%), 다중이용시설(27.1%), 공장(7.8%), 11층 이상 건물(7.1%), 목욕탕(26.8%), 영화관(18.1%), 옥내사격장(50%) 등이 높은 미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 여부가 집계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특수건물에 속하지 않는 건

4)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농수산물도매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중 특정 연면적(각 층 면적의 합으로서 1,000~3,000㎡ 이상과 같은 조건이 이용됨) 또는 층수(「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또는 아파트 이외의 11층 이상 건물)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함.

5)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1층 또는 지상과 접하는 층의 업소는 적용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탕,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중 가입대상 업소를 업소의 바닥면적, 수용인원, 위치(층)에 따라 정함.

물 등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추정됨.⁶⁾

〈표 1〉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현황

구 분	대상건수	보험가입	공제가입	미가입 등	미가입률
국유	4,092	4,038	6	48	1.2%
공유	381	351	1	29	7.6%
학원	223	164	4	55	24.7%
병원	1,678	1,490	23	165	9.8%
관광숙박	804	720	14	70	8.7%
숙박	133	105	5	23	17.3%
공연	38	38	0	0	0.0%
방송	118	115	0	3	2.5%
대규모점포	1,047	936	15	96	9.2%
농수산물도매시장	4	3	1	0	0.0%
다중이용	663	470	13	180	27.1%
학교	202	198	2	2	1.0%
아파트	6,893	6,488	332	73	1.1%
공장	16,733	15,356	67	1,310	7.8%
11층이상	2,928	2,684	36	208	7.1%
목욕탕	448	320	8	120	26.8%
영화관	94	76	1	17	18.1%
철도시설	286	286	0	0	0.0%
옥내사격장	6	3	0	3	50.0%
합 계	36,771	33,841	528	2,402	6.5%

주: 무응답을 미가입으로 하여 실제 미가입률은 본 표의 수치보다 낮을 수 있음.
 자료: 한국화재보험협회, 2014년 11월 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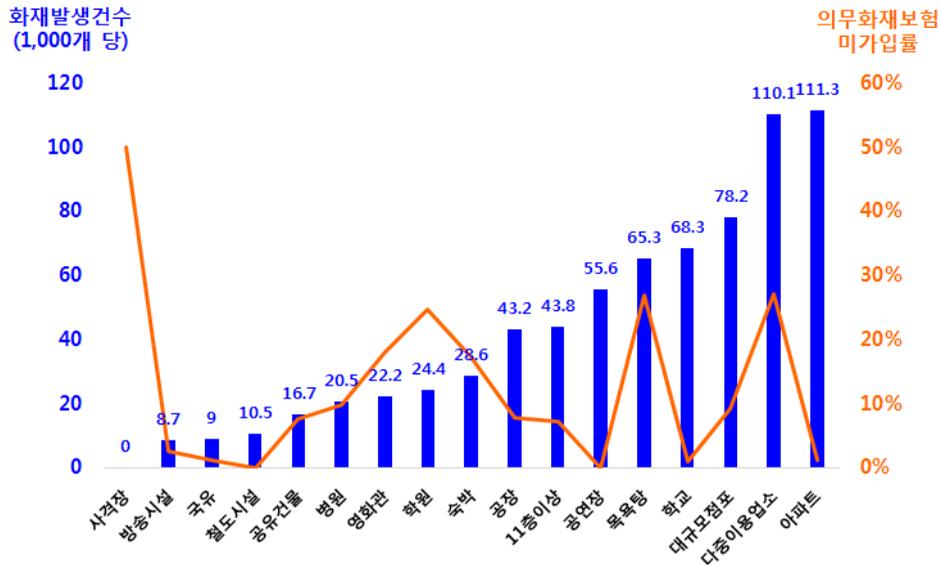
■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⁷⁾에 따르면 특정 특수건물들은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들 중 다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 본 조사에 따르면 특수건물 1,000개 당 화재발생 건수는 아파트(111.3건), 다중이용업소(110.1건), 대규모점포(78.2건), 학교(68.3건), 목욕탕(65.3건), 공연장(55.6건), 11층 이상 건물(43.8건), 공장(43.2건) 순이고 다중이용업소와 목욕탕이 높은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높은 보험 미가입률을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6) <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501/e20150113175506117470.htm> 참조.

7) 한국화재보험협회(2014), 『2013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그림 1〉 특수건물 업종별 화재발생 빈도와 보험 미가입률



주: 파란색(특수건물 천개 당 화재 건수, 왼쪽 축), 주황색(〈표 1〉의 보험 미가입률).
 자료: 한국화재보험협회(2014), 『2013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 또한 공유건물, 병원, 영화관, 학원, 숙박업소 등도 잦은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높은 보험 미가입률을 보임.

〈표 2〉 건물 형태별 화재위험도지수

구 분	국유	공유	학원	병원	11층	숙박	공연	방송
건수	1,739	329	145	1,534	2,375	678	23	103
화재위험도	125.8	131.3	106.9	145.6	97.2	176	137.2	131.7
구 분	다중	학교	공장	판매	목욕	영화	철도	사격
건수	577	178	13,910	798	397	81	283	5
화재위험도	160.3	136.7	241.1	191.3	175.5	140.8	108	176.1

자료: 한국화재보험협회(2014), 『2013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 〈표 2〉에 따르면 공장, 사격장, 목욕탕, 다중이용업소, 병원 등은 높은 화재위험도지수⁸⁾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 중 다수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고 화재발생 책임자는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표 1〉과 비교).

8) 화재위험도지수(FRI, Fire Risk Index)는 수치가 작을수록 화재위험이 낮음.

■ **현행 의무화재보험은 협소한 가입대상자 선정 기준, 높은 미가입률, 낮은 보상한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⁹⁾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¹⁰⁾ 등의 의무화재보험관련 제도들은 연면적, 바닥면적, 수용인원 등으로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어 건물의 실제의 화재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방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화재 가능성과 최대추정손해액이 높을 지라도 기준이 제도 하한 이하인 건물이나 사업자에게는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못함.¹¹⁾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대상의 하한기준을 낮추고 각 건물의 화재위험도지수와 추정최대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가능 손해액이 높은 건물 또는 사업자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두 개의 의무화재보험 제도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른 손해액 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상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의무보험 제도 도입 시 자동차 의무보험을 기준으로 최저 보상한도를 정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 개정 시 제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함.¹²⁾
 - 「낙시관리및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어장의 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등의 의무보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준용하는 것을 제도화하였음.
 - 이와 같이 화재관련 의무화재보험 보상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최소 보상한도를 자동차보험의 한도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보험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무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은행들은 화재로 인해 담보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담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건

9) 연면적 1,000~3,000m²이상, 16층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의 아파트 등.

10) 바닥면적 100m²이상 또는 수용인원 100~300명 이상.

11) 예를 들어 연면적이 990m²인 건물의 경우 화재 위험이 높을지라도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음.

12) 최창희(2014),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 개선 방향」,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물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출 기간 동안 특정 수준의 이상의 화재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대출 조건으로 함.¹³⁾

- 또한 미국 임차인들은 주택 임대 시 임대인들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함.¹⁴⁾
- 국내에서도 화재사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미국과 같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들은 다양한 화재 손해를 담보하는 보상한도가 높은 화재보험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적극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화재보험 실무자들은 화재보험 보험료가 저렴하여¹⁵⁾ 보험설계사들이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화재보험 판매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 현재는 보험설계사들의 판매 유인책이 낮아 설계사채널을 통한 화재보험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대안적으로 비대면 채널(홈쇼핑·텔레마케팅·TV 광고 등)을 통해 화재보험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키리**

13) <https://www.wellsfargo.com/mortgage/manage-account/homeowners-insurance/> 참조.

14) <http://www.wsj.com/articles/SB108552650467421267> 참조.

15) 특약부화재보험의 월 보험료는 1,000원 내외고 보상한도가 높은 주택 화재보험 월 보험료도 만 원 내외임.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박선영 연구위원

요약

■ 수익성 제고와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부동산 투자에 주목하고 있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부동산 투자가 제한적이었던 배경에는 과거 개발 시기에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투기제한 목적에서 규제토록 한 감독정책의 영향이 남아 있음. 반면에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서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수익성 제고와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다양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용 부동산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의 경우 위험기준 자기 자본(RBC) 규제상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투자대상의 목표수익률과 투자유형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만으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된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비유동성 프리미엄(illiquidity premium)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부동산 투자를 늘리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¹⁾에 따르면 부동산 장기임대료 수입이 채권 수익률에 버금가는 안정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면서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음.

– 영국계 푸르덴셜의 투자운용 자회사인 M&G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장기임대계약 매물에 집중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총 9억 파운드를 투자해 상업용 오피스에서 상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음.

– 네덜란드계 ING 투자운용은 보험회사 Nationale-Nederlanden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7억 5,000만 유로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를 조성했음.

– 독일계 생보사인 알리안츠는 고속도로, 경기장, 대체에너지 개발 등 대체투자 사업에 2013년 이후 4억 달러를 투자했음.

1) 파이낸셜타임스(2014. 5. 27), "M&G and ING push insurance cash into real estate investment".

- 지난 2014년 골드만 삭스가 글로벌 보험회사 CFO·CIO 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향후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중에서도 부동산펀드,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음.²⁾

■ 전통적으로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비중이 낮았던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최근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음.³⁾

- 부동산 전문컨설팅 그룹인 CBRE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각국별 생명보험업계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은 중국 1.0%, 일본 1.8%, 한국 2.4%로 미국(6%)과 영국(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중국은 2009년 보험회사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2012년 10월부터는 해외 부동산투자를 허가하는 한편 부동산 투자 제한요건도 현행 자산 20%에서 30%로 확대함.

■ 일찍부터 부동산 투자가 비교적 활발했던 미국 보험업계의 경우 부동산 직·간접 투자를 통한 보험회사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2013년 기준 6,658억 달러(한화 약 732조 원)⁴⁾에 이르고 있음.

- NAIC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자본규제 및 건전성 감독 강화로 은행들의 자금 공급이 주춤한 가운데 보험회사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자금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음.
 - 전체 부동산 투자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전체 시장의 51.4%를 차지하고 있고 CMBS 투자가 28.8%, REITs, 조인트 벤처투자 등은 각각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2013년 기준 미국 보험업계 상업용 부동산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	총합	비중
상업용부동산대출	324,390.2	7,549.4	10,146.2	342,085.8	51.4
CMBS	148,159.9	35,197.9	8,078.2	191,436.0	28.8
REITs	39,427.2	8,331.8	3,128.7	50,887.7	7.6
부동산보유	23,935.5	10,055.2	4,762.9	38,753.6	5.8
조인트벤처투자	29,241.0	12,725.0	696.8	42,662.8	6.4
총합	565,153.8	73,859.3	26,812.8	665,825.9	100.0

자료: NAIC(2013), "Capital Markets Special Report: Insurance Industry's Exposure to Commercial Real Estate".

2) Siegel M.H. & Athans A.L.(2014),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surance Survey: Risk On Reluctantly".

3) CBRE, "Liberalisation and the Rise of Asian Insurance Investment in Real Estate".

4) SNL Financial에 따르면 2013년 미국 보험업계의 현금 및 투자자산 규모가 5조 달러 규모임을 감안하면 전체 투자자산 중 13%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추산됨.

- 부동산 직접투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매각차익 실현목적(3.3%) 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수익목적(45.4%)이 전체 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2013년 기준 미국 보험회사 부동산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유형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	총합	비중
사용목적	6,960.9	8,554.8	4,341.7	19,857.4	51.2
임대수익목적	16,021.6	1,251.9	335.4	17,608.9	45.4
매각차익 실현목적	953.0	248.6	85.7	1,287.3	3.3
총합	23,935.5	10,055.3	4,762.8	38,753.6	100.0

자료: NAIC(2013), "Capital Markets Special Report: Insurance Industry's Exposure to Commercial Real Estate".

- 로이터 통신⁵⁾에 따르면 미국계 메트라이프는 2014년 초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운용사와 함께 보스턴,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오피스에 17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는 등 부동산 투자금액이 5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미국계 푸르덴셜은 자회사인 PREI(Prudential Real Estate Investors)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온 대표적인 보험회사로 꼽힘.⁶⁾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2013년 기준 운용자산 대비 3~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임.

- 지난 10년간 보험회사의 총자산과 운용자산의 증가로 인해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 투자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는 과거 개발 시기에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투기 제한 목적에서 접근한 감독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⁷⁾
 - 1990년 재무부의 금융기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 지시로 2,122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례가 있음.⁸⁾

5) 로이터통신(2014. 6. 2), "Search for yield has insurers running to alternatives".

6) 강형구·이창민·이상엽(2012), 「영미 선진기업의 부동산투자 사업전략」, 영미연구 제 27집, p. 348.

7) 1960년대 이전에는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가 1970년대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 따라 투자 한도가 축소돼 현재는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됨.

8)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60년사」.

〈표 3〉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생보사				손보사			
	총자산	운용 자산	부동산	운용자산 대비비중	총자산	운용 자산	부동산	운용자산 대비비중
2000	120.51	100.02	9.54	9.54	29.03	22.78	2.81	12.33
2001	137.96	112.00	9.43	8.42	33.26	25.57	3.08	12.03
2002	163.30	132.03	9.07	6.87	35.25	29.14	3.10	10.63
2003	183.24	148.00	8.98	6.06	37.93	31.58	3.25	10.29
2004	209.91	167.78	8.86	5.28	42.75	35.42	3.34	9.43
2005	234.77	183.58	9.19	5.01	49.02	40.16	3.51	8.73
2006	265.78	201.89	9.59	4.75	55.80	44.98	3.59	7.99
2007	297.34	221.85	10.09	4.55	63.83	51.79	3.85	7.43
2008	320.41	239.25	10.42	4.36	71.53	57.26	4.08	7.13
2009	361.43	266.73	11.48	4.30	83.00	66.06	5.04	7.62
2010	408.50	304.70	12.08	3.96	99.01	79.51	5.55	6.98
2011	442.65	336.99	13.48	4.00	123.36	95.25	6.25	6.56
2012	547.81	429.14	14.23	3.31	151.79	119.07	6.43	5.40
2013	597.48	467.37	14.99	3.21	170.56	135.96	6.45	4.74

자료: 금융통계시스템.

■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와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용 부동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 4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업무시설용과 투자사업용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음.
 -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사실상 공공성 사업으로 제한돼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서 보험회사들이 주택사업,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 요양사업 등 다양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있음.⁹⁾

■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한 핵심 부동산 자산(Core Asset)과 고위험-고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가치창출 부동산 자산(Value-Added Asset)을 구분해 부동산 투자유형과 위험에 따라 적절한 위험계수

9) 파이낸셜타임스(2014, 5, 27), "M&G and ING push insurance cash into real estate investment".

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규제 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부동산 직접투자의 경우 6%, 부동산 간접 투자는 주식과 동일한 12%가 반영되고 있어 간접투자를 저해할 여지가 있음.
 - 채권수익률에 준하는 안정적인 장기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 목표 수익률과 물건별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위험계수의 고려가 필요함. [kiri](#)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전통시장은 높은 화재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화재 발생 시 이로 인해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전통시장은 소화활동이 어려운 구조, 인화성이 높은 재고 보유, 노후화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화재 사고에 취약함. 이렇게 높은 화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화재보험 가입률도 낮은 편임. 정부는 정책성보험 도입을 통해 일부 영세사업자들의 대형 재난사고 대응을 지원해왔으나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정부당국은 전통시장 사업자 영업인가 시 소방안전 기준 강화,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진단 수행, 시장 상인들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 소방시설 및 시장 구조 정비, 정책성보험 도입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¹⁾은 화재 발생 시 이로 인해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음.

- 일례로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1,220개 점포를 불태워 187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같은 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액의 약 11.5%를 차지함.²⁾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당 평균 피해액은 1,336만 원으로 전체 화재사고 건당 평균 피해액 779만 원 보다 1.7배 많고 화재사고 발생 시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같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³⁾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을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등록시장, 인정시장, 기타시장 등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음.

2) 행정통계상 피해액은 187억 원이나 대구시가 집계한 피해액은 694억 원이었음.
http://ko.wikipedia.org/wiki/2005년_서문시장_화재_사고 참조.

3) <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505/e20150506172137117470.htm>

■ 특히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소화활동이 어려운 구조, 인화성이 높은 재고 보유, 노후화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화재 사고에 취약함.⁴⁾

- 대부분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화재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⁵⁾
 - 50년대 이후 상거래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다수의 전통시장들은 좁은 통로가 미로처럼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소방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특히 전통시장에는 인화성이 높은 포목, 의류, 화학섬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고열과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화재가 빠르게 넓은 지역으로 변질 수 있음.
- 전통시장의 전기·가스·소방시설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음.⁶⁾
 - 최근 진행된 화재안전 점검에서 전통시장 중 34.4%가 전기설비에서 '주의' 이하의 등급을 받았고 72.2%가 가스설비에서 '주의' 이하의 등급을 받았음.⁷⁾
 - 전통시장의 LNG, LPG, 유류, 전기를 이용하는 화기 및 발열기구의 무분별한 사용은 이러한 화재 확산 리스크를 증가시킴.

■ 이와 같이 높은 화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 않음.

- 높은 화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점포 중 일부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시장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338개로 전체 1,502개 전통시장의 22.5%에 불과함.⁸⁾
 - 보험 실무자들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회사들이 리스크가 큰 전통시장 화재보험 인수를 꺼려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함.
- 정부는 보험 가용성(availability)·부담성(affordability)⁹⁾ 등의 문제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정책성보험을 도입해 경제주체들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화재사

4) 박항준(2013),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방재와 보험 신년호, pp. 37~40,

박두석(2013), 『전통시장 화재취약요인과 소방안전대책』, 방재와 보험 가을호, pp. 7~10,

장영환(2014), 『전통시장의 화재위험특성과 안전관리』, 방재와 보험 신년호, pp. 11~14 참조.

5) 김정동·정덕훈(2014), pp. 160 참조.

6) 시장경영진흥원(2013),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pp. 128 참조.

7) 중소기업청(2010)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지원』 참조.

8) 시장경영진흥원(2013),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pp. 128 참조.

9) 가용성(availability) 문제는 높은 손해를 우려해 보험회사들이 시장에 보험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이고 부담성(affordability) 문제는 보험이 존재하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고에 대비한 정책성보험은 부재함.

- 현재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무역보험, 매출채권보험 등의 임의보험¹⁰⁾과 다수의 의무보험¹¹⁾이 정책성보험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 2014년 현재 전통시장 상인 과반수의 소득이 200만 원 이하로 대부분이 영세하고¹²⁾ 다수의 점포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대형 화재사고 발생 시 다수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나 보험 가용성·부담성 문제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음.
- 정부는 대형 화재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발생이 가능한 건물을 ‘특수건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 않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특수건물’¹³⁾로 정하고 이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매년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 전통시장은 ‘특수건물’로 구분되지 않아 동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음.¹⁴⁾
- 김정동·정덕훈(2014)은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화재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음.¹⁵⁾

■ 정부당국은 영업인가 시 소방안전 기준 강화,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진단 수행, 시장 상인들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 소방시설 및 시장 구조 정비, 정책성화재보험 도입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함.

10)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무역보험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참조.

11) 보험개발원 의무보험 목록: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건축사보험, 경량항공기에 대한 보험, 공인인증기관 책임보험, 낚시어선보험, 다중이용시설 화재 배상책임보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복합운송주선업자화물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산림보험, 선원근재보험,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 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수렵보험, 수상레저보험, 승강기보수업자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연구기관종사자 상해보험,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연안체험시설운영자 배상책임보험, 외국인노동자상해보험, 우주발사체보험, 운전학원 종합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학원 배상책임보험, 항공보험, 해외근재보험, 화재보험의 특수건물 신체배상책임보험특약

12) 전통시장 상인 19%의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 과반수의 월소득이 200만 원 이하임.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3343> 참조.

13)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농수산물도매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중 특정 연면적(각 층 면적의 합으로서 1,000~3,000m² 이상과 같은 조건이 이용됨) 또는 층수(「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또는 아파트 이외의 11층 이상 건물)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함.

14) 본 법에 따라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자는 사망 8천만 원·실제손해액 2천만 원·상해 1,500만 원을 최소 보상한도로 가지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15) 김정동·정덕훈(2014), 『국내 재난안전 취약분야 조사 및 재난보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참조.

- 정부당국은 전통시장 영업인가 시 또는 내부 구조 변경 시 상인들이 최소한의 소방안전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사업신고 시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시 소방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소방서로부터 확인받아야 함.¹⁶⁾
-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사고 안전진단이 필요함.
 - 정부당국은 시장경영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화재사고 안전진단 항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화재안전 진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인들에게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해 화재사고의 위험성을 인식시켜야 함.
 - 사업신고 시 또는 화재안전진단 시 효과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 정부당국은 화재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장의 소방시설과 시장 구조 정비를 명령·지원해 이를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정부당국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전통시장 정책성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화재 시 손해가 상인들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인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 형태의 정책성보험 도입이 필요함.
 - 모집 수수료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위해 최소 가입 단위를 정해 단체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¹⁷⁾
 - 타 정책성보험과 달리 각 전통시장들은 화재 리스크 수준에 편차가 크므로 각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도지수¹⁸⁾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⁹⁾
 - 다수 전통시장 점포의 피보험자 재고자산 가치를 일일이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화재사고 발생 시 재산 과대 신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세청 소득·비용 신고 내용을 토대로 손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약관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김정동·정덕훈(2014)은 시장단위의 가입을 제안했으나 손해보험 실무자들에 따르면 각 시장별로 최소 가입가능 점포 개수(예를 들어 50개)를 정해 이를 충족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함.

18) 화재위험도지수(FRI, Fire Risk Index)는 화재위험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한국 화재보험 협회 등이 이를 측정함. FRI가 작을수록 화재위험이 낮음. 현재 화재위험도 지수가 낮은 시장들은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19) 김정동·정덕훈(2014)은 보험료의 50%와 손해율이 18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실손보상형 화재보험을 제안했음. 김정동·정덕훈(2014)은 재물손해 건물 3천만 원·재고자산 2천만 원, 배상책임 대인 인당 1억 원/사고 당 10억 원·대물 사고당 3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실손형 손해보험을 제시했음. 단, 보험가입금액은 한도 내에서 계약별로 결정됨.



자동차보험의 시장기능 활성화: 유럽의 사례

전용식 연구위원, 정승연 연구원

요약

■ 최근 고가차량 증가로 자동차보험의 형평성이 이슈가 되고 있음. 금융당국은 고가차량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제도개선 방안이 기대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산업의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함. 시장기능이란 손해율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함. 시장상황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회사의 영업적자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보험상품과 요율 규제를 철폐한 유럽의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요율규제 철폐 이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는 하향 안정화되었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유럽의 사례는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점을 시사함.

■ 최근 고가차량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월 13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고가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렌트비와 수리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심화, 저가차 운전자의 경제적 파산 위험 확대와 보험료 부담 가중에 의한 형평성 왜곡을 제시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차담보 추정 수리비와 렌트비 관련 표준약관 개정, 자차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등이 추진될 계획임.
 - 고가차의 렌트비가 차량 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경미한 사고는 추정 수리비를 통해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됨.
 - 저가차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는 1.63원이나 고가차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는 0.75원으로 저가차의 보험료 부담이 고가차에 비해 2.2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가차 운전자들의 고가차 운전자 물적손해 부담을 의미함.

■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차보험의 시장기능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함.

-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2011년 4,162억 원, 2012년 6,432억 원으로 2010년 1조 5,696억 원에 비해 크게 감소함.
 - 판매비를 예정사업비의 40% 이내로 축소하였고, 차차 자기부담금 공제방식 변경, 장기 무사고자의 보험료할인 확대(60% → 70%), 진료비 심사의 심평원 위탁 등임.
- 그러나 종합대책 시행 이후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압력이 커지면서 2012년 4월 기본보험료가 2.5% 인하되었고 이후 손해율이 악화됨.
 -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다시 증가함.¹⁾

〈표 1〉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영업적자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손해율	81.6%	75.5%	75.2%	78.2%	80.1%
영업적자	1조 5,696억 원	4,162억 원	6,432억 원	8,162억 원	1조 1,000억 원

주: IFRS 적용 이전 기준 손해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연호.

■ 유럽의 경우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단일시장 통합 정책으로 보험 요율 및 상품 규제가 철폐되고 보험시장의 상품 및 가격경쟁이 심화되며 시장기능이 활성화됨.

- 손해보험의 경우 1992년 손해보험위원회 지침(Non-Life Council Directive 92/49/EEC)에 따라 1995년까지 유럽연합 국가들의 개별적인 상품인가 및 요율규제가 철폐됨.
- 1992년 이전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상품 및 요율을 강하게 규제하였고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규제해왔음.²⁾

■ 규제 철폐 이후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었으나 보험료와 손해율은 안정적으로 하락하여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임.

-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경우 규제철폐 이후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있음.

1) 기승도(2013),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 Sigma, "Europe in Focus: Non-Life Markets undergoing Structural Change", No. 3/2000.

- 이탈리아의 경우 1996년에서 1999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평균 증가율 상승세가 규제철폐 이전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2005년 이후 안정화됨.

〈표 2〉 유럽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기간별 평균 증가율

(단위: %)

구분	1992~1995	1996~1999	2000~2004	2005~2008	2009~2013
이탈리아	5.8	8.4	6.0	-0.4	-2.1
포르투갈	16.7	5.8	5.9	-2.0	-3.9
그리스	22.0	15.3	9.6	10.1	-3.8

자료: CEA Statistics.

-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1992년에 비해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임.

〈표 3〉 유럽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단위: %)

구분	1992	1995	1999	2006	2010	2014
이탈리아	94.3	91.3	92.5	76.9	80.5	71.3
포르투갈	80.5	68.6	70.2	68.6	74.5	70.2
그리스	127.3	80.6	92.2	90.4	82.2	83.5

자료: CEA Statistics.

- 90년대 이탈리아의 손해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1996년에서 1999년 기간 동안 8.4%로 높았던 원인은 평균보상비용의 증가, 수리비 상승, 그리고 보험사기 증가 등임.

- 1994년에서 2001년간 평균보상비용은 1,923유로에서 3,830유로로 증가함.

■ 자동차보험요율 규제 철폐 이후 유럽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됨.

- 이탈리아 자동차보험회사는 1994년 105개였으나 2000년 80개로 줄어들었고 상위 20개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1982년 63.6%에서 2000년 79.9%로 상승함.
 - 시장의 경쟁심화로 자동차보험회사들간 인수·합병이 늘어났고 자발적 퇴출도 있었음.
- 요율규제 철폐로 보험회사들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보험

회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³⁾

-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우와 같은 실질적인 시장기능 활성화가 필요함.
- 유럽의 경우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kiri**

3) Angelo Borselli(2011), "Insurance Rates Regulation in Comparison with Open Competition", Connecticut Insurance Law Journal, Vol 18,1.



국제기구 보험자본규제 통합논의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IAIS는 향후 모든 국가의 보험감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될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자본규제인 보험자본기준(ICS)을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ICS는 글로벌 보험그룹인 IAIGs와 G-SIIs에 우선 적용되지만 IAIS는 최종 목표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본규제로 잡고 2019년부터 각국 보험감독을 ICS로 점진적으로 수렴시킬 예정임.
 - ICS의 주요 특징은 (1) 글로벌 보험그룹에 적용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본적정성 규제 (2) 리스크에 기반한 그룹단위 연결감독을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ICS의 일차적 대상인 글로벌 보험그룹은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ICS의 적용 확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보험감독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인 그룹단위 연결감독과 자체 위험평가(ORSA) 등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본고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이하 IAIS¹⁾)가 향후 모든 국가에 적용하게 될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자본규제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자본기준(이하 ICS²⁾)의 개발 계획 및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
 - IAIS는 2013년 10월 9일 ICS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보험감독의 국경 간 차이에 따른 규제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도 수렴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각국의 보험감독당국 및 관련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보험권역의 국제적 감독기준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2) Insurance Capital Standard.

■ ICS 개발작업은 2017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ICS에 이어 2019년까지 완료되는 2단계 ICS로 구성되어 있음(〈표 1〉 참조).

〈표 1〉 ICS와 ComFrame 개발 계획

기한	일정
2016년 5월/6월	2016 정량적 현장평가 시작 2차 ICS 의견수렴 보고서 및 ComFrame 의견수렴 발간
2016년 9월/10월	2016 정량적 현장평가를 위한 데이터 마감 2차 ICS 의견수렴 보고서 및 ComFrame 의견수렴 마감
2017년 5월/6월	ICS version 1 대외비 보고 채택 2017 대외비 보고 절차 시작
2017년 9월/10월	2017 대외비 보고 절차를 위한 데이터 마감
2018년 5월/6월	2018 대외비 보고 절차 시작 ICS version 2 보고서 발표 및 ComFrame 의견수렴 발간
2018년 9월/10월	2018 대외비 보고 절차를 위한 데이터 마감 ICS version 2 보고서 발표 및 ComFrame 의견수렴 마감
2019년 4월/5월	2019 대외비 보고 절차 시작
2019년 8월/9월	2019 대외비 보고 절차를 위한 데이터 마감
2019년 IAIS 총회	ICS version 2를 포함한 ComFrame 채택

자료: IAIS(2015), “ICS Goals, Principles and Delivery Schedule”.

- 1단계 ICS(ICS version 1)는 2017년 채택 예정으로 대외비 보고(confidential reporting)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을 예정임.
- 2단계 ICS(ICS version 2)는 2019년 채택 예정으로 글로벌 보험그룹(IAIGs³⁾) 감독을 위한 국제적인 보험그룹 감독기준인 ComFrame⁴⁾ 체계의 일부로 자본규제를 담당함.

■ 2019년까지 개발되는 2단계 ICS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그룹(G-SIIs⁵⁾)에 대한 추가손실흡수(HLA⁶⁾) 자본 계산을 위한 기본자본의 역할임.

- 현재 G-SIIs에 대한 HLA 부과를 위한 기본자본으로 기초요구자본(BCR⁷⁾)이 개발되었으나 이는 2019년 이후 ICS로 대체될 예정임.

3)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보험그룹.

4)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AIGs.

5) Global Systematically Important Insurers, 부실화되는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보험회사.

6) Higher Loss Absorbency, 금융안정위원회(FSB)와 IAIS는 G-SIIs에 대한 규제방안의 하나로 G-SII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자본을 부과할 계획임.

7) Basic Capital Requirement.

- IAS는 ICS 개발의 최종 목표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본규제로 잡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감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19년 이후부터 각국의 보험감독을 ICS로 수렴시킬 계획임.
 - 점진적으로 자본평가,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과 관련된 ICS의 핵심 내용을 각국의 보험감독에 적용함으로써 각국의 보험자본규제를 실질적으로 통일시킬 것으로 예상됨.
- ICS 원칙은 10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ICS의 주요 특징은 (1) 글로벌 보험그룹에 적용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본적정성 규제 (2) 리스크에 기반한 그룹단위 연결감독을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표 2) 참조).
 - 아래에서 ICS 원칙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향후 국제적으로 수렴되는 보험자본규제의 변화 방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표 2〉 ICS 원칙

ICS 원칙 1	ICS는 IAIGs와 G-SIIs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리스크 기반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연결기준 그룹단위 감독 기준
ICS 원칙 2	ICS의 주된 목적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향상
ICS 원칙 3	G-SIIs에 대한 HLA의 기초로도 사용
ICS 원칙 4	IAIGs가 노출된 모든 주요 리스크를 반영
ICS 원칙 5	IAIGs에 대한 국가 간 분석에서 분석결과와 국제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감독자들 사이에 상호이해와 신뢰를 향상
ICS 원칙 6	IAIGs와 G-SIIs의 건전한 리스크 관리 촉진
ICS 원칙 7	감독자와 IAIGs의 부적절한 경기순응적 행위를 최소화하며 건전한 행위 촉진
ICS 원칙 8	리스크 민감성과 단순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
ICS 원칙 9	ICS는 투명성이 중요하며 특히 최종 결과의 공시와 관련된 투명성 강조
ICS 원칙 10	ICS에서 필요자본은 적절한 목표 기준에 기반하며 여기서 조정을 거침

- ICS의 적용대상은 IAIGs와 G-SIIs이며 이들은 모두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을 하는 대형 보험그룹이므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감독기준이 필요함.
 - 보험권역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본적정성 규제⁸⁾가 아직 없으므로 ICS 개발은 각국 감독자들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촉진시켜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각국 감독자 사이의 협력과

8) 이는 은행권역에서 Basel 규제를 통해 전 세계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대비됨.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바 있음.

■ ICS는 보험그룹이 가지는 모든 중요 리스크를 측정하고 이에 대비한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그룹단위에서 연결기준으로 평가함.

- 보험업은 그 영위과정에서 보험리스크를 비롯하여 시장, 신용, 금리 리스크 등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며 모든 주요 리스크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여야 함.
- 자본적정성을 그룹단위로 연결하여 평가하면 금융그룹 단위에서 일어나는 자본의 중복계상(double gearing)이나 과다차입(excessive leveraging)을 방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ICS의 일차적 대상인 IAIGs⁹⁾나 G-SIIs에 속하는 보험그룹은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미 규모 면에서 생명보험 대형 3사와 손해보험 최상위 회사는 IAIG 요건을 충족하며 이들은 해외사업의 확장속도에 따라 ICS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공통된 보험자본규제는 비록 초기에는 글로벌 보험그룹에만 적용되지만 IAIS의 최종 목표대로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보험회사 자본적정성 규제는 ICS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됨.

- 1988년 G10 국가¹⁰⁾ 사이에서 시작된 은행권역의 바젤 규제는 오늘날 은행권역의 공통된 자본적정성 규제로 지역이나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은행에 적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감독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인 그룹단위 연결감독과 자체위험평가(ORSA) 등도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방안¹¹⁾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kiri](#)

9) IAIGs는 (1) 규모 측면에서 직전 3개년도 말 총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이거나 원수보험료가 100억 달러 이상인 보험그룹 중 (2) 국제성 측면에서 3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면서 총매출의 10% 이상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보험그룹.

10) 미국,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0. 29),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비급여 의료비 심사 논란과 진료비확인제도 개선안 모색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 최근 총의료비 통제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본고는 현행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함. 현행 진료비확인제도에서 ① 확인을 신청하는 주체와 ② 진료비를 확인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의료계가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한 경우의 의료소비자 구제 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오히려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이 사회적으로 더욱 존중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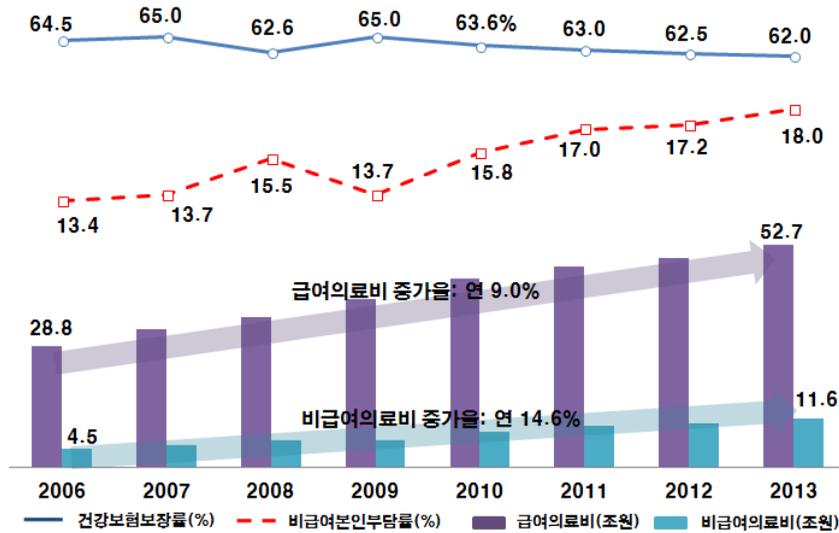
■ 최근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하는 총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의료 복지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공보험을 중심으로 한 건강 복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부문이 크게 확대¹⁾되면서 별다른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현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²⁾에 대한 보장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15년 4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도 비급여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함.
 - 심평원의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병원별 가격차이가 평균 7.5배로, 최대 17.5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1) 2006~2013년 동안 급여 의료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9.0%대 인데 반해, 비급여 의료비는 14.6% 수준임.

2)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에 약 1.5%p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도자료).

〈그림 1〉 건강보험 보장률 및 의료비 추이(2006~2013년)



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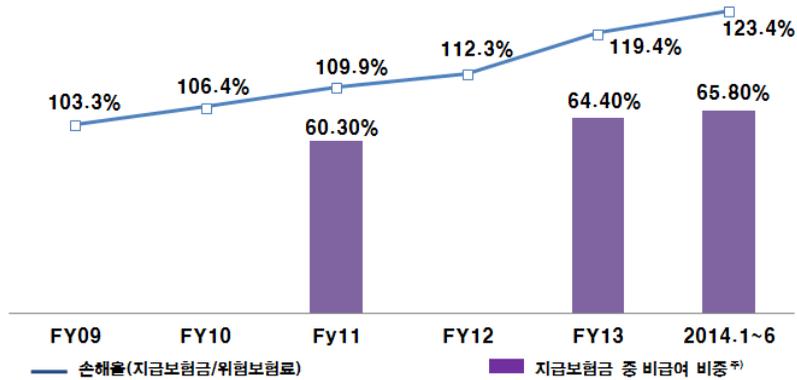
■ 비급여의 급증은 공적 보험 보장률을 정체시킬 뿐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도 크게 상승시키면서, 민영보험의 보험금 내역을 심사하여 총 의료비를 관리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현재 120% 이상으로, 특히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의 비중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손해율 상승을 가중시키고 있는 양상임.
- 2015년에 김춘진,³⁾ 오신환⁴⁾ 등은 비급여를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그 내역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함.
 - 두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심사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함.
- 민영건강보험 보험금의 전문심사기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3) 김춘진 안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요양기관에 알려야 하며, 보험사는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의료비용에 대해 요양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함.

4) 반면, 오신환 안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요양기관에 알려야 하며, 전문심사기관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요청권 및 전산망 구축을 위한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함.

〈그림 2〉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및 비급여 비중 추이



주: 1) 손해보험 상위 4개사, 2014년은 1~10월 기준임.

2) FY09, FY10, FY12 수치는 자료 부재로 표기하지 않았음.

자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① 비급여 표준화(비급여 의료비와 관련한 의료 행위, 코드, 수가 등에 대한 표준화)와 ②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심사로 나누어 파악해볼 수 있음.
- 비급여 표준화와 관련하여 의료계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선택적인 요소가 많고, 수가 산정을 표준화하기 여의치 않은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급여 의료 행위 및 수가의 표준화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필수 의료적 성격이 있는 행위도 있으나 선택적 의료인 경우도 많아 자칫하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임.
 -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 가격은 의료진 및 의료시설의 수준, 시술 부위 및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 치료재료 종류 등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차별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비급여 의료비 심사와 관련해서 의료계는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사적영역이며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보험회사 등) 모두의 관여를 반대하고 있음.

5) 심평원은 2012년부터 의료계와 공동으로 비급여 행위 및 코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진척도는 미미한 수준임(2013년 기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비율은 9.7%에 불과).

-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의료는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사적 영역으로서 의료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간섭 자체에 대해 부정적임.
 - 특히, 의료계는 심평원의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데 본기관이 기본적으로 급여부분인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⁶⁾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급여 의료비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에도 타당성이 있음.
-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의료계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임.
 - 의료계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 환자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고려해야 할 어떠한 합의와 제휴 관계도 없다는 입장임.

■ 본고는 의료계의 주장을 많은 부분 수용하더라도 현행 진료비확인제도를 개선하는 선에서 비급여 의료비 심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함.

-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급여 의료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복지의 향상을 위해 관련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진료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의료진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 유일한 구제 수단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의료 지식이 취약한 일반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현재의 진료비확인제도를 개선하는 형태로 의료 소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현 진료비확인제도의 한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는 ① 확인을 신청하는 주체 또는 ② 진료비의 확인 주체에 따라 다양한 개선안을 모색하고 구체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과다의료비 지출의 경우 민영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가, 비가입자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비용을 감당하는 만큼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도록 개선함.
 -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과대 지급되면 계약자들이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험

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회사는 계약자를 대리해서 진료비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심평원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의료소비자를 과다 의료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진료비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대리해서 진료비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심평원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셋째, 민영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진료비확인제도를 운영함.
 - 심평원에 의해 모든 진료비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의료계와 보험회사 간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비가입자의 경우는 환자가 스스로 신청을 하는 현행 제도로 운영하거나 심평원이 직권으로 하는 형태 모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표 1〉 진료비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구분	민영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신청 주체	진료비 확인 주체	비고
현행	가입자	환자 본인	심평원	-
	비가입자	환자 본인	심평원	
1안	가입자	보험회사	심평원	김춘진(2015), 오신환(2015): 전문 심사기관이 심평원인 경우와 유사
	비가입자	환자 본인	심평원	
2안	가입자	심평원	심평원	사실상 직권심사제
	비가입자	심평원	심평원	
3안	가입자	의료계-보험회사 간 협의 기구	의료계-보험회사 간 협의 기구	김춘진(2015), 오신환(2015): 전문 심사기관이 별도기관인 경우와 유사
	비가입자	환자 본인 or 심평원	심평원	

■ 의료계는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한 경우 의료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적인 판단’이 더욱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kiri](#)

3. 고령화

- | | |
|-------------------------------------|---------|
|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도입 논의 및 검토 방향 | 정원석 오병국 |
| 2. 저금리 기조가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 류건식 김동겸 |
|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사 협력방안 검토 | 정성희 |
| 4. 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 협력 필요 | 오승연 김동겸 |
| 5. Cash Balance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 전성주 이상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논의 및 검토 방향

정원석 연구위원, 오병국 연구원

요약

- 최근 정부는 저축 장려를 위해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 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과 일본에서 운용되고 있음. 영국은 예·적금 상품과 금융투자상품에,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ISA 계좌 수와 적립액은 꾸준히 늘어났으나 계좌의 78%가 단기 입출금이 용이한 예금형임. 따라서 ISA 도입에 따라 장기저축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장기저축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계좌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¹⁾

- ISA 이용 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허용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구성과 관리 및 상품 이전이 가능함.
-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혜택(비과세)을 부여해 저축·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임.

- 우리나라의 ISA 도입 기본 방향은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고 ISA를 이용해 다양한 금융상품 간 자유로운 이전 및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존 은행의 재형저축, 주택청약 저축, 증권의 소득공제 장기펀드, 보험의 저축성 보험 상품 등 비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 9. 1),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

과세 및 소득공제 상품을 정비하여 ISA로 통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ISA를 이용해 해당 상품 간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해 저축자 편의를 증진하고 금융상품 간 경쟁을 유도함.

■ 영국은 낮은 저축률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기존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여 ISA를 도입함.

- 주식양도 차익과 배당소득이 면세되는 PEP(Personal Equity Plan)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TESSA(Tax 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를 정비하여 ISA로 통합함.²⁾
- ISA 도입 당시 투자 가능 상품별로 증권형, 예금형, 그리고 보험형 ISA가 존재했으나 보험형은 상대적으로 호응이 적어 2005년 폐지되었음.³⁾
 - 이후 보험형 ISA 대상 상품 중 투자형 상품은 증권형으로, 배당형 상품은 예금형으로 편입되었으나 전체 중 그 비율은 전체의 1% 미만으로 미미함.

■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ISA 관리자로 감독기관⁴⁾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 은행, 협동조합, 집합투자업자 등에 ISA 계좌를 개설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음.⁵⁾

- 주식형의 경우 18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연간 15,000 파운드를 한도로 주식, 공사채,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예금형의 경우 16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연간 15,000 파운드를 한도로 예·적금과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 할 수 있음.⁶⁾
 - 연간 투자 한도는 초기 7,000 파운드에서 2013년 11,520 파운드로 증가하였고 2015년 15,000 파운드로 증가하였음.
- 계좌의 비과세 한도 내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입자의 편의성이 높음.

■ ISA 도입 이후 계좌 수 및 적립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⁷⁾

- ISA 시행 초기 900만 계좌이던 가입자 수는 2014년 현재 약 1,350만 계좌로 성장하였음.
 - 예금형 가입자가 78%, 증권형 가입자가 22%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3) HM Revenue & Customs(2014),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4)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5) 영국 정부(<https://www.gov.uk/individual-savings-accounts/how-to-open-an-isa>).

6) 영국 정부(<https://www.gov.uk/individual-savings-accounts>).

7) HM Revenue & Customs(2014),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 가입액 기준 시행초기 약 290억 파운드였던 누적 가입액은 2014년 570억 파운드로 성장함.

■ 일본은 2014년 1월부터 가계의 저축 증대와 금융투자 촉진을 위해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제도를 시행하였음.

● 일본의 가계 저축률은 가처분 소득 대비 1%를 하회⁸⁾하며 예·적금 및 주식·보험 등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가구 비율이 2012년 기준 25%에 이르렀음.⁹⁾

〈표 1〉 영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ISA

구분	영국 ISA		일본 NISA	한국형 ISA(예정)
	증권형	예금형		
대상자	18세 이상 거주자	16세 이상 거주자	20세 이상 거주자	일정소득 이하
대상 상품	상장주식, 공사채, 펀드 등	예·적금, 공사채, MMF 등	상장주식, 공모주식 펀드 등	예·적금, 펀드, 보험
상품간 이전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대상	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	이자 수익	배당, 양도차익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기간	무기한	무기한	5년	-
인출 제한 기간	없음	없음	없음	-
연간적립액 한도	£15,000	£15,000	¥1,000,000	존재
누적잔고 상한	없음	없음	¥5,000,000	존재

자료: 금융위 보도자료(2014. 9. 1),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방안” 참조.

■ NISA는 2014년 1월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10년 간 연 100만 엔을 상한으로 NISA 계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주식과 펀드로 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양도소득¹⁰⁾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해 취득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증권회사, 은행 그리고 우체국에서 NISA를 개설할 수 있음.
- 최초 5년 이후 추가로 5년간 비과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NISA 대상 증권은 상장주식, 외국상장주식, 공모주식 집합투자 증권, 상장주식 집합투자 증권(ETF), 부동산집합투자증권(REITs) 등임.

8) OECD(2014), OECD Economic Outlook No. 95(Database).

9) 금융청(2013), 新証券税制 “NISA(ニーサ) が平成26年1月からスタート!”; 전창민·이현정(2013) 재인용.

10) 일본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음.

-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가계의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율¹¹⁾ 제고를 위해 NISA 투자 가능 상품을 정기 예·적금과 보험 상품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함.

〈표 2〉 한국형 ISA와 기존 세제특례상품과 비교

구분	한국형 ISA	재형저축	저축성보험
대상자	일정소득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제한 없음
상품간 이전	가능	불가	불가
비과세 기간	-	7년(+3년 가능)	제한 없음
최소납입 기간	-	7년	10년
연간적립 한도	존재	1,200만 원	없음
저축 기간	중·단기	중기	장기

자료: 금융위 보도자료(2014. 9. 1),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방안” 참조.

■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국내 도입 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이 없고 상품 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기 저축 증대에는 효과적이거나 장기저축 증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가입자와 적립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단기 입출금이 비교적 용이한 예금형 ISA¹²⁾ 위주로 성장하였음.
- ISA의 도입으로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저축이 단기저축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저축 비과세 등의 기존 정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의 특성과 국민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ISA 대상 상품을 구성해야 함.
 - 보험 상품은 가입 시 필요 사업비를 수취하는 구조로 인해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바꿀 수 있는 ISA의 장점을 살릴 수 없으므로 ISA 편입은 적절하지 않음.
 - 일본과 유사하게 예금·현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¹³⁾를 고려할 때 금융투자상품 위주의 ISA 상품 선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키리**

11) 일본의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율은 16%로 한국 26%, 미국의 54%, 유로존의 30%에 비해 낮은 반면 금융자산 중 예·적금 비율은 5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함. 출처: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 대조표(2014); 유로존은 ECB; 박덕배(2014), 『가계자산구조특징과 시사점』을 재구성함.

12) is4profit(<http://www.is4profit.com/is4money/savings-and-investments/isas.html>).

13)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중 예·적금 비율은 46.5%로 OECD 34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임(일본은 4번째). 출처: OECD(2014), National account at a glance 2014.



저금리 기조가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 김동겸 선임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는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이미 진입한 상태임. 이 같은 환경 변화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첫째, 저금리 환경은 원리금보장형상품 및 1년 이하 단기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금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둘째, 저금리 장기화는 적립금 운용에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그 이유는 저금리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로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 기업은 퇴직금부 지급을 위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셋째, 저성장 기조는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여력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의 장기 특성에 맞게 1년 미만 단기상품보다 장기상품 중심으로 자산배분이 이루어져 운용수익률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투자원칙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함. 또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패턴 변화를 고려하여 자산운용능력의 향상과 CB형 퇴직연금 및 DC형 퇴직연금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는 뉴노멀(New Normal)시대로 이미 진입한 상태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1.75%까지 하락하였으며¹⁾ 전 세계적 경기부진 장기화의 여파로 국내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저금리 환경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만기 1년 이하 단기성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마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2014년 12월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92.2%(98조 7천억 원)이

1) 기준금리 추이: 5.00%(2008. 10. 9) → 3.00%(2008. 12. 11) → 2.00%(2009. 2. 12) → 1.75%(2015. 3. 12)

며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5.8%(6조 2천억 원)에 불과한 실정임.

〈표 1〉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 운용 현황 (2014년 기준)

(단위: 조 원, %)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73.5	97.4	18.5	79.5	0.7	90.3	6.0	79.9	98.7	92.2
실적배당형	1.0	1.4	4.3	18.3	0.1	8.8	0.8	10.9	6.2	5.8
기타	1.0	1.2	0.5	2.2	0.0	0.9	0.7	9.2	2.2	2.0
합계	75.5	100.0	23.3	100.0	0.7	100.0	7.5	100.0	107.1	100.0

주: 기타 적립금은 운용을 위한 대기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2015),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

- 특히, 원리금보장상품 중 대부분(78.6%)이 저리형 단기 안전자산인 만기 1년 이하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수익률이 낮은 상황임.
 - 주요 시중은행 및 보험회사, 증권회사들이 판매한 확정급여형 원리금보장상품의 2015년 1/4분기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최저 0.62%에서 최고 0.75%로 연율로 환산 시 2.48~3.00% 수준임.²⁾

〈표 2〉 원리금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기간별 비중

(단위: %)

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	근로복지공단	전체
1년 미만	0.9	12.9	4.8	9.3	1.9	5.1
1년형	64.6	74.3	79.8	67.6	97.1	73.5
1년 ~ 3년	3.2	0.5	4.6	5.6	0.4	4.1
3년형	15.3	3.9	6.5	15.0	0.6	9.9
3년 초과	6.7	0.0	4.3	2.4	0.0	4.3
금리연동형	9.3	8.4	0.0	0.1	0.0	3.1

자료: 금융감독원(2015),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

- 또한, 저금리 장기화는 적립금 운용 책임 모두를 부담하는 DB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³⁾ 가입 기업에게 추가적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 연합뉴스(2015. 5. 13), “퇴직연금 수익률 ‘날개없는 추락’…1분기 0.6%대”.

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됨.

- 즉, 저금리에 따른 운용환경 악화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법정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⁵⁾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임금상승률에 기초한 법정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에 적립금 운용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적립금 운용액이 법정퇴직금제도 급여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기타이익으로 계상됨.

■ 이와 더불어, 저성장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는 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여력을 감소시켜 자칫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미국 GM이나 크라이슬러, 델타항공 등의 경우 DB형 퇴직연금 가입 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성장으로 인해 사전에 약정한 퇴직급여를 채우지 못해 파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특히, 퇴직 시 까지만 책임을 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DB형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을 획득한 종업원에게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의무가 있어 기업부담은 훨씬 큰 실정임.

■ 이에 OECD 주요국은 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이나 CB(Cash Balance)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전환하는 추세이며, 정부 또한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 DC형 퇴직연금 비중을 확대한 국가는 7개국인데 반해, DB형 퇴직연금 비중이 확대된 국가는 2개국에 불과함(〈표 3〉참조).

4) 운용환경 악화로 인해 퇴직연금운용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함.

〈표〉 국내 기업규모별 인상률 추이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 인상률	100인 이상	명목임금	0.8	7.3	1.5	5.2	3.9	2.3
		협약임금	1.7	4.8	5.1	4.7	3.5	4.1
	300인 이상	명목임금	0.6	8.7	0.3	3.3	3.7	5.2
		협약임금	1.1	4.7	5.2	4.7	3.1	3.6

주: 1) 명목임금: 사후적 임금인상률로 초과급여 및 수당 등이 포함, 협약임금: 노사가 사전 합의한 임금인상률(초과급여 미포함)
 자료: 노동연구원(2015), 『2014년도 임금교섭 타결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5)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임.

- 최근에는 DB형 퇴직연금의 운용부담을 고려하여 DB형 퇴직연금의 장점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CB(Cash Balance)형 퇴직연금을 적극 운용하는 추세임.

〈표 3〉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비중 변화

(단위: %)

국가	확정기여형(DC) 비중		확정금부형(DB) 비중		구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100		0		DC형 제도 단독 운영(5개국)
덴마크	89.3	94.0	10.7	6.0	DC형 제도 비중 확대(7개국)
이탈리아	70.6	91.4	29.4	8.6	
뉴질랜드	70.0	75.8	30.0	24.2	
미국	32.7	39.4	67.3	60.6	
이스라엘	8.9	23.3	91.1	76.7	
포르투갈	3.4	9.5	96.6	90.5	
캐나다	2.5	3.0	97.5	97.0	
멕시코	100	84.6	0.0	15.4	DC형 제도 비중 확대(2개국)
스페인	97.7	73.1	2.3	26.9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0		100		DB형 제도 단독 운영(3개국)

자료: 厚生労働省(2014), “企業年金制度の現状等について”.

- 저성장으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으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문제가 대두되자, OECD 국가들은 법적·제도적으로 수급권 보장을 위한 연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운용함.

〈표 4〉 안정적 연금지급을 위한 수급권보장 장치

국내 연금지급 보장 장치 현황		OECD 국가의 연금지급 보증제도		
제도 및 보장범위	적용대상	구분	정부기관	민간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분에 한정 	퇴직급여	해당국가	미국, 영국 등	독일, 스웨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분, 상한액 설정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운영방식	인수방식 (Take-over)	구매방식 (Buy-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자보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5천만 원 	DC형, IRP	지급보장	국가가 직접보장	민영보험으로 해결

- 이와 같은 저금리·저성장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고, 보험

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마케팅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장기 특성에 맞게 1년 미만 단기상품보다 장기 상품중심으로 자산배분이 이루어져 운용수익률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 투자원칙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됨.
 - 또한, 저성장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을 감안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연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급권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패턴 변화를 고려하여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하고, CB형 퇴직연금 및 DC형 퇴직연금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kir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사 협력방안 검토

정성희 연구위원

요약

■ 지난 9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10년간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발표함.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은 정체하고 있으며, 제2 건강보험으로 정착한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를 악화로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대한 공통 원인은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체계 부재로, 이를 포함하여 현재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산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간 건강보험 심의기구 설립을 제안함.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 뉴비전' 선포를 통해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¹⁾ 달성 목표를 2020년 68%, 2025년 70%로 수립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건강보험 재원 다원화,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보장률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인 비급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하기로 발표함.

■ 현재, 국민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²⁾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임.

- 정부는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 로드맵³⁾을 마련하여 현재 2014~2018년 동안 제3차 강화정책을

1)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요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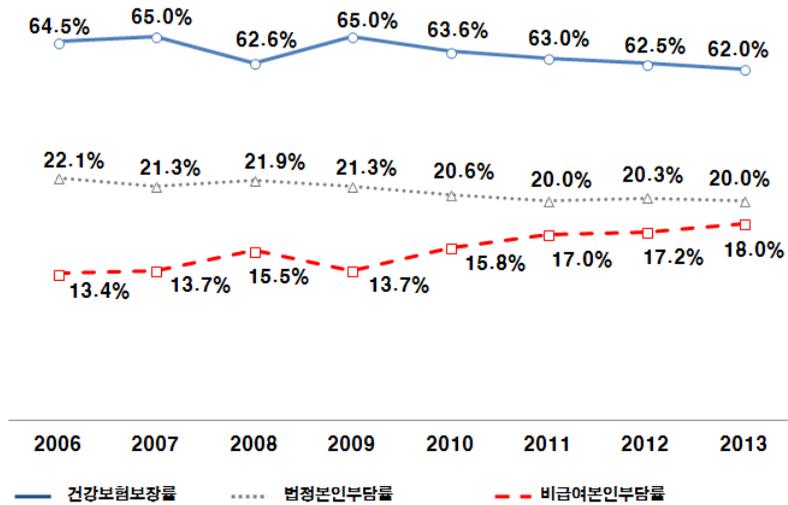
2) 한국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 3.9% 대비 8.7%로 OECD 중 가장 높음(OECD Health Statistics 2014).

3) 제1차 2005~2008년, 제2차 2009~2013년 동안 추진됨.

추진 중임.

-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
- 3단계에 걸쳐 시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은 증가하였으나,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국민임.
-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급여 부분이 9%대인 것에 비해 비급여는 무려 15% 수준

〈그림 1〉 OECD 국가별 GDP대비 의료비 비율(2000~2012년)



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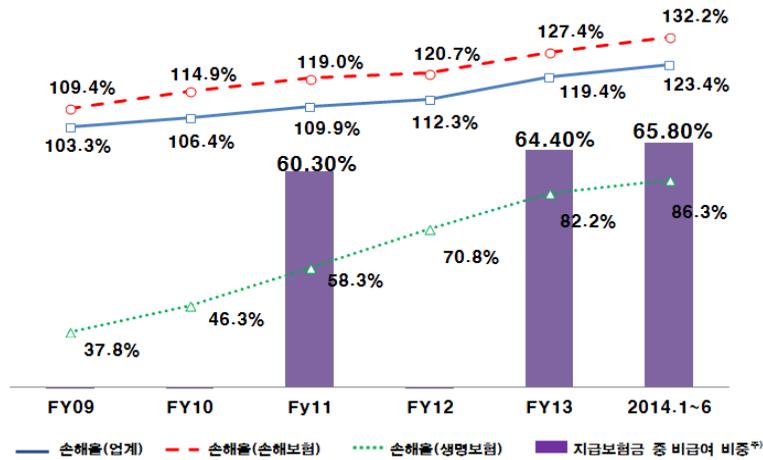
■ 한편, 실손의료보험⁴⁾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⁵⁾한 대표보험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손해를 약화에 따라 그 지속 가능성과 비급여의료비 관리 여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사의 손해율은 120%를 상회하면서 민영 건강 보장 역할에도 한계
-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손해율 상승이 심화

4)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충형으로 2003년에 도입.

5) 2015년 4월 현재 개인실손의료보험 기준(단체 제외) 가입자 3,083만 명.

〈그림 2〉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및 비급여 비중 추이



주: 손해보험 상위 4개사, 2014년은 1~10월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 그러나,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영 건강 보장의 역할 확대에 모두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 어디에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부분은 심사평가원이 엄격하게 심사 및 통제하고 있으나, 비급여 의료비 부분은 이에 대한 적절한 수가나 진료량을 관리하는 조직없는 사각지대로 방치
- 또한 의료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의 코드 및 서식이 서로 상이하여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
-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⁶⁾에서도 비급여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방안 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보험의 보충형으로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사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공·사간 건강보험 심의기구 설립을 제안함.

- 국민 의료비 관리와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달성을 목표로, 그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다양한 공·사 협력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및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시점임.
- 현재 금융의 복지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kiri](#)

6)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2015. 4. 14 발표).



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 협력 필요

오승연 연구위원, 김동겸 연구원

요약

■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정누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영 의료보험 등 의료기관과 관련이 있는 모든 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의 경우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인지 및 적발이 주로 제보와 현지조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뢰된 심사대상 기관에 대한 조사실적이 미흡함. 민영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가입자의 계약특성이나 보험금지급 시 심사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 인지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권이나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보험사기 인지 후 사후대처에 한계가 있음.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사 통합적 의료기관 보험사기 인지 및 적발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기관과의 일상적인 공조체계 역시 강화시켜야 할 것임.

■ 최근 사무장 병원¹⁾의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문제가 심각함.

-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환자 유인·알선, 과잉진료, 허위·부당청 구, 허위처방전 발행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음.
- 올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은 개인형, 법인형, 의료생협²⁾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³⁾
- 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의료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실태조 사 대상기관의 80%가 사무장병원이었으며, 96.7% 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1,510억 원 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함.

1)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들이 자금을 투자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원한 곳으로, 겉으로는 의사가 주인이지만 실제 병원 관리· 운영을 사무장이 맡아서 함. 현재 의료법상 법인을 제외하고는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은 불법 의료기관임.

2)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을 말함(제45조제4항제4호)

3) 금융감독원(2015), "불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정누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영 의료보험 등 의료기관과 관련이 있는 모든 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공·사 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부당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대책, 항시적인 인지 및 적발 체계, 그리고 적발 후 사후관리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나 아직 미흡한 상황임.
-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에서 이미 해당 사무장병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고 있어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징수율이 낮음.
 - 사무장병원 대상 환수결정 금액은 5년간 654배나 증가했으나 실제 징수율은 8.13%에 불과함.
 - 따라서 의료비 지출 이전에 부당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항시적인 인지 및 적발 체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표 1〉 사무장병원 부당지출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단위: 기관, 백만 원, %)

구분	최초 환수결정1)		징수대상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902	776,731	827	616,780	51,744	8.13
2009	7	563	7	563	335	59.50
2010	46	7,223	46	8,775	3,314	37.77
2011	163	59,499	161	59,760	12,679	21.22
2012	212	83,541	185	71,228	8,328	11.69
2013	213	239,540	178	136,332	8,508	6.24
2014	261	386,365	250	340,122	18,580	5.46

주: 1) 최초환수 결정금액.

2) 환수 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건수, 금액. 2013년도 차액은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신설. (13. 5. 22 시행) 법률개정 등에 따라 기 결정 건 취소 후 2014년 재결정.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인지 및 적발이 주로 제보와 현 지조사⁴⁾에 의존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수는 선정기관 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4) 현지조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중 하나로,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조사임.

- 2014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수는 495개소이나 조사를 실시한 기관 수는 142개소에 불과함.⁵⁾
-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 하에 허위·부당청구 하는 경우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혐의를 인지하기 어려움.

〈표 2〉 현지조사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의료기관 수	선정기관 수	조사실시 기관 수	선정기관 대비 조사실시 비율
2012	1,575	1,158	906	78.2%
2013	903	630	395	62.7%
2014	636	495	142	28.7%
2015	210	140	2	1.4%
합계	3,324	2,423	1,445	59.6%

자료: 보건복지부, '2010~2014년 요양기관별 현지조사 현황'.

■ 금융감독원과 민영 보험사는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인지 및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지 후 부당지출액 환수 등 사후처리에 한계가 있음.

- 보험회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지급 단계에서 나타난 보험사기 혐의 조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 등을 실시하며,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수사(조사) 의뢰함.
 - 2013년 9월 말 현재, 생명보험 13개사, 손해보험 15개사가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며, 소속 인원은 총 490명임.
-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회사 등의 보험사기 인지보고에 의해 혐의 인지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보험금 부정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이나 행정처분 권한이 없음.

■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사 통합적 의료기관 보험사기 인지 및 적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과 심사평가원은 MOU를 체결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나, 기획성 혹은 일회성 정보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요양기관별 현지조사 현황' 분석 결과임.

공유에 그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융감독원에 일반통계자료와 요양기관 일반현황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인지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보험금 누수방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상시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사 의료보험자(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와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수사기관이 보험범죄를 발견한 경우 수사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에 적시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의 의료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사 중인 보험사기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 현지조사 필요성 인식 부재, 현지조사 동시 추진 시 수사업무진행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수사기관이 있음.

- 수사 후 보험범죄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의료인 및 보험가입자에 대해 사기죄 등 형사처벌만을 실시함.

- 보험사기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와 함께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 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른 형사처벌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⁶⁾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수사만 이뤄졌을 때 보다 보험사기 사전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기 관련 의료기관 수사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의료인 및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이루어지면 건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kiri

6)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의료법·약사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 의료업정지처분 등.



Cash Balance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전성주 연구위원,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 최근 DC형 퇴직연금보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 보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업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Cash Balance(CB)형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임. 미국의 CB형 퇴직연금은 2013년 기준 전체 DB형 퇴직연금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2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CB형 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해지고 있음.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의 퇴직연금 부채를 경감시켜 사용자 부담을 절감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음. 이와 같이 DC형 제도와 DB형 제도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CB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은퇴 후 소득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여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보다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최근 입법 조사처가 발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보고서에 의하면 DC형 퇴직연금의 기대 운용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DB형 퇴직연금에 비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일 수 있으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경우 운영 리스크의 증가로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였음.

■ 그러나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 보장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기업에 있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상승률이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크게 상회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증가 수준이 너무 높아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

- 또한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권을 보장할 수 없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됨.

■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퇴직연금, 즉 Cash Balance형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임.

-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각 근로자들에게 가상의 계좌를 설정하여 매년 연봉에 따른 급여부담액을 적립해주고 적립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을 더해 줌.
-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연금자산을 일괄 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시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매년 근로자별로 가상의 계좌를 설정하고 정해진 급여부담액과 이자수익 등 사업주 기여분을 적립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음.
- 다만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이자율 지표 혹은 고정이자율을 적립금에 적용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줌으로써 퇴직자산의 운용위험을 기업이 부담함.
- 이러한 가상계좌는 장부상으로만 기록되고 각 근로자들의 연금액을 통합한 총 연금자산은 사업주에 의해 보수적인 기금운용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보호됨.

〈표 1〉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비교

구분	DB형 제도	CB형 제도	DC형 제도
퇴직 시 받을 금액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매년 평균임금 1개월분 적립금 누계 + 금리수익	매년 평균임금 1개월분 적립금 누계 ± 운용수익
기업 부담금	자산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자산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확정, 개인 추가납입 가능
적립금 운용책임	기업이 모든 책임	기업이 모든 책임	근로자 개인 책임
적립금 운용방법	기업이 자산 전체를 일괄 운용	기업이 자산 전체를 일괄 운용	개인이 자산을 운용
이율	고정	고정 혹은 시장금리 연동	운용수익 연동
계좌관리	일괄관리	가상계좌 관리	종업원별 잔고 관리
통산성(이동성)	곤란	가능	가능
투자교육	불필요	불필요	필요

자료: 박준범(2015),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Cash Balance Plan 도입방안 연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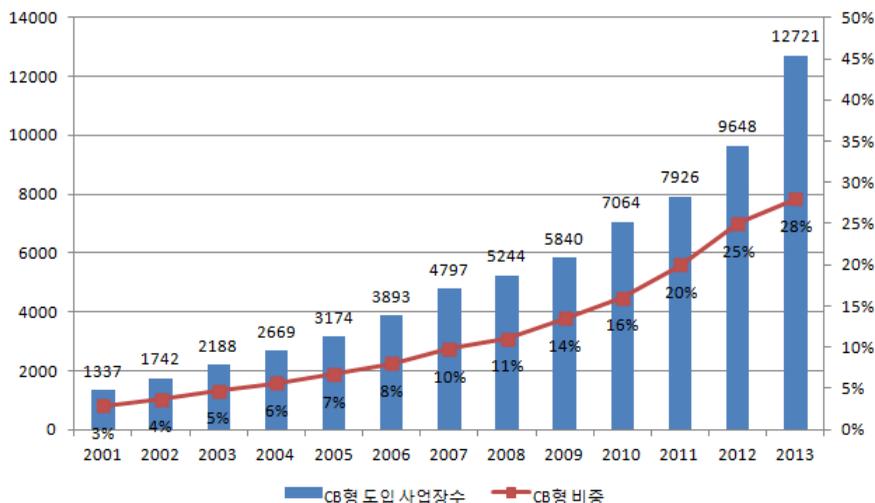
■ 1985년 Bank of America에 의해 처음 도입된 미국의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2013년 기준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28%를 차지하는 등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 〈그림 1〉에서 보면 2013년 미국의 C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년도에 비해 32%

증가한 12,721개에 달하고 있음.

- CB형 퇴직연금의 총 자산 규모는 9천 52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에는 1조 달러 이상의 자산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전체 DB형 퇴직연금 가운데 CB형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9%에서 2013년 28%로 크게 증가함.

〈그림 1〉 미국의 CB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이



자료: Kravitz(2015), "2015 National Cash Balance Research Report".

■ 일본에서도 2002년 4월 확정급부기업연금법에 따라 CB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CB형 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해지고 있음.

- 199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이후 퇴직연금 운용손실 확대에 따른 기업의 퇴직연금 부채 부담 증가와 200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연금자산 재평가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채무 급증에 따라 DB형 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짐.
-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마쓰시다 전기(Panasonic)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퇴직급여 부채의 회계적 부담에 민감한 히타치, NEC, 도시바, 미쯔비시 전기, 일본전력 등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표 2>의 2014년 일본기업 연금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DB형 제도 가입기업 중 CB형 제도 가입기업이 3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0인 이상 대기업의 CB형 제도 가입률은 41.3%에 이르고 있음.

〈표 2〉 2014년 일본 DB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기업의 CB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률

구분	근로자 500인 미만	근로자 500인 이상	전체
기업 가입률	12.5%	41.3%	37.9%

자료: 日本經濟団体連合會(2015. 3), 「2014年9月度 退職金・年金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 2015. 4. 28.

■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저금리 환경 하에 기업의 퇴직연금 부채를 경감시켜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따르는 사용자 부담을 절감시켜 줄 수 있음.

- DB형 제도의 경우 퇴직 후 연금수준이 사전적으로 정의되는데 반해 CB형 제도의 경우 매년 연봉의 일정 비율과 그 수익률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됨.
- 적립금 운용 수익률 또한 낮은 수준의 고정이자율 혹은 국채이자율 등 시장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DB형에 비해 기업의 금리리스크 경감이 가능하고 미래 퇴직연금 부채에 대한 부담 예측을 용이하게 함.

■ 또한, CB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근로자 입장에서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르는 직접 투자운용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며 총 연금의 지급액을 기업으로부터 보증받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자산이 줄어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됨.
- 또한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CB형 퇴직연금 계좌잔고는 가상계좌에 의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금으로 전환되거나 개인은퇴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쉽게 이관될 수 있음.
 - 평균 근속년수가 짧고 이직이 많은 직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면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 수준이 결정되는 DB형 제도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DC형 제도와 DB형 제도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CB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kiri](#)

4. 보험경영

- | | |
|--------------------------------------|---------|
| 1. 2014년 보험산업 회고(I): 수입·원수보험료 | 김진익 최 원 |
| 2. 2014년 보험산업 회고(II): 제도 변화 | 변혜원 |
| 3. 2014년 보험산업 회고(III): 수익성 | 조영현 |
| 4. 2014년 보험산업 회고(IV): 상품 | 김세중 |
| 5. 2014년 보험산업 회고(V): 재무건전성 | 김해식 |
| 6. 빅데이터와 가격차별: 보험산업에 주는 함의 | 임 준 정원석 |
| 7.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채널 활용 방안 | 최창희 |
| 8.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 이소양 |
| 9. 보험이해력 제고 사례 검토: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 변혜원 이해랑 |
| 10. 행동경제학 개념의 보험 적용 사례와 활용 방안 | 오승연 |
| 11. 세계 보험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 이소양 |
| 12.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김세중 |
| 13.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 추이 | 조영현 |
| 14. 사이버보험 동향 및 사이버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변혜원 |
| 15.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 김세중 |
| 16. 중국 재보험시장 발전 현황과 전망 | 이소양 |
| 17.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 정성희 이정택 |



2014년 보험산업 회고(I): 수입·원수보험료

김진익 수석담당역, 최 원 선임연구원

요약

- 2014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와 관련한 특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저축성 보험의 경우 2012년 세계개편안에 따른 기저효과로 역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저축성보험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셋째, 사적연금 부문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이 고성장이었으나 개인연금은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넷째, 계속해서 저조한 원수 보험료 실적을 기록하였던 자동차보험이 보험료 인상 등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음.
- 2014년 전체적인 보험료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개편안,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 변화의 영향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는 보험료 규모의 양적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수익의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보험산업의 수익성 개선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양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요 발굴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임.

1. 저축성보험, 1) 기저효과 지속으로 역성장 시현

- 2014년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로 역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이나, 제도 변화로 인한 신규수요의 급격한 변동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2012년 발표된 세계개편안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4년 2월까지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났으며, 이의 영향으로 2014년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손해보험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2011년까지 상품 경쟁력이 유지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수요 위축세를 보여 왔으며, 그동안의 성장 여력 약화로 2014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임.

1) 생명보험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손해보험의 장기저축성보험을 의미함.

-
- 그러나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었던 저축성보험 신규수요가 2014년 하반기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혜택의 장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2.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보장성보험²⁾ 판매 확대 노력 지속

■ 저축성보험으로의 쓸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보장성보험 증가율이 개선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2008년 이후 도래한 저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역마진 우려가 적은 보장성 보험 판매를 확대해 왔으며, 2012년에 플러스 성장 전환에 성공하고 2013년과 2014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감.
- 손해보험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던 신규수요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두 자릿수의 높은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손해보험 장기 운전자보험의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보장범위 확대와 같은 보험회사들의 상품개발 노력도 계속되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2014년 하반기 들어 판매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경기회복 지연으로 대부분 종목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임.

3. 사적연금 부문에서 보험회사의 역할

■ 개인연금³⁾의 경우 그동안 지속된 신규수요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에 따른 수요확대 효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2014년 전체 보험료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 또한, 2013년부터 대면채널의 연금저축 예정신계약비가 생명보험회사 300%, 손해보험회사 500%에서 생·손보 모두 300%로 인하여 손해보험 대면채널의 연금저축보험 판매 유인이 줄어들⁴⁾.

2)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을 의미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종목을 의미함.

3)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가운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의미함.

4)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 참조.

- 2014년 퇴직연금 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임.
 - 정부는 2015년 말까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기준책임준비금에 대해 최소한 70%를 적립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퇴직연금 보험료 유입이 늘어나고 있음.
 -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0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데다 기타 공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도 이어지고 있어 2014년 4/4분기에도 퇴직연금 보험료 확대가 예상됨.

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실적 개선

- 지속적으로 보험료 실적이 악화되었던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4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보험료 인상과 대물담보 가입금액 확대 추세와 같은 긍정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와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증가로 물량요인과 가격요인⁵⁾이 모두 악화되었고, 2011년부터 부진한 원수보험료 실적을 보였음.
 - 그러나 2014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데다 4월부터 중·소형사를 시작으로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회복세가 나타남.
 - 특히,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세가 자동차보험료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차 중심의 고가 자동차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임.

5. 요약 및 시사점

- 2014년 전체 보험산업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산업과 손해보험 산업 모두 전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부진한 수입·원수보험료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나 제도적 요인에 의한 저축성보험 역성장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나타낼 것임.
 - 손해보험의 경우도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의 성장 여력이 약화된 데다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일반손해보험까지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제한적인 회복세에 머무를 것임.

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크게 물량요인인 자동차 대수와 가격요인인 보험료 수준에 의하여 결정됨.

■ 과거 보험산업과 관련한 제도 변화⁶⁾의 영향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축소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저축성보험과 관련한 급격한 신규수요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후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1월부터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제도 개선 직전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한 반면 제도 개선 직후에는 신규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2011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수요가 늘어났으나 최근 이러한 수요확대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
- 이처럼 제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보험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음.

■ 앞으로는 보험료 규모의 양적 성장에 의존하기보다 수익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노력이 강조될 것이며, 새로운 수요 발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단기간 내에 과거와 같은 높은 보험료 증가율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보험료 규모의 양적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수익의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보험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인 비용구조 개선, 사업비율 관리, 보험회사 전반에 걸친 업무절차의 비용 효율성 개선이 요구됨.
- 고령층 대상 서비스 확대, 해외시장 진출, 다양한 종류의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 보장 등의 신성장 발굴 노력도 필요함. [kiri](#)

6) 2011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 2012년 세제개편안 발표, 201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이 있음.



2014년 보험산업 회고(Ⅱ): 제도 변화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2014년에 있었던 보험 관련 제도 변화는 크게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후소득 및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2014년에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 및 신뢰 제고를 위해 모집질서 건전화¹⁾, 보험상품 공시 강화 및 판매채널 다변화, 보험사기 및 보상행위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된 제도 변화들이 있었음.

- 우선 영업행위 건전화를 위해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500인 이상)의 경영공시를 강화함.(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4년 4월부터 시행)²⁾
-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 등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공시를 개선하였으며, 단체보험 설명의무를 강화하였음.
- 제품 및 서비스 연계보험상품을 허용하였으며,³⁾ 이와 관련하여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동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⁴⁾
-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정의 및 제재 관련 내용이 보험업법에 포함되고,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임.

1)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98조를 참조.

2)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를 참조.

3) 휴대폰 보험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중고차 등과 연계된 보험상품 제공이 가능해짐.

4)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참조.

■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2014년 4월)에 따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꺼기)에 대한 규제와 보험광고 규제가 강화되었으며,⁵⁾ 승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함(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4년 4월부터 시행).⁶⁾

■ 과거 국내 보험산업의 공급자 또는 판매자 중심의 영업을 통한 양적성장이 소비자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낮은 이해도나 신뢰도의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과정의 건전화, 소비자의 이해도 개선을 위한 조치와 보상행위 관련 규제강화가 이루어짐.

-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 강화는 판매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보험상품 공시 개선은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하도록 도울 것이며,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원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보험금 지급 및 산정 관련 분쟁이 소비자 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나 소비자에게 상품권유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 예외 사례 제공 등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다양한 상품 개발과 보험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위험률 및 이율 결정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힘.⁷⁾

- 위험률 중 안전할증률 범위를 기존 30%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 유병자 등과 같이 위험률 예측이 어려운 집단을 위한 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할 예정임.
 - 안전할증률 범위 확대는 보험회사가 사후 위험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보장하기 어려웠던 위험 또는 집단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통계를 집적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위험률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임.
- 예정이율 자율화를 통하여 보험회사들이 차별화된 보험료를 산출하고 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도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임.⁸⁾

5)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를 참조.

6)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참조.

7) 금융위원회(2014),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 참조.

8) 현재 공시이율 조정률 가감한도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를 참조.

- 보험료적립금 계산에 사용되는 표준이율 산출 방식도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⁹⁾
 -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와 표준이율 산출 방식 변경은 회사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보험 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는 2013년 4월 금리 과당경쟁을 경감시키기 위해 20%에서 10%로 축소되었으나, 상품 간 경쟁을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2014년 7월에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노후소득 및 사적연금 활성화 를 위해 새로운 개인연금상품 도입을 촉진할 예정임.
- 연금의 일정 부분은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 부분은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비자에게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그리고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 등 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은 적고 상대적으로 연금수령액이 많은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개발하도록 함.
- 아울러 2014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중 소기업 퇴직연금지급제도 및 퇴직연금 재정지원, DC형 연금 및 IRP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 등은 2015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등은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5년부터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하여, 동 기금에 참여하는 사업주에 대해 3년 동안 재정지원을 할 예정임.
 - 아울러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여 2022년에는 전면 의무 화할 예정이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이 밖에도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으며(2015년 1월 시행), 2014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금자산운용규제가 완 화됨(2015년 시행).

9) 기존 표준이율 산출식은 $3.5\% + \text{안전계수} \times \text{시장금리}$ 였으나, 변경된 산출식은 이율구간별 안전계수를 제시하여 시장금리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함. 자세한 산출식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4조를 참조.

■ 한편 2014년 7월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강화,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 자기자본제도 개선, 보험부채평가 개선 등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이 마련됨.¹⁰⁾

- 리스크 측정 시 사용하는 통계적 신뢰수준을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하였는데, 금리리스크는 2014년에, 신용리스크는 2015년에 50% 2016년에 100% 반영하여 상향조정되었음.
 - 개별리스크 간의 상관계수를 정교화 하였으며, 운영리스크 개선은 2016년에 이루어질 예정임.
- 보험회사의 자회사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연결RBC 제도를 15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는 2015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에 시행할 예정임.
-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해서는 2018년 도입될 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제도 개선도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시행할 예정

■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 적용은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은 단계적 조치들을 제시하여 보험회사들이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의의를 가짐.

- IFRS4 2단계가 적용되면 결산시점마다 위험률, 할인율 등을 재산출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하므로 보험부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보험수익 인식방법도 달라져 보험수익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하반기에는 자산운용 대상 및 여력을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과 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자산운용규제 완화가 이루어짐.

- 보험회사의 국내 사모전문투자회사(PEF)의 외화표시 지분 투자가 허용되었으며,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¹¹⁾ 중 이연법인세는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¹²⁾
- 보험회사가 해외 현지 일반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자회사 소유절차를 완화함.¹³⁾
- 아울러 보험회사가 사모전문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때 신고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벤

1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7. 3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11)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회사가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함.

12)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를 참조.

13) 보험업법 제115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를 참조.

치 투자조합 등의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였음.¹⁴⁾

- 경제 저성장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용효율화와 보유자산의 효과적 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2014년 보험 관련 제도 변화는 보험회사의 위험률 및 이율 결정 관련 자율성 확대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강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금융감독의 흐름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kiri](#)

14) 보험업법 제106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15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를 참조.



2014년 보험산업 회고(Ⅲ): 수익성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2014년 들어 반등하였음. 이는 사업비율 개선에 의해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되었고, 투자영업비용 절감에 의해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금리 하락 및 재무건전성 강화로 인해 이러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기 쉽지 않은 환경임.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투자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영업 측면에서 생명보험회사는 비용절감을 통하여 사업비율을 더욱 개선시키고, 보장성 보험의 언더라이팅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보험금지급률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손해보험회사는 장기손해보험의 손해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영업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험회사는 향후 IFRS 4 Phase 2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적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확대시킴으로써 이익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2014년에 완만하게 개선됨.

- 생명보험의 2014년 3/4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은 3.53%로서 FY2013(CY2013 2/4~4/4) 영업이익률 2.79%에 비해 0.74%p 상승함.
- 손해보험의 2014년 3/4분기까지 영업이익률도 FY2013에 비해 0.66%p 상승한 2.85%를 기록함.
- 2014년 3/4분기까지 보험산업의 분기 평균 ROE는 2.13%로서 2013년 3/4분기까지의 분기 평균 ROE 1.83%에 비해 0.3%p 높음.
 - 2014년 3/4분기까지 보험산업의 분기 평균 ROE는 FY2013의 분기 평균 ROE 1.63%와 비교하더라도 0.5%p 높음.

〈표 1〉 보험산업 수익성

구분	FY 2009	FY 2010	FY 2011	FY 2012	2013 ¹⁾				2014			
					1/4	2/4	3/4	4/4	1/4	2/4	3/4	
ROE	생명보험	9.9	12.4	8.4	6.6	1.4	1.6	1.8	0.7	1.9	2.0	2.0
	손해보험	13.9	11.3	16.3	11.6	1.9	2.9	2.4	1.5	2.6	3.0	2.2
	합계	10.9	12.1	10.2	7.8	1.5	2.0	2.0	0.9	2.1	2.3	2.0
영업 이익률 ²⁾	생명보험	-	5.14	4.27	2.85	-	2.8	2.96	2.79	3.15	3.38	3.53
	손해보험	-	3.84	3.47	2.74	-	2.29	2.29	2.19	2.31	2.86	2.85

주: 1) 2013년은 2014년과의 비교를 위해 회계연도(4월~12월)가 아닌 역년(1월~12월)을 이용함.

2) 분기별 영업이익률은 회계연도 개시 후 각 분기 말까지 누적하여 계산된 수치임.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는 FY2013 대비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개선되었기 때문인데, 생명보험산업은 보험영업이익 증가가, 손해보험산업은 투자영업이익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음.

- 생명보험산업은 보험영업이익 증가율(10.1%)이 투자영업이익 증가율(6.4%)에 비해 3.7%p 높았음.
- 반면, 손해보험산업은 투자영업이익 증가율(12.3%)이 보험영업이익 증가율(11.3%)에 비해 1%p 높았음.

〈표 2〉 보험산업 영업이익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3	2014. 1~2014. 9	증가액	증가율	
생보	보험손익	12,812	14,101	1,289	10.1
	투자손익	15,076	16,037	961	6.4
	책임준비금전입액	27,461	28,987	1,526	5.6
	영업이익	427	1,151	724	169.7
손보	보험영업이익	-1,578	-1,399	179	11.3
	투자영업이익	3,752	4,214	463	12.3
	영업이익	2,174	2,815	641	29.5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된 이유를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주로 사업비율 개선에 의해 보험영업수지가 증가되었으며, 종목별로는 무배당 저축성 보험의 보험영업수지 개선이 두드러짐.

- 현재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배당 보험은 사업비율(22.1%→20.4%)과 보험금지급률(51.2%→50.5%)이 모두 개선되었음.
 - 보험금지급률의 경우 최근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개선(50.2%→48.8%)이

두드러짐.

- 무배당 저축성 보험의 보험수지차 개선은 단순히 수입보험료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율 절감(13.9%→11.8%)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음.

〈표 3〉 생명보험산업 보험영업

(단위: 십억 원, %)

구분	보험수지차			사업비율			보험금지급률			
	FY2013	2014. 1~9	증감	FY2013	2014. 1~9	증감	FY2013	2014. 1~9	증감	
유배당	보장성	-1,365	-1,380	-15	52.0	63.6	11.5	610.2	759.6	149.3
	저축성	1,733	947	-786	10.0	9.7	-0.3	61.0	74.0	13.0
	계	368	-433	-801	11.6	11.4	-0.3	82.5	95.9	13.4
무배당	보장성	4,689	5,322	633	30.4	29.9	-0.5	50.2	48.8	-1.3
	저축성	8,272	9,827	1,554	13.9	11.8	-2.1	52.2	52.1	-0.1
	계	12,961	15,149	2,188	22.1	20.4	-1.6	51.2	50.5	-0.7
합계	13,329	14,716	1,387	20.9	19.5	-1.4	54.8	55.2	0.4	

주: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보험수지차는 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실제사업비,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임.
 자료: INSIS; 보험개발원.

■ 손해보험산업도 사업비율 개선이 보험영업이익 제고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경과손해율은 FY2013에 비해 0.16%p 악화되었으나, 순사업비율이 FY2013에 비해 0.81%p 개선됨으로써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됨.

〈표 4〉 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

(단위: 십억 원, %, %p)

구분	FY2013	2014. 1~2014. 9	증감
경과손해율	84.05	84.21	0.16
발생손해액	41,593	42,871	1278
경과보험료	49,484	50,907	1423
순사업비율	19.13	18.32	-0.81
순사업비	9,485	9,387	-98
보유보험료	49,574	51,248	1674
합산비율	103.19	102.53	-0.66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투자영업이익 개선의 주요인은 생·손보산업 모두 투자영업비용 감소로 볼 수 있음.

- 운용자산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투자영업수익 증가는 미미하였으나 투자영업비용 감소로 투자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증가함.
- 보험산업은 FY2013 대비 투자영업비용이 1조 3,020억 원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 규모가 1조 4,230억 원 증가함.
 - 투자영업비용은 재산관리비, 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용관리와 투자리스크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음.

〈표 5〉 보험산업 투자영업수지

(단위: 십억 원)

구분		FY2013	2014. 1~2014. 9	증감
생보	수익	18,473	18,589	116
	비용	3,397	2,552	-845
	이익	15,076	16,037	961
손보	수익	5,276	5,281	5
	비용	1,524	1,067	-457
	이익	3,752	4,214	462
전체	수익	23,749	23,870	121
	비용	4,921	3,619	-1,302
	이익	18,828	20,251	1,423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2014년 9월까지 대규모 일회성 순이익이 발생하여 보험산업 전체 이익을 증가시켰으나, 삼성생명을 제외한 대다수 회사는 오히려 일회성 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상장보험회사의 일회성 수익은 7,373억 원, 일회성 비용은 4,955억 원으로 일회성 순이익은 2,418억 원 규모로 추산됨.¹⁾
 - 주요 일회성 수익은 유가증권 처분이익, 공정위 과징금 환입, 계열사 지분 처분익 등이며, 주요 일회성 비용은 구조조정 비용, 고액사고 등임.
 - 이러한 일회성 순이익의 규모는 FY2013대비 보험산업 영업이익 증가분 1조 3,650억 원의 17.7%에 해당하는 규모²⁾

1) 장효선·신동오(2014, 2015), 삼성증권 보험산업 분석보고서 참조.

2) 삼성생명 이외의 회사 대부분이 일회성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비상장보험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일회성 순이익 규모는

- 삼성생명의 경우 2/4분기에 삼성물산 주식처분의 4,768억 원이 발생³⁾하여 대규모 일회성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적지 않은 규모의 일회성 손실 발생하였음.
 - 삼성생명을 제외할 경우 주요 상장보험회사의 일회성 손실은 2,122억 원으로 추산됨.

■ 다만, 2014년도 4/4분기에는 대규모 일회성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어, 동분기 이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2014년도 4/4분기 주요 상장보험회사의 일회성 수익은 2,603억 원, 일회성 비용은 5,622억 원으로 일회성 손실은 3,019억 원 규모로 추산됨.⁴⁾
 - 변액보증준비금 증가, IBNR 추가적립, 구조조정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대규모로 발생함.

■ 향후 투자환경 악화와 재무건전성 강화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 추이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장기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투자수익 제고가 어려운 환경
 - 국고채 10년 금리: 3.086%(2014년 8월 평균) → 2.415%(2014년 1월 평균)
 - 금리 하락시 매도가능증권을 매도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자본이 감소하고 재투자시 이자수익이 낮아짐.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으로 수익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된 정량평가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본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음.
 -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비용 발생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유상증자를 할 경우 ROE가 하락함.
- 2014년에 실시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효과는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위의 두 가지 악영향에 비해 작을 것으로 판단됨.

■ 수익성 악화 환경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투자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도의 투자영업이익 개선도 투자비용(재산관리비, 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등) 절감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일회성 순이익이 보험산업 영업이익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0. 31) 참조.

4) 장효선·신동오(2014, 2015) 참조.

이루어졌음.

■ 또한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업비율과 보험금지급률을 더욱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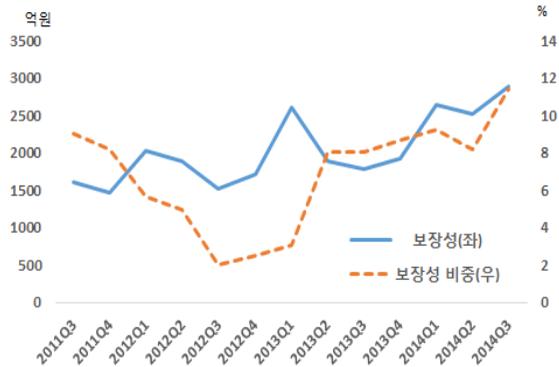
- 사업비율이 2013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2013년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상태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율: 9.76%(FY2011) → 8.22%(FY2012) → 10.46%(FY2013) → 10.07%(2014. 9)
 - 특히, 최근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율을 더욱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2014년 9월 기준 보험금지급률은 55.2%로써 FY2013(54.8%)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표 3〉 참조).
 - 효력상실해약률은 2014년 9월 기준 6.94%로써 FY2013(7.16%)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므로, 해약 증가에 의해 보험금지급률이 높아진 것은 아님.
 - 최근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배당 보험은 보험금지급률이 낮아지고 있음.
- 보험금지급률의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 판매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지급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최근 판매비중을 높이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언더라이팅 능력도 더욱 제고시켜야 함.

〈그림 1〉 생보사 사업비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2〉 생보사 보장성 초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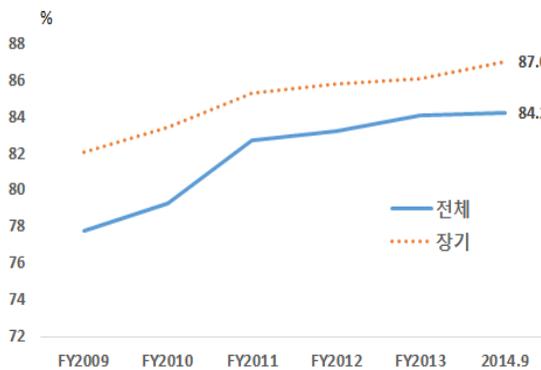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손해보험회사는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을 개선시킴으로써 보험영업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9월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경과손해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84.2%임.
 - 비중이 높은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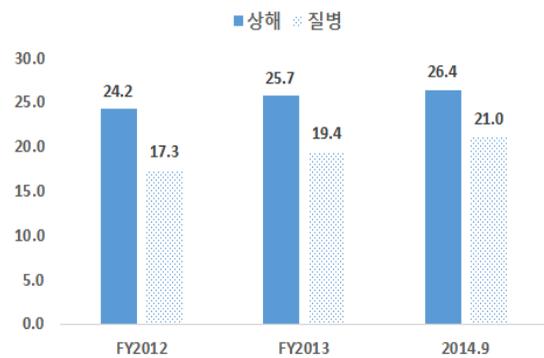
- 자동차와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은 2014년 들어 소폭 개선되었음.
- 특히, 중소기업의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은 100%를 상회하는 수준⁵⁾으로 언더라이팅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
- 최근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장기 상해, 질병 보험의 손해율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개선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3〉 손보사 경과손해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4〉 손보사 장기 상해, 질병 보험 비중



주: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한편, 보험회사는 향후 IFRS 4 Phase 2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적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익의 질을 제고시켜야 함.

- 본고는 기존 회계기준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단기적인 수익성만을 분석한 점이 한계임.
 -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계약 초기에 손익이 편중되어 인식되므로 재무제표에 장기적 수익성이 드러나지 못함.
- IFRS 4 Phase 2가 시행되면 손익이 보험기간동안 고르게 인식되므로 보험기간 전체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확대해야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 [Kiri](#)

5) 조정삼·안경희(2014. 12), 손해보험, KIS Industry Outlook 참조.



2014년 보험산업 회고(Ⅳ): 상품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2014년 생명보험은 저금리 환경에도 수익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전통적인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에 특화된 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SI, Simplified Issue Insurance) 등의 상품을 개발함. 또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니즈 확대에 따라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저금리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변액연금 상품 개발도 이루어짐. 한편 온라인 채널 확대에 따라 생존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 전용보험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부문에서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노후 질병 위험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어린이 보험상품도 적극적으로 판매함. 또한 소비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자동차보험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신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음. 최근 보험회사의 상품 전략은 고령화 및 저금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한발 더 나아가 저성장·저금리 기조 고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상품포트폴리오 조정 및 상품개발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모두 고령화와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확대하였음.

- 생명보험은 종신보험 등 전통적인 보장성보험 상품과 함께 고령층 대상 건강보험 상품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에 대응한 연금보험, 온라인 채널 전용보험 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임.
- 손해보험 또한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노후의료 수요에 대비한 건강보험상품과 장기간병보험, 어린이보험 상품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의 상품과 차별화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발함.
- 본고에서는 2014년 한해 동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측면에서의 성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 생명보험은 저금리 환경에도 수익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전통적인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에 특화된 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SI, Simplified Issue Insurance) 등의 상품을 개발함.

- 생명보험 업계는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신보험, CI보험 등 전통적인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였으며,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장과 노후 저축 기능을 혼합한 연금전환 종신보험상품이 주류를 이룸.
- 건강보험의 경우 노인전용 암보험, 계속보장 암보험 등 고령층에 특화된 신상품 출시가 활발한 가운데, 고령층과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 상품 개발이 두드러짐.
- 간편심사보험 상품은 전통적인 가입심사(Underwriting)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으로 가입심사를 대체하는 보험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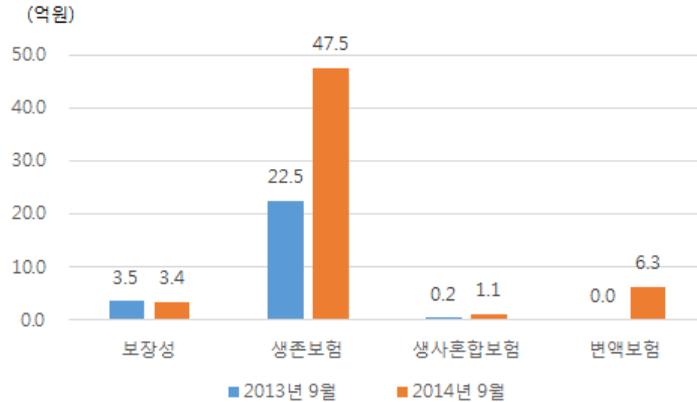
■ 또한 생명보험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니즈 확대에 따라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저금리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변액연금 상품 개발도 이루어짐.

- 연금보험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신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보험료 납입방식을 유연화하고 해지 환급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신상품이 개발됨.
 -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4년 우수 금융 신상품 시상식에서 ‘연내 자유납’ 기능을 부가한 연금 상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두 건이 우수 신상품으로 선정됨.
- 저금리 지속에 따른 공시이율 하락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액연금의 경우에도 장기 유지 시 혜택을 주거나 젊은 층에 특화된 신상품 개발이 이루어짐.

■ 한편 온라인 채널 확대에 따라 연금보험과 같은 생존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 전용보험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는 등 생명보험회사의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 등에서 온라인 전용보험 상품이 출시됨.
- 최근에는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보험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모바일 채널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의 확대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온라인 채널이 전체 초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주요 판매채널로 부상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1) 생명보험 온라인 채널(C/M) 초회보험료 추이



주: 대리점 C/M채널을 포함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현황통계.

■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부문에서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노후 질병 위험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어린이 보험상품도 적극적으로 판매함.

- 장기보험 중 질병·상해보험은 수명연장에 대응하여 보장기간을 100세에서 110세까지 연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고령자에 특화된 실버암보험 상품과 고령자 및 유병자의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건강보험 출시도 이루어지고 있음.
-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후 질병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치매 등으로 인한 간병자금을 보장하는 장기간병보험 상품 개발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자녀 가정 증가의 영향으로 어린이보험 상품도 적극적으로 판매함.

■ 또한 소비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자동차보험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신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정된 요일에 따라 보장수준이 달라지도록 설계가 가능하고 부부운전자에 특화된 특약이 제공되는 등 소비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보장내용을 차등화하는 맞춤형 상품 개발로 기존 상품과의 차별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운전자보험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면서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운전자보험이 출시되고 기존 상품에 비해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들도 등장함.
- 2014년 9월 기준 운전자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60%대로, 80% 수준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질

병·상해보험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자보험 시장의 상품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보험회사의 상품 전략은 고령화 및 저금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저성장·저금리 기조 고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상품포트폴리오 조정 및 상품개발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고연령 특화 보험, 간편심사 보험 등의 상품을 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보장성 보험 강화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고령화와 함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상품전략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새로운 리스크를 발굴하고 신상품을 개발하는 핵심역량의 강화가 요구됨.
- 한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화 및 대용량 데이터의 집적과 활용 등의 환경변화를 어떻게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전략에 내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임. [kiri](#)



2014년 보험산업 회고(V): 재무건전성

김해식 연구위원

요약

■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 정량적인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경영의사결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금융기업의 부실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이렇게 정성적인 과정을 살피는 규제의 변화는 보험회사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구는 물론이고 금융당국에 규제 마련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 규제 마련 과정이 투명해지려면 이해당사자와 금융당국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 그동안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 로드맵이 담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시가”와 “과정”은 국내 보험산업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그렇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끈기가 가장 필요한 도전이 될 것임.

■ 금융당국은 2014년 7월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여 보험회사의 요구자본과 가용자본, 그리고 위험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함.

- 종합로드맵은 2018년까지 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서 요구자본량을 늘리고,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IFRS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후 가용자본을 산출한다는 정량평가 강화 계획을 제시함.
- 또한 보험회사 스스로 위험 및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정성평가 강화 계획을 제시함.

■ 재무건전성 규제 로드맵은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시가” 정보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결과”를 보는 정량평가를 “과정”을 보는 정성평가와 병행함으로써 국제기준의 최근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 국제감독기준이 요구하는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에 대하여 2014년 로드맵은 시가정보 생산기준을 IFRS로 삼고 RBC 위험계수 상향을 담은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제시함.

-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규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재 달성한 자본량보다 그 자본량이 보험회사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달성됐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4년 로드맵이 그 “과정”에 주목한 점은 감독철학의 일대 변화를 의미함.

■ 그러나 재무건전성 로드맵이 현실에 안착하려면 IFRS에 따라 생산된 시가정보 활용 시 제약사항과 기존의 규제 관행이 가진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청산은 물론 계속기업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IFRS 회계정보를 재무건전성 감독에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임.
- 그런데 IFRS 시가평가 최초 적용에서 기존 보유계약을 평가할 때 예상되는 생명보험회사 RBC비율의 급락 가능성과 같이 새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음.
- 또한 시가평가나 위험관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규정에 익숙한 국내 보험산업에는 아직 생소한 방식이기에 기존의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유혹이 클 수 있으며, 이는 모범규준의 규정화 사례처럼 과정 대신 결과를 보는 정량평가 틀로 다시 돌아갈 우려가 있음.

■ 2014년 재무건전성 로드맵이 담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시가”와 “과정”은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을 가진 새로운 시도여서 끈기가 가장 필요한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임.

- 1997년 외환위기 직후 EU식 지급여력비율이 1999년 13%에 불과했던 생명보험은 3년 만에 100%를 넘어섰고 5년 만에 200%를 초과하여 안정권에 들어섰는데,¹⁾ 이는 금융당국 주도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서 얻은 성과였음.
-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의 ‘시가평가 및 위험관리’ 과정에 대한 감독은 모두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성적인 요소를 살핀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규제 강화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제도 시행에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
-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기존의 금융당국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전제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를 마련하는 절차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kiri](#)

1) 위험계수 100% 적용으로 환산한 지급여력비율. 금융감독원(2006. 9. 19),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변동원인분석” 보도참고자료.



빅데이터와 가격차별: 보험산업에 주는 함의

임 준 연구위원,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본고에서는 경제학 이론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활용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음.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평균위험률에 근거해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고위험군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저위험군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역선택이 발생함. 만약 빅데이터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의 위험도를 파악하여 세분화된 가격차별을 할 수 있게 되면 저위험군 소비자의 보험수요량이 증가함으로써 보험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함. 한편, 개별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면,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이 저위험군 고객을 끌어가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빅데이터가 화두가 되면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사례가 소개되고 있음.

● 그런데 빅데이터 관련 대부분의 기사가 활용사례를¹⁾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빅데이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한 경우는 매우 드뭄.

■ 본고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경제학 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함.

● 경제학 이론 가운데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이론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활용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시장 확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함.

■ 가격차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가치 기반 가격차별(Value-based Price Discrimin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 기반 가격차별(Risk-based Price Discrimination)임.

1) 고객 맞춤 마케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들로는 Amazon, Target, Walmart 등이 있음.

- 가치 기반 가격차별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에 따라 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개의 가격차별이 이 범주에 해당됨.
- 이에 반해 위험 기반 가격차별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따른 가격차별로, 보험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음.
- 두 경우 모두 가격차별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가격차별을 할 경우에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지만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설명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

■ 먼저, 가치 기반 가격차별의 경우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파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커서 기업이 단 하나의 가격만 책정할 수 있다고 가정

- 지불의사가 낮은 소비자에게 추가로 한 단위를 더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게 되면 기존 소비자에게도 모두 낮아진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인하를 통한 시장 확대가 어려움.
- 그러나 가격차별이 가능해져 기존 소비자에게는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불의사가 낮은 소비자에게만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가격차별이 불가능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게 됨.²⁾
- 빅데이터를 통해 과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분화된 가격차별이 가능해지면, 지불의사가 낮은 소비자의 수요가 새로이 창출됨.

■ 위험 기반 가격차별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소비자와 사고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

- 이 때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서 평균위험률에 근거해 단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고위험군의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만 저위험군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함.
-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그룹의 평균위험률은 모든 소비자의 평균위험률보다 상승하게 되고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저위험군 소비자의 수요량은 더욱 감소하게 됨.³⁾
- 위험 기반 가격차별의 경우 빅데이터로 인해 세분화된 가격차별이 가능해지면, 위험도가 낮은 소비자의 보험수요량이 증가하게 됨.

2) 수치 사례를 통한 보다 엄밀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부록 1] 참조.

3) 수치 사례를 통한 보다 엄밀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부록 2] 참조.

■ 최근 보험산업의 경우 여러 방면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Discovery Life의 Vitality 프로그램과 텔레매틱스 기반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음.

- Discovery Life사는 고객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경우 자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판매
- 한편, 차량에 설치된 텔레매틱스를 통해 고객의 운전행태 관련 정보가 보험회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이에 기반하여 보험료가 책정되는 자동차보험상품 출시

■ Discovery Life 사례나 텔레매틱스와 같은 빅데이터 활용 보험상품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보급되어 있으나 향후 보험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분화된 가격차별이 가능해지면, ① 보험산업 전체와 ② 개별 보험회사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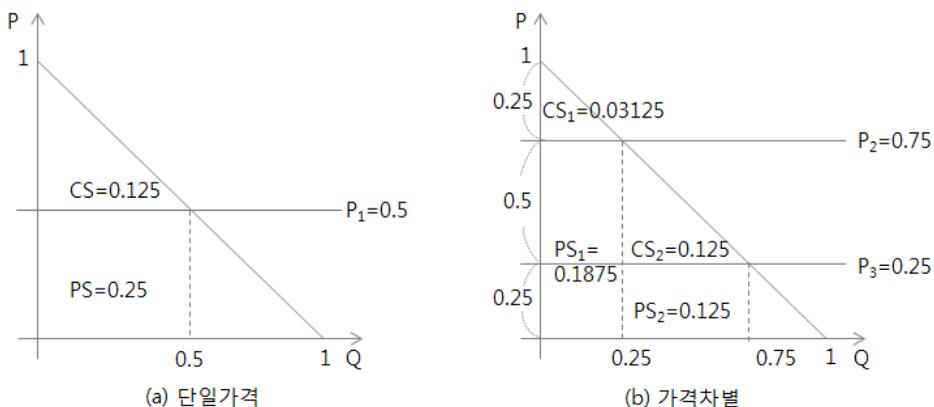
-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격차별을 통해 저위험군 소비자의 보험수요량이 증가함으로써 보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개별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이 저위험군 고객을 끌어 가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kiri](#)

[부록 1] 가치 기반 가격차별의 경제적 효과

■ 가격차별이 가능할 경우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가 낮은 소비자도 거래에 참여 할 수 있음.

- 지불용의에 따른 가격차별이 불가능한 단일가격의 경우 균형가격은 0.5가 되고 <그림 1>의 패널 (a)에서 보듯이 시장수요곡선의 상단에 위치(또는 Q축의 원점에서 0.5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들 만 거래에 참여하게 됨.
 - 이 경우 나머지 0.5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생산자의 한계생산비용(여기에서는 0으로 가정)보다 높은 수준의 지불용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소비에 참여하지 못함.
 - 반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지불용의가 낮은 소비자에게도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에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하나의 가격만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지불용의가 낮은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재화를 판매할 수 없음.
- 지불용의에 따른 가격차별이 가능한 경우 <그림 1>의 패널 (b)에서 보듯이 시장수요곡선의 상단에 위치하여 지불용의가 높은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P_2=0.75$)에 재화를 구매하고, 시장수요곡선의 하단에 위치하여 지불용의가 낮은 소비자들은($P_3=0.25$)에 재화를 구매하여 시장의 총 거래량은 0.75가 됨.

<그림 1> 가격차별로 인한 사회후생의 변화



주: 1)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0인 독점적 공급자를 가정
 2) 시장의 크기는 1, 수요곡선은 $P=1-Q$ 를 가정 (P는 가격, Q는 수량)

■ 따라서, 가격차별이 가능 할 경우 지불용의가 낮은 소비자들 역시 소비에 참여하게 되어 소비자과 생산자의 잉여(후생)가 모두 증가할 수 있음.

-
- 지불용의가 높은 계층은 높은 가격에, 지불용의가 낮은 계층은 낮은 가격에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은 증가하고, 생산자잉여 역시 증가하여 전반적인 사회후생은 증가하게 됨.
 - 지불용의에 따른 가격차별이 불가능한 단일가격의 경우 <그림 1>의 패널 (a)에서 보듯이 소비자잉여($CS=0.125$)와 생산자잉여($PS=0.25$)가 결정되고 이의 합인 0.375 가 사회후생이 됨.
 - 지불용의에 따른 가격차별이 가능한 경우 <그림 1>의 패널 (b)에서 보듯이 소비자잉여는 ($CS_1+CS_2=0.03125+0.125=0.15625$)로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PS_1+PS_2=0.3125$)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사회후생 역시 $0.46875(=CS_1+CS_2+PS_1+PS_2)$ 로 증가함.

[부록 2] 비대칭정보로 인한 역선택이 보험수요에 미치는 효과⁴⁾

■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소비자와 사고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 소비자가 각각 1명씩 있고, 두 경우 모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000원의 손실을 본다고 가정

- 단, 고위험군의 사고 확률은 0.2이고, 저위험군의 사고 확률은 0.1로 가정
 - 그리고 두 소비자 모두 위험회피 성향을 보여 소득의 편차가 적은 것을 선호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평균위험률인 0.15에 기반하여 단일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가정

- 이러한 보험요율 하에서 고위험군 소비자가 $150(=0.15 \times 1,000)$ 원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 시 1,000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 전부보험(Full insurance)에 가입하게 되면,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850원을 얻게 됨.
 -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0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1,000원의 소득을 얻게 되어 보험에 가입할 경우와 비교하여 소득의 편차가 증가하고, 기대소득도 $800(=0.2 \times 0 + 0.8 \times 1,000)$ 원으로 보험 가입 시의 850원보다 적게 됨.
 - 고위험군 소비자의 경우 전부보험을 구매하게 되면, 기대소득도 증가하고 소득의 편차도 감소하게 됨.
- 한편, 저위험군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전부보험(Full insurance)을 구입하게 되면, 고위험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850원을 얻게 됨.
 -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900(=0.1 \times 0 + 0.9 \times 1,000)$ 원의 기대소득을 얻게 되어 보험 가입 시의 기대소득 850원보다 더 큰 기대소득을 얻게 됨.
 - 따라서 저위험군 소비자의 경우 보험가입으로 인해 소득편차는 감소하지만 기대소득도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편차 감소와 기대소득 증가의 두 가지 혜택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고위험군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수요량이 낮은 경향이 있음.
- 만약 저위험군 소비자가 보험수요량을 줄여 전부보험 대신에 $75(=0.15 \times 500)$ 원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 시 500원을 받는 일부보험(Underinsurance)에 가입했다고 가정
 - 그러면 보험사는 일부보험에 가입한 저위험군 소비자와 전부보험에 가입한 고위험군 소비자로부터 $225(=500 \times 0.15 + 1,000 \times 0.15)$ 원의 보험료 수입을 얻게 됨.

4) Harrington, S. and G. Niehaus(2004),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McGraw-Hill/Irwin에서 인용함.

- 반면, 사고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기대비용은 $250(=500 \times 0.1 + 1,000 \times 0.2)$ 원으로 수입보험료를 상회하게 되어 보험회사는 파산하게 됨.

■ 보험회사가 파산하지 않기 위해 보험요율을 0.15에서 0.18로 인상했다고 가정

- 고위험군 소비자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이 자신의 위험률인 0.2에 여전히 하회하기 때문에 전부보험 가입을 통해 기대소득 증가와 소득편차 감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보험요율이 0.15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보험 구입
- 반면, 저위험군 소비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가입 시의 기대소득 감소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더욱 보험수요량을 줄이게 되는데, 우리의 사례에서는 보험금액을 250원으로 낮추게 되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과 사고로 인한 기대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균형에 이르게 됨.
 - 보험료 수입 = $250 \times 0.18 + 1,000 \times 0.18 = 225$
 - 기대비용 = $250 \times 0.1 + 1,000 \times 0.2 = 225$

■ 이제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위험률을 반영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저위험군 소비자에게는 0.1의 보험요율을, 그리고 고위험군 소비자에게는 0.2의 보험요율을 책정할 수 있다고 가정

- 그러면 두 소비자 모두 전부보험을 구입하게 되는데⁵⁾, 그 이유는 전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기대소득은 동일하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편차가 감소하기 때문임.
- 이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300(=1,000 \times 0.1 + 1,000 \times 0.2)$ 원이 되어 비대칭정보 하에서 단일 보험료를 책정할 경우의 보험료 수입 225원보다 증가하게 됨.
 - 고위험군 소비자는 단일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는 경우와 비대칭정보가 해소되어 개별 위험률에 근거해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모두 전부보험을 구입
 - 반면, 저위험군 소비자는 단일 보험료 하에서는 일부보험을 구입하였으나, 개별 위험률에 근거해 가격차별을 하게 되면 전부보험을 구입
 - 즉, 가격차별을 할 수 있게 되면 저위험군 소비자의 보험수요량이 증가하게 됨.

5) 고위험군 소비자의 경우 보험요율이 0.18에서 0.2로 증가하게 되면 전부보험 구입 시 보험료가 180원에서 200원으로 증가하여 다른 부분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보험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이러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보험 가입 전과 가입 후의 기대소득과 소득편차에 의해 보험수요량이 결정된다고 가정함.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채널 활용 방안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올해 내에 동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단종 보험대리점 도입은 시장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존 판매채널로 시장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던 보험회사들에게 새로운 판매채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화재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이외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가까운 미래에 입법이 예고된 상가권리금보험 등을 동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은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의무보험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을 선택 조항으로 추가하고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트워크에 보험 업무 기능을 추가해 전산설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非보험 업종에서 특정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음.¹⁾

-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非보험 사업자에게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임.
 - 대표적인 단종보험대리점은 공인중개사의 주택종합보험 판매, 가전제품판매점의 AS보험 판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자동차보험 판매, 동물병원 애견보험 판매²⁾ 등임.
 - 손해보험 실무자들에 따르면 현재 보험회사들은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채널을 통해 부동산권리보험과 화재보험 등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4),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참조.

2)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3645&firstsec=1&secondsec=13

- 금융감독원은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1단계(2015년 말까지)에서 종합보험, 권리보험, 여행상해보험, 기타특종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2단계(2016년)에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기타상해보험 등의 판매를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³⁾
- 동 개혁안은 단종보험대리점 자격요건을 완화⁴⁾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보험대리점 등록을 희망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소정의 등록 교육⁵⁾을 받고 대리점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⁶⁾ 대리점 등록을 위해 보험회사에 소정의 영업보증금(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결정)을 예탁해야 함.⁷⁾

■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시장 환경 악화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⁸⁾ 인하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인중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⁹⁾
- 최근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안을 발표했다.¹⁰⁾
 -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매매 6~9억 원 구간(기존 0.9% 이하 협의 → 0.5% 이하 협의), 임대차 3~6억 원 구간(기존 0.8% 이하 협의 → 0.4% 이하 협의) 신설 및 요율 조정
 -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 조정: 매매 9억 원 이상(0.9% 이내 협의), 임대차 3억 원 이상(0.8% 이내 협의)으로 고가 구간 하한선 상향 조정
 - 주택 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현행 0.9% 이내 협의에서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 수수료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 수수료 요율 적용
 - 국토부는 각 시·도에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전달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음.
 - 조례가 개정된 일부 지역에서 반값 수수료 실효성 논란¹¹⁾이 제기되고 조례 개정을 거부¹²⁾하는

3) <http://fntimes.com/paper/view.aspx?num=136200>

4) 기존 보험 대리점에 비해 가입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내용을 확정되지 않았음.

5) 구분별 최소 교육 시간은 생명보험대리점(35시간), 손해보험대리점(40시간), 제3보험대리점(25시간)

6) 보험연수원 홈페이지(<http://www.in.or.kr/main/agent/agent01.asp>) 참조.

7)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보험대리점” 참조.

8) ‘부동산 중개 보수’라고도 함.

9)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007>

10)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752

11)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1>

지역도 존재하나 결국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¹³⁾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는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기존 공인중개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공인중개사의 단종보험대리점 업무 수행은 환경 악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추가 수입원을 제공하고 인식 부족과 적절한 판매채널 부재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화재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¹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계약 중개 시 계약 당사자들이 보험을 이용해 자신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보험을 판매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음.
- 화재보험 실무자들은 화재보험의 모집 수수료가 낮아 보험계약 모집인들이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¹⁵⁾
 - 2012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화재보험이 손해보험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 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화재보험이 전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임.¹⁶⁾
 - 2001년 FATIC(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의 국내지점 인가로 국내에 부동산권리보험이 도입되었으나 2010년 현재 부동산권리보험 연간 수입보험료는 14억 원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미미함.¹⁷⁾
-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허용은 기존 판매채널로 모집이 어려웠던 주택화재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들은 공인중개사의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화재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이외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상가권리금보험 등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개인·법인 영업 개시 시점에 사업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낮은 인식 수준과 판매채널의 한계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장

12) <http://www.nocutnews.co.kr/news/4366905>

1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1009403340275>

14)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오류와 부동산의 물리적인 하자로 인해 부동산 매매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임.

15) 최창희(2015),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 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KiRi Weekly, 보험연구원.

16) 2012년 미국 손해보험 시장 전체 수입보험료는 4,516억 달러,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229억 달러임. 동년 한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장기보험 제외)는 28조 원이고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3,293억 원 규모임. 미국 통계는 III Factbook, 한국 통계는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포털 참조.

17) 이현숙(2012), 『권리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권리보험 지불의사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pp. 33 참조.

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2012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보험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전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임.¹⁸⁾

- 황진태(2012)¹⁹⁾는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한 영업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제안했음.
- 또한 현재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상가권리금 보호법 도입 시 관련 보험 시장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²⁰⁾
 - 2014년 현재 국내 상가권리금은 33조 원 규모로 추정됨.²¹⁾
 -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 권리는 부동산 계약과 함께 발생하므로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은 상가권리금보험의 효과적인 판매채널이 될 수 있음.

■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은 통합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의무보험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현재 60여 개의 의무보험²²⁾을 20여 개의 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나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가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²³⁾
 -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특수건물²⁴⁾의 경우 매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18) 2012년 미국 손해보험 시장 전체 수입보험료는 4,516억 달러,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1,031억 달러임. 동년 한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장기보험 제외)는 28조 원이고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6,585억 원 규모임. 미국 통계는 III Factbook, 한국 통계는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포털 참조.

19) 황진태(2012),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방안』, 정책세미나 자료, 보험연구원.

20) 이데일리(2015, 4. 24), “상가권리금 보호법, 4월 국회처리 청신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41&newsid=03083206609339400&DCD=A00404&OutLnkChk=Y>

21)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90182>

22)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건축사보험, 경량항공기에 대한 보험, 공인인증기관 책임보험, 낚시어선보험, 다중이용시설 화재 배상책임보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복합운송주선업자화물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산림보험, 선원근재보험,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 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수렵보험, 수상레저보험, 승강기보수업자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책임보험, 연구기관중상자 상해보험,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연안체험시설운영자 배상책임보험, 외국인노동자상해보험, 우주발사체보험, 운전학원 종합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전지금지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학원 배상책임보험, 항공보험, 해외근재보험, 화재보험의 특수건물 신체배상책임보험특약, 출처: 보험개발원 의무보험 일람.

23) 최창희(2014, 11. 24),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 개선 방향」,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4)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농수산물도매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중 특정 연면적(각 층 면적의 합으로서 1,000~3,000㎡ 이상과 같은 조건이 이용됨) 또는 층수(‘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또는 아파트 이외의 11층 이상 건물)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함.

2013년 현재 가입 형태별 보험 미가입률이 다중이용업소(27%), 목욕탕(26.8%), 학원(24.7%), 영화관(18.1%), 숙박업소(17.3%), 병원(9.8%), 대규모점포(9.2%), 공장(7.8%), 공유건물(7.6%)로 높은 수준임.

- 현재 의무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이므로 금융당국은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운영자들에게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목록과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규정 등을 교육해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률을 낮출 수 있음.
- 의무보험을 판매한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은 보험 계약자의 보험가입 상태 유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의 가입 상태 유지 여부가 모니터링되는 효과도 기대됨.

■ 보험회사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의 효과적인 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을 선택 조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계약 일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자유롭게 수정·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을 선택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보험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또한 보험회사들은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산망을 보험 업무에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보험대리점에 보험 업무를 위해 전용 인터넷 회선과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의 경우 수가 많고 보험 업무에 따른 추가 소득 수준을 예상하기 어려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 방법으로 IT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보험 업무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기존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이소양 연구원

요약

■ 최근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은 온라인채널을 도입한 보험회사가 증가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음. IT 기술의 활용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품판매 및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중국에서 보험산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하고 있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일련의 지원정책을 제정함. 중국 보험산업은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의 성장으로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은 온라인채널을 도입한 보험회사가 증가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음.¹⁾

- 중국 보험회사는 새로운 고객 확보, 브랜드 인지도 확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채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14년 말까지 온라인채널을 도입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52개, 33개를 기록했는데 이는 각각 2011년에 비해 32개사, 25개사가 증가한 것임.
 - 2014년 온라인채널을 도입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18개, 8개로 나타남.
-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가 2011년 32억 위안에서 매년 199.4%씩 증가한 2014년 859억 위안으로 성장했으며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2%에서 2014년 4.2%로 급증함.
 - 2014년 온라인채널에서 거수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353억 위안, 506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각각 343억 위안, 484억 위안이나 증가함.
 - 중국 온라인 전문보험회사인 Zhong An Online Insurance²⁾는 영업한 지 1년에 불과했지만 수입보험료가 8억 위안으로 전체 보험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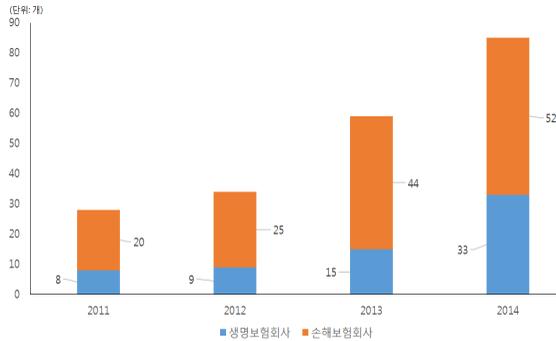
1) CIRC(2015. 3), 『2014年互聯網保險行業發展形勢分析』.

2) 이는 2013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 온라인 전문보험회사임.

시장에서 영업한 지 8년이 지난 삼성화재의 비중에 상당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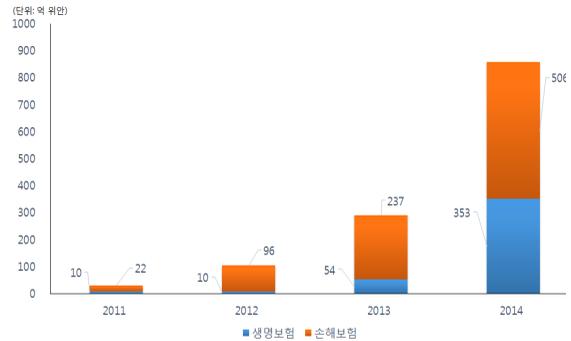
- 한편, 2014년 중국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방문자수는 2013년에 비해 약 40% 급증한 19억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보험소비자가 온라인채널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음.

〈그림 1〉 중국 보험회사의 온라인채널 도입 현황



자료: CIRC.

〈그림 2〉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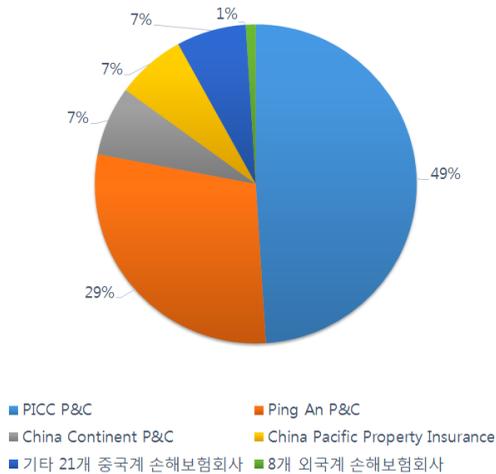


자료: CIRC.

■ 중국 보험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 및 유니버설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생존사별 시장집중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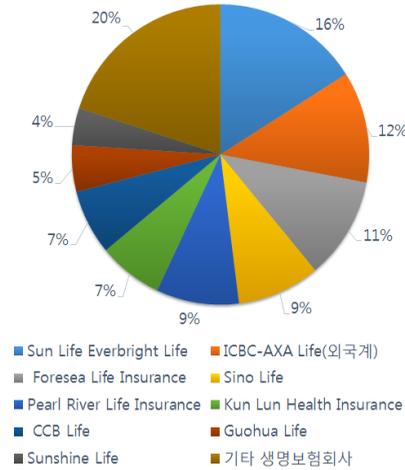
- 2014년 자사 홈페이지 및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보험회사는 각각 69개, 68개를 기록했으며 자사 홈페이지 및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모두 이용한 보험회사는 52개로 나타남.
 - 다만 온라인채널 손해보험의 90.1%는 보험회사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됐으며 생명보험의 94.9%는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됨.
- 2014년 자동차보험 및 유니버설보험은 수입보험료가 각각 483억 위안, 204억 위안으로 온라인채널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 각각 95.5%, 57.8%를 차지함.
 - 이는 자동차보험 및 유니버설보험이 기타 보험상품보다 상품구조가 간단하고 수요가 높아서 온라인채널에서 판매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임.
- 온라인채널 손해보험시장은 2개의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지배되어 있는 반면 온라인채널 생명보험시장은 9개의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에 지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중국 온라인채널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주: 2014년 PICC P&C 및 Ping An P&C는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함.
자료: CIRC.

〈그림 4〉 중국 온라인채널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주: 2014년 Sun Life Everbright Life, ICBC-AXA Life, Foresea Life Insurance, Sino Life, Pearl River Life Insurance, Kun Lun Health Insurance, CCB Life, Guohua Life, Sunshine Life는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41, 14, 31, 9, 65, 64, 12, 29, 11위를 차지함.
자료: CIRC.

■ IT 기술의 활용은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품판매 및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중국에서 보험산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하고 있음.

- 중국 보험회사는 온라인채널에서 축적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과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있음.
 - 중국 손해보험회사는 2013년부터 개인금융계좌 손실보상보험, 온라인쇼핑 소포배달 손실보상보험, 비행기연착 보상보험과 무인항공기 제3자 책임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자사 및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보험가입 승낙 여부 심사를 신속하며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험판매를 활성화하고 있음.
 - Zhong An Online Insurance는 2014년 11월 11일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Taobao를 통해 1.86억 건의 온라인쇼핑 소포배달 손실보상보험을 판매하였으며 1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거수함.
- 마지막으로 온라인채널에 의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보험금 청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 Ping An P&C는 2014년 1월 비행기연착 보상보험 가입자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은행계좌정보와 비행기정보만을 입력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함.

■ CIRC는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일련의 지원정책을 제정함.³⁾

- CIRC는 2011년 8월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활성화 계획⁴⁾을 발표하고 2011년 9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의 온라인채널 보험업무 경영요건⁵⁾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이 크게 증가함.
- 2013년 8월 CIRC는 온라인 전문보험회사의 설립 요건⁶⁾을 제정했으며 2013년 11월 중국 최초 온라인 전문보험회사인 Zhong An Online Insurance가 설립됨.
- 2014년 12월 CIRC는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온라인채널 보험업무의 경영요건, 경영지역, 정보공개, 감독규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초안⁷⁾을 발표함.
- 한편, CIRC는 2015년 2월 자동차보험 약관 및 요율 자유화 방안, 2015년 5월 건강보험 세제혜택 제공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개별 손해보험회사가 차별적인 약관 및 요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의 차별적인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때 온라인채널의 이용도가 크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년 2,400위안의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온라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보험시장의 잠재성장력을 감안할 때 향후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스위스 리(Swiss Re)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보험시장은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가 각각 201달러, 3.0%로 전 세계 평균(652달러, 6.3%)에 비해 낮아서 잠재성장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의 경우 2014년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불과하고 미국(10%, 2011년 기준)과 비교할 때 폭발적인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CIRC는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수입보험료가 2014년에서 매년 50%씩 증가해서 2017년 약 2,924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3) 安信證券(2015. 3), 『互聯網保險:大風起兮狂風突進』.

4) CIRC(2011. 8), 『中國保險業發展“十二五”規劃綱要』.

5) CIRC(2011. 9), 『保險代理,經紀公司互聯網保險業務監管辦法(試行)』.

6) CIRC(2013. 8), 『關於專業網絡保險公司開業驗收有關問題的通知』.

7) CIRC(2014. 12), 『互聯網保險業務監管暫行辦法(征求意见稿)』.

〈표 1〉 중국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전망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17,222	20,235	23,270	26,761	30,775
	성장률	11.2	17.5	15.0	15.0	15.0
온라인채널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291	859	1,489	2,141	2,924
	성장률	274.5	295.0	173.4	143.8	136.6
	비중	1.7	4.2	6.4	8.0	9.5

주: 2015~2017년 중국 보험시장 관련 수치는 모두 전망치임.
자료: CIRC; 安信證券 재인용.

■ 중국 보험산업은 온라인채널 보험시장의 성장으로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중소형 보험회사는 거대한 이용자를 보유하는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중국 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됨.
 - 2014년 온라인채널 생명보험시장은 9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함.
- 중국 IT 기업들은 IT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채널의 성장과 함께 기존 보험회사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됨.
 - 앞서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Alibaba는 IT 기업인 Tencent, 보험회사인 Ping An Insurance Group와 Zhong An Online Insurance를 설립한 바 있음.
 - 최근 중국 온라인 검색 사이트인 Baidu, 온라인 여행 사이트인 Ctrip,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Neteasy 등의 IT 기업은 보험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함.
- 온라인채널을 아직 도입하지 않는 보험회사들은 자사 경영전략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
 - 2014년 말까지 온라인채널을 도입하지 않는 중국계 및 외국계 보험회사는 각각 26개, 24개가 있음. [kiri](#)



보험이해력 제고 사례 검토: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변혜원 연구위원, 이해랑 연구원

요약

■ 보험이해력은 소비자가 자신이 직면한 위험수준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에 기초한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나 소비자실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보험이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인식 및 위험평가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보험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가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소외, 사회안전망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보험이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보험이해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활용할 수 있는데, 동 수단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전체 화면의 간소화, 효과적인 범주화, 핵심확인사항 등 간결한 내용의 정보 제공, 추가적 정보나 도움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금융이해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여러 국가에서 정보 제공, 지도, 객관적인 조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재무결정을 하도록 돕는 금융이해력 강화 프로그램들이 정부차원 또는 민간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음.¹⁾

■ 한편 보험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가 위험에 대해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소외, 사회안전망 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음.

● 소비자가 자신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 OECD(2005)는 금융교육을 소비자가 정보 제공, 지도,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금융상품과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해 인식하고, 정보에 기초한 재무결정을 내릴 수 있고,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금융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함(OECD(2005),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OECD Publishing).

소비자는 갑작스러운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어 소비자후생은 감소할 것임.

-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 계층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 공적 비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 보험이해력은 소비자가 자신이 직면한 위험수준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에 기초한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란 생애에 걸친 재무안정을 위해 자신의 재무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함(Jump\$tart 2015).²⁾

■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보험상품의 특성에 기인함.

- 보험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소비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의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 상품임.
- 보험상품은 계약에서 명시한 특정한 보험사건이 발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임.
-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상품의 목적, 관련 개념, 계약형태 등이 다르므로,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도 종류에 따라 필요한 보험이해력의 내용이 달라짐.

■ 아울러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는 보험이해력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 변액보험상품, 해지환급금, 청약철회, 위험보험료, 공시이율 등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해지환급금이나 위험보험료 관련 정답률은 70% 이상이었던 반면, 예금자보호 및 보험 부활에 대한 정답률은 40%대에 그쳤음.³⁾

■ 웹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위험노출 정도 및 위험보장 수준을 평가할 기준이나 상품 구매 시에도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2)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2015), National Standards in K-12 Personal Finance Education.

3) 전용식 외(2014), 『2014년 보험소비자설문조사』, 조사자료집 2014-9, 보험연구원.

- 보험이해력 제고 수단으로서의 학교과정 내에서의 위험관리 및 보험교육, 소비자의 보험 관련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상품구매 시 상품판매자를 통한 정보 제공, 1대 1 재무상담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는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정보와 수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인 ‘참 쉬운 재무진단’을 개설한 바 있음.**

- 한편 2014년 11월에 개설된 ‘참 쉬운 재무진단’ 서비스는 진단 항목 중 위험관리 및 은퇴설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금융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이해력 관련 내용들은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여러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소비자의 금융정보제공 웹사이트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와 함께, 처음 사용의 관문이 되는 메인페이지를 단순하고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전미보험감독자협회 Insure U는 메인 페이지를 최대한 단순화시켰으며,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한 링크들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음.
- 영국의 Money Advice Service(MAS) 역시 매우 단순화된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채, 예산관리, 저축 및 투자, 보험, 근로, 퇴직연금 및 은퇴 부문 등의 범주 링크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 가지 금융계산기 링크를 둠.⁴⁾
- 또한 MAS는 웹페이지 맨 아래에는 소비자가 내용을 검색하다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화(web chat) 버튼이 있으며, 상담 전화번호도 제공함.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⁵⁾ 산하 Money Smart 역시 앞서 살펴본 웹사이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메인 페이지의 메뉴 틀을 크게 돈 관리, 대출 및 신용, 보험, Superannuation 및 퇴직, 투자, 사기 등으로 구성함.⁶⁾

4) <https://www.moneyadviceservice.org.uk/en>

5)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6) <https://www.moneysmart.gov.au>

■ 다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거나, 관련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분류,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Insure U의 메인 페이지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생애 주요사건별(자동차 구입, 주택 구입, 이직, 결혼, 출산), 생애주기별, 보험상품 종류별로 설정하여,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함.
- 또한 생애 주요사건별, 생애주기 카테고리 정보를 찾을 경우, 조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추천하고, 상품 구매 전, 구매 과정, 구매 후 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보험상품 종류별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상품과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FAQs), 해당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 등 해당 상품과 관련된 핵심 확인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음.

■ 또한 소비자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정보는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큰 용량의 붙임문서는 지양해야 함.

- 각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선택한 내용에 해당되는 핵심사항들을 정리하거나, 상품 구매 체크리스트,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 등과 같은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 Money Smart의 3분 이내 분량의 비디오 제공이나 본문과 구별되는 글씨체와 색으로 표시한 핵심 조언(smart tip) 방식도 참고할 만함.

■ 요약하자면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웹페이지에 대한 홍보, 화면의 간소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성과 함께 자신의 위험을 평가하거나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핵심확인사항 등 간결한 내용의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임.

-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시키거나 정보검색 자체를 포기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제공하되, 추가적 내용을 찾고자 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소비자가 어디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정보 제공 웹페이지의 중요한 역할일 것임.

■ 그러나 상대적으로 웹페이지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사랑방버스’와 같은 공적 재무상담 서비스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임. [kifi](#)



행동경제학 개념의 보험 적용 사례와 활용 방안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행위 분석, 정부의 정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행동경제학의 여러 개념들 가운데 손실회피성(loss aversion)에 따른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과 초깃값 효과(default effect)는 미국의 자동차보험 선택과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정책에 적용되었음. 이러한 적용 사례들을 고려해 볼 때 행동경제학의 개념들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본인부담금 옵션 선택 문제와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 방안에 활용될 수 있음.

-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직관적이며 자동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적이고 심원한 사고방식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합리적 경제학 이론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인간의 행위들을 설명하고 있음.¹⁾

- 합리적 경제학 이론은 소비자들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 불확실성하의 기대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 분석적 사고보다 단순하고 즉흥적인 불완전한 선택 룰을 사용함.

- 대표적 개념인 손실회피성은 이익보다는 손실을 훨씬 더 크게 평가하는 성향을 말함.

- 사람들은 손실이 주는 ‘불만족’을 동일한 금액의 이익이 주는 ‘만족’보다 더 크게 느낌.
-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1000원의 손실이 주는 불만족은 1000원의 이익이 주는 만족보다 2~2.5 배 큰 것으로 나타남.

1) 도모노 노리오(2007), 『행동경제학』.

■ **현상유지편향은 손실 회피성에서 도출된 성질로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함.**

- 현재 상황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할 경우 나빠질 가능성과 좋아질 가능성이 둘 다 있다면, 나빠질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손실 회피성으로 인해 현상 유지에 대한 지향이 강해짐.
- 개인의 금융 포트폴리오 선택에 관한 가상실험²⁾을 시도한 결과, 주어진 현상(초기상태)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³⁾

■ **초깃값 효과는 현상유지편향과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선택이 좋은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초깃값을 바꾸는 수고를 하지 않는 성향을 일컫음.**

- 두 개의 상태 A와 B 중 어느 쪽이 초깃값이 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짐.
- 이러한 초깃값 효과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초깃값을 물건을 파는 사람의 권유로 여겨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프레이밍 효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초깃값을 변경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회피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므로 이는 현상유지편향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음.

■ **미국의 뉴저지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자동차보험 선택 사례는 초깃값 효과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뉴저지주는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료가 싼 보험에 자동 가입하는 걸 초기설정으로 두고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적용범위가 넓은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반면, 펜실베이니아주는 보험료가 비싼 보험에 자동 가입하는 것을 초기설정으로 한 뒤 가입자가 원하면 싼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함.
- 뉴저지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0%는 초기설정인 저렴한 보험을 선택했으며, 반대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가입자의 75%가 비싼 보험료 상품을 선택했음.

■ **미국의 퇴직연금(401K 플랜)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은 현상**

2) 실험에서 물었던 질문은 “만약 뜻밖의 현금 유산 증여가 생긴다면 리스크가 큰 회사 주식, 리스크가 작은 회사주식, 재무성 채권, 그리고 지방채라는 4가지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였음. 첫 번째 그룹은 기준점이 되는 그룹으로 위의 질문을 그대로 던진 반면, 두 번째 그룹에게는 위의 질문 외에 “유산으로 현금과 증권을 받았는데 증권 대부분은 리스크가 작은 회사에 투자되었다”는 ‘현상’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음. 결과는 모든 선택 대안에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 쪽이 훨씬 더 많이 선택되었으며, 특히 선택 대안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3) Samuelson and Zeckhauser(1988), “Status Quo Bias in Decision Making”,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Vol. 1, pp. 7~59.

유지편향을 정부 정책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임.⁴⁾

- 리처드 탈러 교수⁵⁾가 제안한 이 제도는 퇴직연금 401K 플랜의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납입금을 임금 상승과 연동하도록 만들어 임금 상승이 있을 시 자동적으로 일정 비율만큼 납입금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연금 저축을 늘리기 어려웠던 큰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들이 납입액을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납입액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과, 막상 연금 납입액이 증가하면 소득이 줄어든 것과 같은 박탈감을 느끼는 문제였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몇 개월 이전에 임금 인상 여부를 알게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미래의 저축률 증가를 미리 확정해 놓도록 자동 설정함.
- 임금이 상승한 시점에서 납입액이 증가하지만 소득의 감소가 없어 소득이 줄었다는 상실감이 없었으며, 자동으로 저축률 증가를 설정해 놓아 근로자의 현상유지편향을 극복할 수 있었음.

■ 초깃값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⁶⁾ 초기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보통 소비자는 본인부담금이 높고 보험료가 낮은 옵션보다 낮은 본인부담금을 갖는 높은 보험료 옵션을 선택하는 성향이 있음.⁷⁾
 - 이는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보험료의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옵션 간 비교에서 차액의 크기가 큰 본인부담금을 낮추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미래에 소비자가 부담할 기대 비용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본인부담금에 보험금 청구율(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값과 보험료를 합해서 비교해야 하는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지 않고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액면가로 비교함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일 수 있음.

4) 이 프로그램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우 80%의 근로자가 참여해서 소득대비 저축률을 3.5%에서 13.6%까지 상승시켰음.

5)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한 행동경제학을 체계화시켜 학문적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한 학자임.

6) 본인부담금(deductible)은 보험에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손실 금액의 100%를 보상하지 않고,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임.

7) Justin Sydnor(2006), "Sweating the Small Stuff: Demand for low Deductibles in Homeowners Insurance". 미국의 주택보험 가입 사례를 분석한 한 이 연구 결과는 소비자의 "높은 본인부담금 회피(high-deductible aversion)"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주택소유자는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상한액을 {\$1000, \$500, \$250, \$100}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83%의 소비자들이 자기부담상한액의 최대치인 \$1000보다 낮은 옵션을 선택했음. 장기간 가입자일수록 더 낮은 자기부담상한액을 선택했고 신규가입자의 61%도 낮은 본인부담금을 선택함. 주택 소유주가 본인부담금을 \$1000에서 \$500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100을 더 지불해야 하는데, 청구율이 5% 미만인 이 커버리지는 기대치로는 \$25보다 작은 것이었음. 이 연구는 만약 83%의 소비자가 \$1000의 본인부담금을 선택했다면 청구율을 고려하여 계산했을 때 평균 \$99.88을 절약했을 것으로 분석함.

- 보험 청구율과 청구 금액이 낮은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높은 옵션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본인부담금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이 같은 소비자의 “본인부담 회피 성향(deductible aversion)”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 다만, 소비자의 위험회피성향은 본인부담금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갖는 상품이 시장에서 제공되도록 해야 함.

■ 현상유지편향과 초깃값 효과를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과정에 적용하여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의 가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IRP계좌를 자동으로 생성시키고, 싫으면 탈퇴(opt out)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자동가입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2017년부터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는데, 자발적인 가입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 운용상의 문제 중 하나는 근로자들이 투자방식을 정하는데 있어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디폴트 옵션 제공을 통해 “좋은 상품을 권유” 할 수 있음.
- 다만,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시 이러한 외부의 개입이 가입자의 이해와 사유재산권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kiri](#)



세계 보험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이소양 연구원

요약

- 2014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2013년보다 3%p 높은 6% 성장한 가운데 선진국 보험산업 수입 보험료는 신흥국보다 7%p 낮은 5% 성장에 그침.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선진국 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신흥국에 진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지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음. 한편, 중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국 보험산업의 팽창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면서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순위가 크게 상승함. 향후 미국과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선진국 보험회사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맥킨지(McKinsey & Company)의 조사¹⁾에 따르면 2014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 보험료는 전년대비 6% 증가한 3조 8,010억 유로를 기록함.

- 2014년 세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대비 6%, 5% 증가한 1조 8,300억 유로, 1조 1,750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8% 증가한 7,960억 유로였음.²⁾
- 2014년 미주지역, EMEA지역³⁾, 아·태지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각각 1조 5,230억 유로, 1조 2,510억 유로, 1조 270억 유로로 전년대비 6%, 5%, 9% 증가하였음.
 - 구체적으로 볼 때, 신흥아시아⁴⁾(15%) 및 라틴아메리카(13%)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선진아시아⁵⁾(7%), 북미(5%), 서유럽(5%), 일본(4%), 동유럽(1%), 아프리카(-1%)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1) McKinsey & Company(2015, 5), "Global Insurance Insights-A detailed analysis of trends that shape the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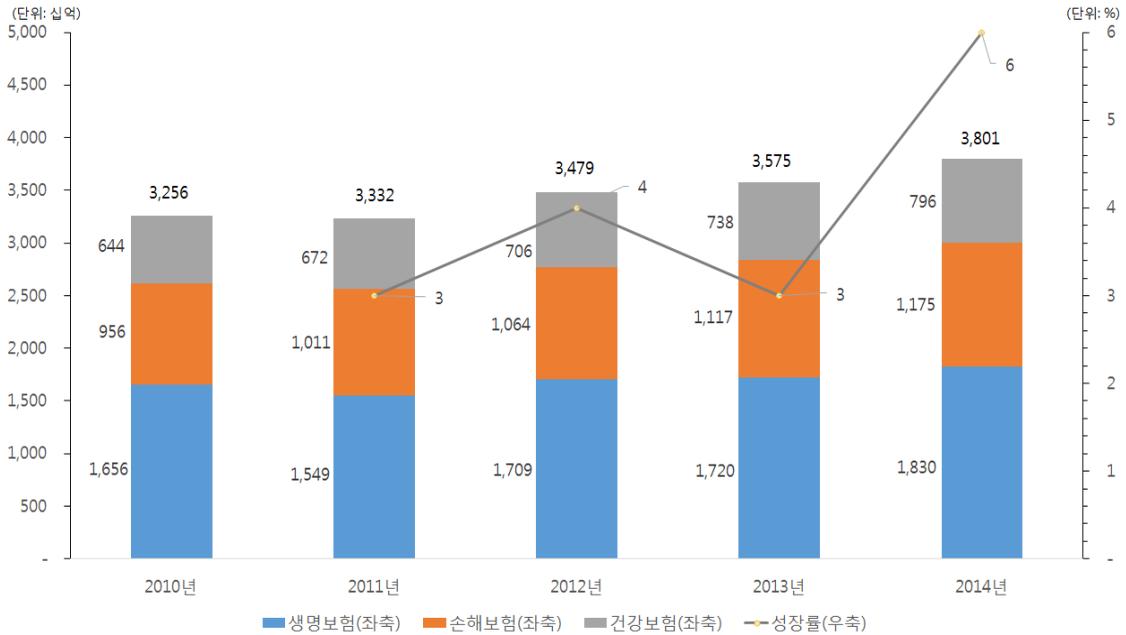
2) 맥킨지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라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집계함.

3) EMEA지역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함.

4) 신흥아시아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동을 포함함.

5) 선진아시아는 호주,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및 대만을 포함함.

〈그림 1〉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유로)



자료: McKinsey & Company, 재구성.

■ 2014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은 2013년보다 3%p 높아졌는데 이는 생명보험 실적 개선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서유럽, 신흥아시아 국가의 견고한 성장세 및 북미, 선진아시아, 일본의 회복세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1%)보다 5%p 높아진 수준임.
- 2014년 세계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북미와 신흥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견고한 성장세로 전년 대비 8% 성장하였는데 이는 2013년(5%)보다 3%p 확대된 수준임.
- 2014년 세계 손해보험의 경우 선진국 성장세 확대가 신흥국 성장 둔화를 상쇄하면서 2013년과 같은 5% 증가하였음.

〈표 1〉 2013년 및 2014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률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서유럽	6	7	1	2	3	8
신흥아시아	8	14	4	5	24	31
북미	-8	3	3	3	23	23
선진아시아	0	9	15	13	4	3
일본	-5	4	20	19	7	6
라틴 아메리카	7	3	8	8	10	10
동유럽	-2	0	5	1	6	9
아프리카	14	-6	4	3	-	-
전세계	1	6	5	5	5	8

자료: McKinsey & Company, 재구성.

■ 2014년 선진국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생명보험 성장 호조로 2013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신흥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14년 선진국 보험산업 성장률은 북미, 선진아시아 및 일본 생명보험의 성장으로 2013년(2%)에 비해 3%p 높아졌으나 5%에 그침.
 - 2014년 북미 생명보험 성장률은 미국 단체생명보험 성장세 회복 및 개인연금 고성장, 캐나다 유니버설보험 성장세 확대로 2013년 -8%에서 3%로 상승하였음.
 - 2014년 선진아시아 국가 생명보험 성장률은 호주 연금시장 성장세 확대, 한국 단체생명보험 고성장, 대만 변액보험 성장세 확대로 2013년 0%에서 9%로 높아졌음.
 - 2014년 일본 생명보험 성장률은 예정이율 인하 효과 소멸로 2013년 -5%에서 4%로 상승하였음.
- 반면 2014년 신흥국 보험산업 성장률은 신흥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고성장에 힘입어 2013년과 같은 12%로 나타났음.
 - 2014년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아시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는 각각 전년대비 15%, 13% 성장하였음.

■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선진국 수입보험료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신흥국에 진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지 보험시장에서 차지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음.

-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보험산업 성장성도 둔화되고 있는 반면 신흥국의

경우 견고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고성장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선진국 보험산업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5% 이하 수준에 그친 반면 신흥시장 보험산업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15%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선진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한 비중도 83%로 2010년에 비해 3%p 하락한 반면 신흥국 보험산업 비중은 2010년 14%에서 17%로 상승하였음.
-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대표적인 신흥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및 러시아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현지의 본토 보험회사들에 비해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아직까지 높지 않음.
 - 해외자본의 독자적인 보험회사 설립이 허용된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 해외자본 독자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 각각 21%, 11%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해외자본의 독자적인 보험회사 설립이 금지된 인도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 30%이었음.
 - 해외자본의 독자적인 생명보험회사 설립이 금지된 중국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 5%에 불과하였음.

■ 한편, 중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국 보험산업의 팽창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면서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순위가 크게 상승함.

- 스위스 리(Swiss Re)에 따르면 2008~2014년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CAGR는 15.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같은 동안 전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CAGR(1.9%)보다 13.3%p 높은 수준임.
 -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08년 1,408억 달러에서 2014년 3,284억 달러로 성장하였음.
- China Life 및 PICC는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과 달리 중국 국내시장에 치중하고 있지만 수입보험료가 각각 2008년 432억 달러, 149억 달러에서 2014년 541억 달러, 41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3년 China Life 및 PICC는 각각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및 15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계 15위 이내 보험회사 중 미국과 유럽 보험회사는 2008년 12개에서 10개로 감소하였음.

〈표 2〉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보험회사 순위(유로)

2008			2013		
순위	회사	국가	순위	회사	국가
1	Axa	프랑스	1	Axa	프랑스
2	Japan Post	일본	2	United Health	미국
3	Generali	이탈리아	3	Allianz	독일
4	Allianz	독일	4	Generali	이탈리아
5	United Health	미국	5	Munich Re	독일
6	AIG	미국	6	Anthem	미국
7	ING	네덜란드	7	China Life	중국
8	Anthem	미국	8	Zenkyoren	일본
9	Zenkyoren	일본	9	Japan Post	일본
10	Nippon Life	일본	10	Kaiser	미국
11	Munich Re	독일	11	State Farm	미국
12	Aviva	영국	12	Prudential UK	영국
13	State Farm	미국	13	Zurich	스위스
14	Kaiser	미국	14	Nippon Life	일본
15	Zurich	스위스	15	PICC	중국

자료: McKinsey & Company, 재구성.

■ 향후 미국과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선진국 보험회사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맥킨지는 일본을 제외한 아·태지역과 라틴아메리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2013년부터 매년 10.7%씩 증가하여 2020년 1조 3,860억 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신흥국 보험산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미국과 유럽의 대형 보험회사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됨.
 - 앞서 2014년 미국 Metlife, Liberty Mutual Insurance Group은 각각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프랑스 Axa는 중국에서 현지 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음.
 - 최근 영국 로이드는 신흥국 보험료 비중을 2025년까지 2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⁶⁾

6) 김진억(2014. 3),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신흥국진출 현황 및 전망」, 보험연구원.

-
- 미국과 유럽 대형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은 신흥국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에서 외국계 보험회사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말까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는 50개사에 달했지만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 5%에 불과하였음.

■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진출 대상국의 보험시장 성장 현황과 경쟁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는 진출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임. [kiri](#)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난치성 질병 치료제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난치성 질병의 치료제 개발 가시화는 유전자 치료제 기술 발전에 기인하며, 향후 10년 안에 성숙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난치성 치료제의 개발은 사망률과 질병 완치율 개선, 의료비 증가 등을 통해 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상품구조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고가의 유전자 치료제 확대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공·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질병 치료제는 화학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중 유전자 치료제는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난치성 질병의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질병 치료제는 크게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되며, 화학합성의약품은 분자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한 장점을 지니는 반면, 바이오의약품은 화학합성의약품에서 발생하는 독성이 없으나 분자구조가 복잡하고 고가라는 단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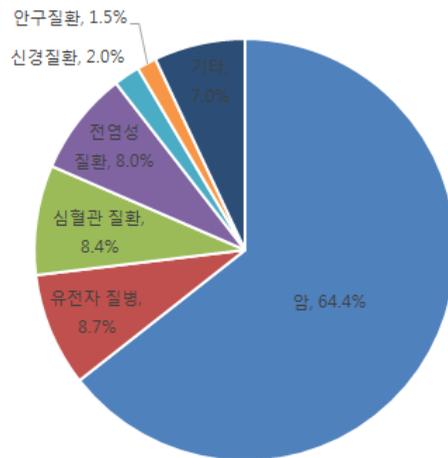
● 바이오의약품은 다시 단백질 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구분되며, 질병 치료제는 초기 화학합성의약품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바이오의약품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

■ 2012년 현재 유전자 치료제는 암, 유전자 질병, 심혈관질환, 전염성질환, 신경질환 순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성 고지혈증, 혈우병 등의 유전성 질환과 함께 거의 모든 종류의 암, AIDS등에도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¹⁾ 신경질환과 심혈관질환도 촉망받는 분야로 알려져 있음.²⁾

- 이중 암과 심혈관질환은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이지만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기존 의약품이 증상의 개선에만 집중한 반면 유전자 치료제는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Gene therapy clinical trials worldwide”에 따르면 2012년 임상 중인 유전자 치료제 중 암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가 6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유전자질환(8.7%), 심혈관질환(8.4%), 전염성질환(8.0%), 신경질환(2.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1〉 질병별 유전자 치료제 개발 임상 비중



자료: Journal of Gene Medicine(2013), “Gene therapy clinical trials worldwide to 2012—An update”.

■ 유전자 치료제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로써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상용화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향후 10년 안에 성숙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유전자 치료제의 개념은 1980년대에 제시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임상이 시작되었으며, 20여 년간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2014년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동향을 살펴보면³⁾ 전세계적으로 1,970개의 유전자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상용화 전단계인 임상 3상⁴⁾을 진행하는 경우도 75건에 이를 정도로 유전자 치

1) KISTI market report(2013), 『‘꿈의 신약’ 유전자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2)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2014), 『유전자 치료제 연구동향』.

3)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2014), 『유전자 치료제 연구동향』.

4) 신약개발 시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3단계의 임상을 거치며 임상 3상은 판매허가 전 시판 전 단계임.

료제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가 다가옴.

-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2014)는 2025년 정도면 유전자치료제 기술이 기존 의약품과 경쟁에 들어갈 정도로 성숙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러한 의료기술의 급진적인 변화가 초래할 사망률 개선과 질병 완치율 개선, 의료비 증가 등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의 정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사망률 개선 추세가 예측을 벗어남으로써 연금보험의 장수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의 진전으로 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연금상품의 보험료는 과거 사망률 개선추세를 반영한 경험생명표에 기반하여 산출되고 있음.
- 향후 보험회사의 종신연금부채 비중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암, 심혈관질환 치료제 개발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망률 개선 요인이 나타나 급격한 사망률 개선을 야기한다면 보험회사의 연금부채는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반면 사망보험의 경우 사망률 개선에 따라 부채 부담이 경감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전환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보험 부채가 연금보험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가중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생존보장에 대한 니즈 증가를 반영하여 생존위험과 사망위험을 혼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연금전환 종신보험이 종신보험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률 개선에 의해 보험회사의 부채부담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망률 개선 충격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촉발해 사망보험 부채가 대규모 연금보험 부채로 전환될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회사의 연금부채 부담은 가중될 수 있으며, 특히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연헤지(natural hedge) 상태가 깨지게 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신상품에 있어서는 연금보험의 보험료 상승과 사망보험의 보험료 하락이 기대되며, 장수위험이 큰 연금보험의 적절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정교한 미래사망률 전망이 필요할 것임.**

-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개발은 급격한 사망률 개선을 야기함으로써 연금보험의 보험료 인상과 사망

보험 보험료 인하를 야기할 것임.

- 연금보험의 경우 장수리스크가 확대에 대응하여 적절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다 정교한 사망률 예측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 난치성 질병 치료제의 개발은 암보험, 실손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질병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암보험의 경우 암진단 시 정액급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제의 개발이 보험회사의 부채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약 또는 주사만으로 암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입원담보와 수술담보의 손해율이 축소될 수 있음.
- 반면 난치성 질병 치료제의 약가가 매우 고가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로 발병률이 감소할 경우 긍정적이나 동시에 퇴행성질환의 진행이 늦춰져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며, 장기요양보험 대상 등급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구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암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진단급부 및 담보 조정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예상되므로 공제비율과 보험금 상한선 조정 등의 대응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암보험의 경우 암치료비의 증가에 따라 암진단 보험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약물 또는 주사로 치료가 가능한 암종류의 경우 입원 및 수술 특약을 축소하는 등 담보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치매환자의 진단 후 생존율이 개선되면서 충분한 보장을 위한 진단급부의 상향조정 등이 필요할 것임.

■ ■ 한편 유전자 치료제는 가격이 고가이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공·사 협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 치료제는 화학합성의약품에 비해 분자구조가 복잡하고 이로 인해 생산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임.

-
- 2012년 유럽지역에서 최초로 판매된 지질분해효소결핍증 유전자 치료제 글리베라(Glyvera)는 가격이 무려 110만 유로(한화 약 15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임.
 - 난치성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중·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
 - 고가의 유전자 치료제를 공적건강보험에서 모두 보장할 경우 공적부문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는 공·사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음. [kiri](#)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 추이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이 개선되고 있음. 이는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폭에 비해 보험료적립금 부담이율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임. 보험료적립금 부담이율의 하락폭을 키운 요인으로는 금리연동형 부채의 공시이율이 큰 폭으로 인하된 점과 고금리 금리확정형 부채의 비중이 감소한 점을 들 수 있음. 반면, 운용자산이익률의 하락폭을 줄인 요인으로는 금리부자산의 듀레이션이 늘어난 것을 꼽을 수 있음. 향후 금리역마진을 하락은 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다수의 생보사들이 공시이율 조정률을 80% 가까이 적용하고 있어서 공시이율 인하 여력이 낮은 상태이므로, 금리역마진율에 고금리 금리확정형 부채의 영향 감소 효과와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증가 효과가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역마진이 개선되고 있음.

- 시장금리는 하락추세임.
 - 1년 만기 국고채: 2.685('13.12) → 2.072('14.12) → 1.553('15.09)
 - 10년 만기 국고채: 3.653('13.12) → 2.681('14.12) → 2.216('15.09)
- 2013년 6월 말 0.6%p였던 생명보험회사 금리역마진율¹⁾이 2015년 6월 말 0.4%p까지 하락함.
- 보험료적립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역마진율의 하락으로 금리역마진액²⁾이 2013년 6월 말 2조 3천억 원에서 2015년 6월 말 1조 9천억 원으로 낮아짐.

1) 금리역마진율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적립금에 대응되는 운용자산이익률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구분한 자료가 없어 전체 운용자산의 이익률을 이용함.

2) 금리역마진액은 보험료적립금 부담이자에서 보험료적립금에 대응되는 자산의 운용이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함.

〈표 1〉 생명보험회사 금리역마진

(단위: 조 원, %, %p)

구분	운용자산 (a)	운용자산 이익률 (b)	운용이익 (a×b/100)	보험료 적립금 (c)	적립이율 (d)	적립금 부담이자 (c×d/100)	금리 역마진을 (d-b)	금리 역마진액 ((d-b)×c)
2013. 6	446.5	4.8	21.4	388.0	5.4	21.0	0.6	2.3
2014. 6	488.7	4.6	22.5	424.6	5.1	21.7	0.5	2.1
2015. 6	542.6	4.4	23.9	464.9	4.8	22.3	0.4	1.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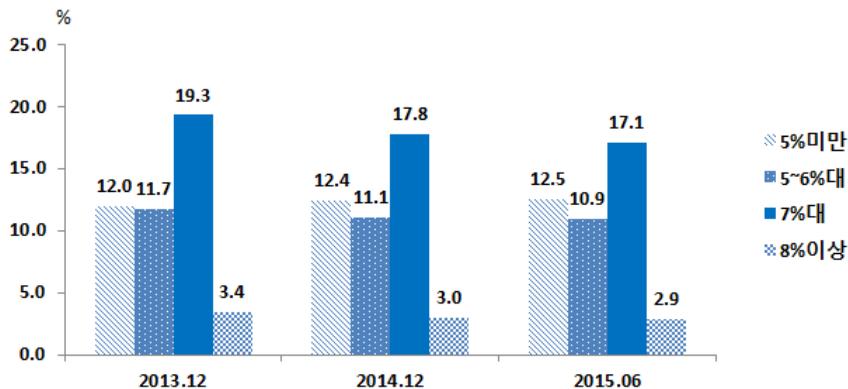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 금리역마진 개선 요인을 부채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금리연동형 부채의 경우 생보사가 공시이율을 적극적으로 인하한 점을 들 수 있음.

-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공시이율 산출범위 확대에 의하여 공시이율 인하 여력이 커졌으며 실제로 많은 생보사들이 공시기준이율 대비 80~90%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음.³⁾

■ 둘째, 고금리 금리확정형 부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적립이율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고 있음.

- 2000년 이전에 판매하였던 고금리 금리확정형 상품의 보험료 완납 증가로 고금리 금리확정형 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특히, 7% 이상의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이 2013년말 22.7%에서 2015년 6월 말 20%로 하락함.

〈그림 1〉 생명보험회사 금리확정형 부채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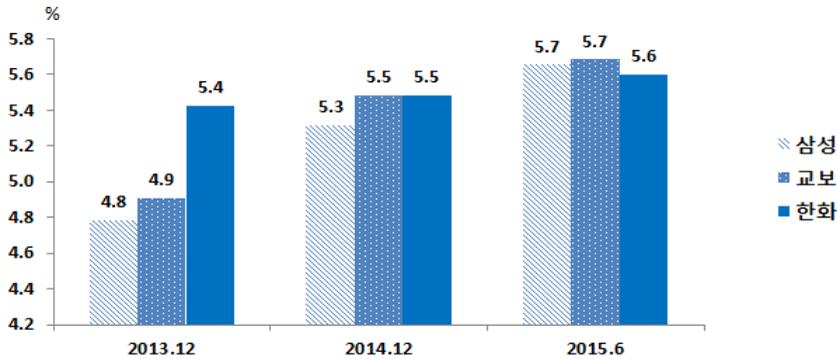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3) 2014년에는 공시이율을 공시기준이율 대비 최저 90%까지만 적용할 수 있었음.

■ 자산측면에서 금리역마진 개선 요인으로는 금리부자산의 듀레이션이 확대되어 운용자산이익률의 하락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경우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금리부자산 듀레이션이 각각 0.8, 0.9년씩 늘어남.

〈그림 2〉 대형 생명보험회사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자료: 각사 경영공시.

■ 향후 금리역마진을 하락은 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다수의 생보사들이 공시이율 조정률을 80% 가까이 적용하고 있어서 공시기준이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공시이율 인하 여력이 적은 상태임.
- 즉, 앞으로 시장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리역마진율에 고금리 금리확정형 부채의 영향 감소와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증가 효과가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장기적으로 생보사 금리역마진은 축소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금리경쟁에 의한 금리역마진 확대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보험사간 경쟁에 의해 공시이율 인상폭이 자산운용이익률 상승폭을 앞지를 수 있음.
- 시장금리가 현 수준보다 떨어져서 공시기준이율이 하락할 경우 최저보증이율 3%대 금리연동형 부채가 추가로 금리확정형으로 전환되어 금리확정형 부채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금리역마진이 악화될 수도 있음.
 - 2015년 6월 말 기준 최저보증이율 3% 이상 금리연동형 부채 비중: 교보 17.4%, 삼성 12.7%, 한화 22.9% **키리**



사이버보험 동향 및 사이버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직면한 사이버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손실노출 예측의 어려움, 리스크 간의 높은 상관성, 손실의 관리가능성, 지불가능한 보험료 책정 측면에서 사이버리스크 보험시장 발전의 장애가 존재함. 따라서 사이버보험 보장의 정의 및 계약 관련 용어 표준화, 통지 및 보안감사 등 사이버보안 관련 제도 개선, 사이버리스크 관련 데이터 공유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할 것임.

- 최근 들어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정보와 관련된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사회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나 고장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도 확대, 심화됨.

- 이에 본고는 지난 6월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IPPC: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mittee)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사이버보험 동향과 사이버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함.

-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는 사이버리스크와 관련된 국가적인 조치가 취해졌음.

- 영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사이버공격을 향후 5년 동안 우선순위를 갖고 대처해야 할 네 가지 리스크 중 하나로 지목함.

- 미국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이버보안과 소비자보호 백악관 정상회담(the White House

Summit on Cybersecurity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사이버보안을 국가 우선순위로 정함.

■ 사이버리스크란 정보기술 체계의 고장으로 인해서 재무적 손실, 파괴, 또는 한 기관의 명성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리스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이버 손실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음.

- 재무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의도된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리즘
- 시스템 오류나 고장 등에 의한 자신의 데이터나 다른 사람의 데이터의 돌발적 손실
- 화재, 도난, 자연재해, 전기사고, 산업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기반구조(Infrastructure)의 물리적 손실
-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과 같이 손해배상 지급을 야기하는 온라인 활동의 배상책임

■ 사이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에 있으며, 미국시장이 가장 발전되어 있음.¹⁾

- 2002년 1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미국시장의 사이버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 약 20조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많은 보험회사들이 사이버보험시장에 진입하였음.
- 이에 비해 유럽시장은 수입보험료 수준이 약 1억 5천만 달러로 아직까지 규모는 작으나, 연평균 50~100%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전통적 보험계약은 사이버리스크 보장을 제외하므로, 사이버리스크에 특화된 사이버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는데, 일반적 보장내용은 <표 1>과 같음.

1) Kostadinov(2014), "Cyber Insurance", InfoSec Institute.

〈표 1〉 사이버보험계약의 일반적 보장내용

보장	사이버손실의 종류	보장되는 손실
제3자		
사생활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 네트워크나 오프라인 접속을 통해 부주의, 의도된 행위, 손실, 도난으로 인해서, 해당회사가 집적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비밀정보가 공개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배상책임(변호비용, 소송비용 등) 대리 배상책임 위기 통제 신용 감시(신용감시, 사기감시 등과 관련된 비용)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하지 않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삽입이 제 3자의 피해를 가져온 경우 피보험(회사)의 승인되지 않은 접근이 제 3자의 시스템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객의 승인된 접근에 대한 방해(Disturbance) 지적재산의 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회복비용(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복구 또는 구축) 법적 소송절차비용
지적재산권 및 미디어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 트레이드마크 유출, 미디어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배상책임
당사자		
위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및 기술자산에 대한 적대적 공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문서비스 비용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지비용 및 감시 비용
조업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킹 서비스거부 공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복구비용 이윤손실 데이터 복구비용을 위한 보장
데이터자산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 공격에 의한 정보 및 데이터 자산의 변경, 오류, 또는 파괴 기타 무형자산의 훼손이나 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복구 또는 교체비용 지적재산 복구 또는 교체비용
사이버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나 기술자산을 방출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강탈 정보나 기술자산을 변경하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강탈 서비스를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탈지불(Extortion Payment)비용 강탈을 회피하기 위한 비용 랜섬(Ransom)비용

자료: Biener et al.(2015), "Insurability of Cyber Risk: an Empirical Anlalysis", Working Papers on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No. 151. University of St. Gallen.

■ 사이버보험 보험료 수준은 피보험기관의 규모, 리스크 요인, 선택된 보장범위나 종류, 자기부담금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데, 미국시장에서는 100만 달러 보장 당 대기업의 경우 2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중소형 기업의 경우 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의 보험료가 책정된 것으로 조사됨.²⁾

● 보험회사는 사이버리스크로 인한 잠재적 손실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보장한도를 정하거나 높은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개별 보험회사가 설정한 보장 최대제한은 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사이였음.

2) Kostadinov(2014).

-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점(Trigger Date)을 손실이 발생한 시점으로 정하는 경우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지급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 사이버공격은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됨.
- 그러나 손실노출의 예측가능성, 리스크 간의 상관성, 관리가능한 수준의 손실규모, 지불 가능한 보험료 책정 측면 등 보험가능성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이버보험 시장이 발전하는 데에 몇 가지 장애요인들이 존재함.³⁾
 - 사이버리스크는 새로운 리스크이므로 손실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발달에 따라 계속 진화하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감시가 필요하고, 손실 또한 무형인 경우가 많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리스크가 무작위로 발생해야 하며 다른 위험과도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사이버리스크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별 기업 또는 개인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업, 개인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짐.
 - 사이버리스크 관련 손실의 최대치, 사건 당 평균손실, 손실빈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사건에 대한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연구에 따라 매우 다른 예측을 제시하고 있음.
 - 잠재적 손실과 확산효과로 인해 사이버리스크를 계량화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회사들은 안전할증(Safety/Uncertainty Margins)을 확보함으로써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높은 보험료는 사이버보험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사이버보안을 개선하고 보험을 통해 사이버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보험 보장의 정의 및 계약 관련 용어 표준화, 통지 및 보안감사 등 사이버리스크 관련 감독요건 검토, 사이버보안 사고 관련 데이터의 공유 등이 필요할 것임.
- 먼저 사이버보험의 수요자가 보험계약을 이해하고 보험을 통해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사이버보험계약 보장의 정의와 보험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이버보험계약들은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따라 보장내용, 보장제외

3) 일반적으로 보험가능성, 즉 어떠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실노출(Loss Exposure)이 예측 가능해야 하며, 리스크들이 비교적 상관성이 낮아야 하며, 사건 당 평균 손실과 최고가능 손실이 감당가능하고, 지불 가능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체계가 있어야 함.

사항,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 등이 매우 다름.

- 아울러 사이버보험이 보장하는 사건의 정확한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장하는 리스크와 보험금지급을 결정하는 조건(Trigger)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의가 필요함.

■ 다음으로 법적으로 정보유출에 대해 알릴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정보유출사건은 높은 고지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므로 기업의 보험가입과 손실 관련 데이터 집적 유인을 높일 것임.

- 미국의 47개 주에서는 개인정보손실을 야기하는 유출을 당국에 알려야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유출에 대해 잠재적으로 피해가 있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 EU는 데이터보호규제(EU Data Protection Regulation) 초안에서 데이터유출로 인해 잠재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담음.
 - 독일의 경우 지역 데이터보호당국에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보험회사가 사이버보험 계약자(기업)의 보안도구 및 활동을 평가하는 심화사이버보안검사(In-depth Cyber Security Audits)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위험노출 모니터링의 일부로서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계약자의 사이버보안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경우, 계약자의 보험을 통한 위험감소 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하와 보장확대 등을 통해 계약자의 사이버리스크 경감 및 회피를 유도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사이버리스크의 보험가능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데이터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리스크 관련 데이터 집적과 공유를 위한 데이터 풀(Data Pool)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사이버리스크의 보험가능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손실 데이터의 과거시계열 부재, 사이버보안 사고의 빈도 및 심도와 관련된 계리정보의 부족, 사이버위험의 변동성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이버위험에 대한 데이터와 지식의 공유는 보험회사가 사이버리스크를 계량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시킬 것임.
- 올해 2월 미국은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CTIIC: Cyber T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를 설립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kiri](#)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손해율 관리 어려움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반려동물 관리체계의 선진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성숙 등으로 향후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보험회사는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손해율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한편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여 단순히 질병·상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신상품 개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1~2인 가구 비중은 52.7%로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35년 1~2인 가구 비중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1~2인 가구 중 65세 노인가구의 비중은 29.4%에 달하며, 2035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은 1,0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며,¹⁾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반려동물을 기르는 1~2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²⁾
- 그러나 2014년 현재 반려동물의 보험가입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³⁾ 알려져 있어 반려동물을

1) 농협경제연구소(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2) KT경제경영연구소(2013), “반려동물과 ICT의 만남”.

3) KB금융지주(2015),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대상으로 각종 보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손해율 관리 어려움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일부 소비자와 동물병원 등의 도덕적 해이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과거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을 활발히 출시한 바 있으나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철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반려동물보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반려동물의 등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나의 보험으로 유사한 외모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연령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함.
- 동물병원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과도한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의료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그러나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동물 관리의 체계화가 진전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 인식이 성숙되면서 손해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 반려동물보험 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향후에는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1월, 개를 소유한 사람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개의 체내에 삽입 후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를 부착하고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해당 시·군·구청이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는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반려동물 관리의 체계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우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고 3만 달러 이후부터 반려동물의 인격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
- 애완동물 관련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관리체계의 선진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성숙 등은 반려동물보험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고 손해율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련 보험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임.

4) 농협경제연구소(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회사만이 취급하고 있으며, 주로 질병·상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은 매우 저조함.

-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애견의료보험은 반려견의 질병·상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며,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롯데손해보험의 반려동물보험은 개와 고양이의 가입이 가능하고 수술, 입원, 통원 치료비를 보장하며, 수술 1회당 150만 원, 입원 1일당 10만 원 등의 치료비 한도와 수술 2회, 입원 22일의 치료횟수 한도를 두고 있음.
- 2014년 이들 보험의 판매건수는 각각 879건, 762건⁵⁾으로 반려동물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발달된 영국에서 판매되는 알리안츠의 반려동물보험 보장내용⁶⁾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질병·상해 담보뿐만 아니라 도난, 실종에 대한 보상, 제3자 손해배상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함을 알 수 있음.

- 동 보험은 질병·상해와 관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료비용과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침술(acupuncture), 동종요법(homeotherapy), 허브요법(herbal medicine) 등 대체의료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함.
- 또한 반려동물을 도난당하거나 반려동물이 실종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배포하고 반려동물을 되찾아 주는 사람에게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광고비와 포상금에 대한 보상도 제공함.
-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물 또는 인적 손실에 대해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며 이는 반려동물이 개일 경우에 한정됨.

■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며, 이는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경우 반려동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대한 보장 니즈가 크기 때문임.

-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경우 반려동물의 운송비를 지원하고 반려동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 비용을 제공하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여행이 취소되거나 여행 중 치료를 위해 돌아와야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함.

5) 아시아경제(2015), “애견인 1,000만... 펫보험은 ‘애개개’”.

6) Petplan(<http://www.petplan.co.uk>).

- 만약 여행 중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를 당하여 집으로 돌아오기 어렵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추가적인 운송비용이 필요하다면 이를 보상하며, 여행 중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시신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함.
- 반려동물과 여행 중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마이크로칩 이상, 예방접종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여행서류 분실 등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귀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상함.

■ 보험회사는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손해를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과거 높은 손해율로 판매가 중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상품공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나,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를 관리가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이 일반화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제공의 범위 및 가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동물병원, 애견샵, 애견 동호회 등과 같은 판매채널 확보에 노력하고, 동물병원 등과의 제휴를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할 것임.

■ 한편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여 단순히 질병·상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신상품 개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로 1~2인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점을 감안하여 반려동물보험과 연계한 1~2인 가구의 보험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독거노인 사망 시 반려동물의 관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향후 반려동물의 기대수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고령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니즈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 반려동물에 특화된 보험상품의 개발도 필요해 보임.
- 또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질병·상해 등 기본적인 담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배상책임, 여행관련 보장 등 담보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통계의 집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kiri



중국 재보험시장 발전 현황과 전망

이소양 연구원

요약

■ 중국 원보험시장은 1979년 보험산업 재개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크게 성장한 반면 재보험 시장은 규제로 발전이 더디었음. 2015년 3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재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보험거래에 대해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음. 전문가들은 중국 원보험시장의 잠재 성장력 및 리스크기준 지급여력제도(C-ROSS) 도입을 고려할 때 향후 재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원보험시장은 보험산업 1979년 재개¹⁾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함.

● 중국 국가통계국(NBSC)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경제규모(GDP)는 2005년 18조 5,895억 위안에서 매년 14.7%씩 성장하여 63조 6,463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9%에서 8.4%p 늘어난 13.3%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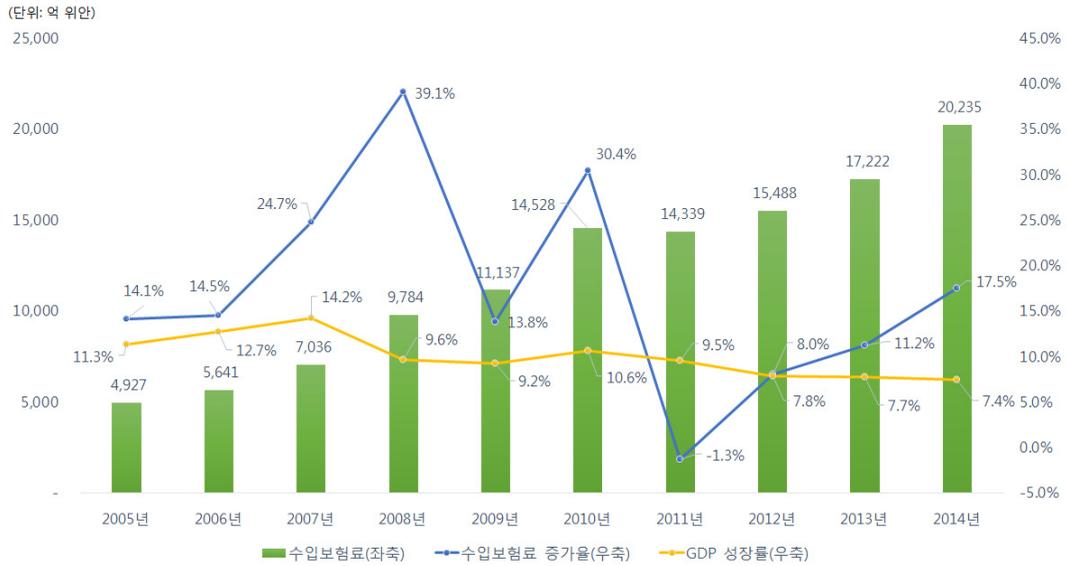
● 2014년 중국 원보험시장 수입보험료의 경우 2005년 4,928억 위안에서 매년 17%씩 증가하여 2조 234억 위안으로 늘어났으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0%에서 4.9%p 높아진 6.9%로 상승함.

- 중국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2005년 3,698억 위안, 1,230억 위안에서 2014년 1조 3,031억 위안, 7,203억 위안으로 증가함.

● 한편, 2014년 말까지 중국 원보험시장에서 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2005년 70개사에서 63개사 증가한 133개사로 늘어남.

1) 1966~1979년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해외사업을 제외한 국내 보험사업을 중단하였음.

〈그림 1〉 중국 원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성장 추이



자료: CIRC 및 World Bank.

■ 반면 중국 재보험시장은 규제로 원보험시장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시장규모가 높지 않았음.

- 형평성이 없는 재보험 규정 및 China Re의 독점적인 시장지위는 중국 재보험시장 발전을 제약한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2005년까지 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20%를 중국 재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규정 및 2010년까지 원보험회사가 재보험을 가입할 때 중국 재보험회사를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들은 외국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저해하였음.
 - 중국 재보험시장은 2001년 이후 외국 재보험회사에 개방되었지만 China Re가 2010년까지 앞서 언급된 규정에 힘입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음.
- 2013년 중국 재보험시장은 수재보험료가 2006년 217억 위안에서 매년 28.2%씩 성장하여 1,238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2.0%에 불과하였음.
- 한편, 2013년 말까지 중국 재보험시장에서 원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재보험을 받는 재보험회사는 8개사(7개의 외국사 포함)밖에 없음.

■ 2015년 3월 CIRC는 재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보험거래에 대해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음.

- 2014년 8월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은 보험산업에 대한 첫 국가 발전전략인 『현대 보험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발전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재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함.
- 재보험거래 등록제에 따르면 CIRC가 공시하는 재보험회사 리스트에 등록된 재보험회사 및 재보험 중개사는 자발적으로 중국시장에서 재보험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번 재보험거래 등록제 발표로 중국 대형 보험회사 및 민영자본은 재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음.
 - 2015년 4월 중국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PICC는 재보험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함.
 - 2015년 11월 중국 제일재경일보(YICAI)는 중국 민영자본이 출자한 3개의 재보험회사가 승인중이라고 보도함.

■ 전문가들은 중국 원보험시장의 잠재성장력 및 리스크기준 지급여력제도(C-ROSS) 도입을 고려할 때 향후 재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스위스 리(Swiss Re)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원보험시장은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가 각각 201달러, 3.0%로 전 세계 평균(652달러, 6.3%)에 비해 낮아서 잠재성장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발전 의견’은 2020년까지 중국 원보험시장의 보험밀도를 3,500위안까지 높이고 보험침투도를 5.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CIRC는 2016년 말까지 중국 보험시장에서 EU의 솔벤시 II와 유사한 리스크기준 지급여력제도(C-ROSS)를 도입할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을 높이거나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 현재보다 재보험을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C-ROSS’는 해외 재보험에 대한 위험계수를 중국 국내 재보험 위험계수보다 높게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보험회사의 중국 국내 재보험 활용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Ping An Securities는 중국 재보험시장 규모가 2013년 1,238억 위안에서 매년 15.0%씩 증가하여 2020년 3,300억 위안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함.²⁾

■ 또한 외국 재보험회사의 미국시장 진출 현황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할 외국 재보험회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³⁾

- 2012년 말까지 미국 재보험시장에서 현지법인으로서 영업하는 외국 재보험회사는 339개사이며

2) 『打破再保險行業壟斷，分享巨大再保險市場』(2015, 3), 繖文超, 羅小娟.

3) 『美國再保險的發展和監管政策及其對我國的啟示』(2015, 3), 李新平, 南開大學濱海學院.

그들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38.4%에서 2012년 58.7%로 크게 상승하였음.

- 미국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2013 미국 손해재보험시장 상위 10개사 중 외국 손해재보험회사의 수재보험료는 27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손해재보험회사의 경우 98억 달러에 불과하였음.
-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재보험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시장에 진출할 외국 재보험회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앞서 2014년 9월 미국 재보험회사인 RGA는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지점을 설립한 바 있음.
 - 2015년 11월 홍콩계 재보험회사인 Taiping Re는 중국시장에서 기존의 지점을 현지법인 자회사로 전환하였음.

〈표 1〉 미국 손해재보험시장 상위 10개사의 수재보험료(2013년 기준)

(단위: 억 달러)

손해재보험회사	본사 소재국	수재보험료
QBE North America	호주	59
National Indermnity Company(Berkshire Hathaway)	미국	55
Swiss Reinsurance America Corporation	스위스	49
Everest Reinsurance Company	버뮤다	43
Munich Re America, Corp.	독일	42
XL Reinsurance America	아일랜드	34
Transatlantic Reinsurance	미국	31
Odyssey Reinsurance Group	캐나다	25
Partner Reinsurnace Company of the U.S.	버뮤다	16
General Re Group	미국	12

자료: 미국 보험정보연구원(III).

■ 한편, 중국 국내 유일한 재보험회사인 China Re의 경우 재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지만 외국 재보험회사 진입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음.

- 2001년까지 중국 재보험시장에서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했던 China Re는 수재보험료가 2009년 253억 위안에서 매년 17.0%씩 증가하여 2013년 475억 위안으로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13년 나머지 7개의 외국 재보험회사들은 수재보험료가 2009년 121억 위안에서 매년 42.4%씩 증가하여 498억 위안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사상 처음 China Re보다 높은 수준임.

- 2013년 기준 중국 재보험시장에서 2~8위를 차지하는 외국 재보험회사는 각각 Swiss Re(177 위안), Hannover Re(142억 위안), Muich Re(121억 위안), SCOR(38억 위안), Taiping Re(13억 위안), Gen Re(4억 위안) 및 Lloyd's(3억 위안)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ki ri**

〈표 2〉 중국시장 재보험회사 수재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구분	본사 소재국	2009	2010	2011	2012	2013
China Re	중국	253	243	384	414	475
Swiss Re	스위스	69	68	178	146	178
Hannover Re	독일	6	21	47	41	142
Muich Re	독일	35	75	146	82	121
SCOR	프랑스	4	8	17	19	38
Taiping Re	홍콩	5	9	10	12	13
Gen Re	독일	2	2	4	2	3
Lloyd's	영국	0.4	3	4	2	3
전체 외국 재보험회사	-	121	186	406	305	498

자료: 각 재보험회사의 업무보고서.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정성희 연구위원, 이정택 연구위원

요약

-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실손표준화 이후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한방비급여의 재보장이 추진 중에 있음.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역할 강화 차원에서 한방비급여의 보장 필요성은 사회적으로도 공감하는 부분이나, 표준화 미비, 과다 진료비 격차, 치료목적 불명확 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한의업계는 한방비급여의 표준화 및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리스크 통제장치 마련이 긴요한 시점임.

- 최근 들어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의업계와 보험업계는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상품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¹⁾

-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²⁾를 통해 한방과 치과의 경우 급여의 법정본인부담분은 보장 내역에 포함된 반면, 비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됨.
 - 한방은 양방³⁾에 비해 비급여에 대한 진료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보장대상 확인이 어렵고, 처방에 대해서도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제외된 주요 이유임.
-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각계⁴⁾에서 표준화 이후 제외된 한방비급여의 보장 필요성을 건의함.
- 이에 따라 한의업계는 신뢰성 높은 통계를 보험업계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제공된 통계를 근거로 한방보장상품 개발에 노력하며, 향후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1) 2015. 12월 '한방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한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합의문'을 발표함.

2) 표준화 이전에는 손보사는 한방의 입원의료비(급여, 비급여)를, 생보사는 한방의 급여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분(입원, 통원)을 보장해주는 실손의료상품을 판매함.

3) 법적 용어로는 의과 또는 의과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한방과 비교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임.

4) 2012. 10월 한의업계는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청원, 2014.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한방비급여 의료비 보상제도개선 조치사항' 발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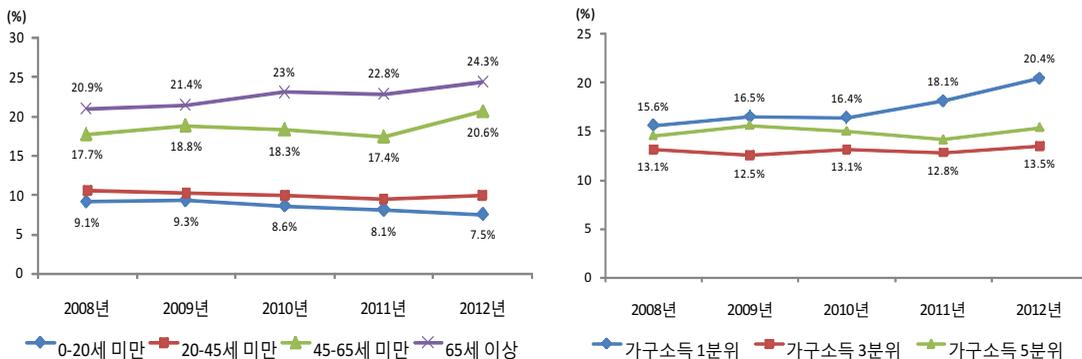
합의함.

- 한방의료이용 통계가 확보되면 먼저 상품 출시를 원하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한방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출시함.⁵⁾
- 한방비급여 상품의 판매 경과 및 안정적인 리스크 통제장치 구축 등을 고려한 후, 향후 상품심의회위원회(2016년 설립 예정)에서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⁶⁾ 개선을 도모하기로 함.

■ 주로 서민·사회보호계층이 경증의 외래진료 중심으로 한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장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한방에 대한 민영 건강보험의 역할 강화는 필요함.

- 한방의료는 주로 40대 이상 고령자(74%), 여성(66.3%),⁷⁾ 저소득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한방의료 진료 내용을 보면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를 외래(71.3%)를 통해 주로 이용하고 있음.
 - 한방 진료를 받는 주요 이유는 요통(12.9%), 근육부상(9.1%), 관절염(9.0%), 허리뺨(8.7%) 등으로 조사됨.
 - 가장 많이 받는 한방 치료법으로는 침치료(48%), 물리요법(20.3%), 탕약(15.8%), 뜸(6.4%), 부항(5.9%) 등임.

〈그림 1〉 한방의료 외래 서비스 이용률 변화추이(2008년~2012년)



자료: 의료패널(2008년~2012년).

5) 보험회사별로 한방비급여의 보장내용이 상이한 개별약관(표준약관을 준용하되, 상품별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한 약관) 형태로 개발되는 상품.
 6) 표준약관에 한방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모든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동일한 한방비급여 보장내용으로 판매하게 됨.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 현재, 비급여 의료비의 진료·원가정보에 대한 파악·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한방 비급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표준화에서 한방비급여가 보장에서 제외된 원인을 포함하여 많은 선결 요건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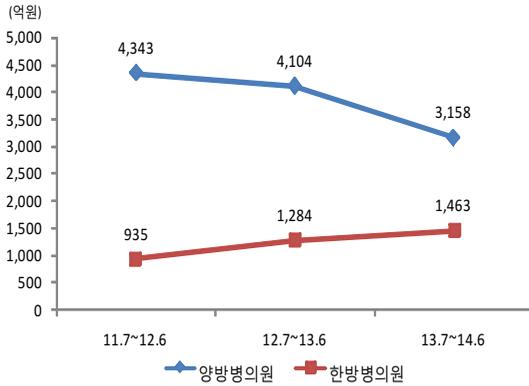
- 우선, 한방치료의 특성상 양방에 비해 표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세분화를 통해 진료 내용 및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방비급여의 행위 항목은 16개 정도로 이는 양방 720개의 2.2%에 불과한 수준임.
- 또한, 한방비급여의 항목별 진료비는 한방병원·한의원 간 뿐만 아니라 동일 한방 의료기관 내에서도 편차가 큰 상황으로 한방비급여 진료비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로 약침⁸⁾의 경우 병원에 따라 60배(5,000원~300,000원) 이상 격차가 발생하며, 동일 병원 내에서도 추나요법⁹⁾ 치료비로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함.
- 더욱이, 한방치료는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질병치료와 병행하여 체질개선 등을 위한 한방제제의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방처방 내용만으로는 치료목적인지 확인이 곤란함.
 - 진료내역서에 ‘탕약 A’, ‘한방처방’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치료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한방제제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가격책정이 가능함.¹⁰⁾
- 한편,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비급여를 보장할 경우 한방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 및 보험료 급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 양방과 한방을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를 보면 양방 진료비는 최근 3년간 감소한 반면, 한방 병·의원 진료비는 오히려 높은 증가율 추세를 보임.
 - 동일·유사 질환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는 한방이 양방보다 5.4배 높음.

8)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경혈이나 아픈 곳에 주입하는 치료법.

9)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추나치료 테이블에서 환자의 신체표면에 자극을 가하여 관절, 근육, 인대 및 신경계를 조절하고 교정하는 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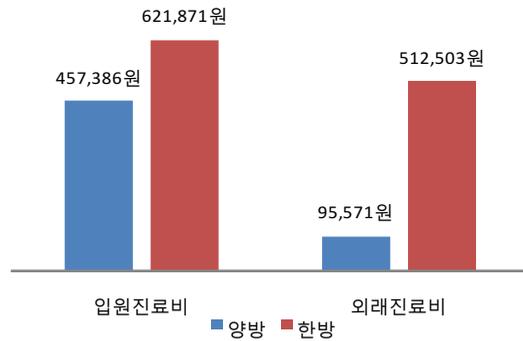
10) 조용운(2013), 『실손의료보험의 한방법정비급여 진료 보장을 위한 선결요건』 중 수정하여 재인용함.

〈그림 2〉 자동차보험의 양·한방 간 진료비



자료: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

〈그림 3〉 자동차보험의 양·한방 간 입·통원 진료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청구자료.

■ 따라서, 민영 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해 제기되는 선결요건을 해결하고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한방비급여 관리체계 및 보험리스크 통제장치 마련이 긴요한 시점임.

- 한의업계는 한방 진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료 발생이나 필요 이상의 진료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제도 측면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 예를 들어 치료 목적으로 한방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보장횟수를 제한하는 실손형이나 수술·진단비에 대해서 일정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으로 설계 [kiri](#)

kiři Weekly 포커스 모음집 2015

발행일 | 2016년 2월

발행인 | 강 호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